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416-10

www.mohw.go.kr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Chapter 1 노인복지일반현황

1-1 2020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 3
1-2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 60
1-3 2020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 62

Chapter 2 노인요양

2-1 노인주거복지시설 ····· 65
2-2 노인의료복지시설 ····· 102
2-3 재가노인복지시설 ····· 140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84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257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19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 322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 476

Chapter 3 치매 및 건강보장

3-1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주요내용 ····· 481
3-2 치매 검진사업 ····· 483
3-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484
3-4 광역치매센터 운영 ····· 485
3-5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 보강사업 · 486
3-6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487
3-7 치매공공후견사업 ····· 488
3-8 노인실명예방사업 ····· 489
3-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501
3-10 노인 건강진단 ····· 511

contents

Chapter 4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3
4-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18
4-3 경로당 운영 ····· 26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 63
4-5 노인교실 ····· 78

Chapter 5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5-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 85
5-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 131
5-3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 140
5-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169
5-5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 교육 ····· 186
5-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206
5-7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 211

Chapter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6-1 어버이날 행사 ····· 217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 220
6-3 경로우대제 운영 ····· 223

Chapter 7 장사시설 설치·운영

7-1 장사정책 추진 ····· 227
7-2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 230
7-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 242
7-4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 263

Chapter 1

노인복지일반현황

1–1 2020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 3
1–2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 60
1–3 2020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 6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1 2020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2-1 노인주거복지시설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입소대상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19도 3월에 2019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18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입소대상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0년도 3월에 202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19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9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9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시설운영비 지원 나. 관리운영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910,7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455,4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시설운영비 지원 나. 관리운영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936,200원/년당, 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468,2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다. 프로그램 사업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120,0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60,0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다. 프로그램 사업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123,4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61,7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2-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입소절차 (중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략) -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입소절차 (중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략) - 신청접수는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3 재가노인복지시설	**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5. 이용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신청시에는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Ⅲ. 주·야간보호서비스** **5.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2) 시설규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 개정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월부터 시행 예정. 다만, 국공립 치매전담형	**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5. 이용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신청시에는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Ⅲ. 주·야간보호서비스** **5.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2) 시설규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국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 적용** (치매전담형 기관 설치 기준 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19.4월	● 치매전담실 설치기준 변경 반영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종전)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은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 → (개선) 시설 자율 선택	시행되었으나,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은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	
	다. 인력기준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 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다. 인력기준**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 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위탁급식영업자 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영업 등)와도 예외적으로 급식위탁(계약) 가능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의 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채용의무를 완화 해주는 것으로 위탁업체를 통한 적정 수준의 조리·급식 서비스는 확보되어야 하며, 입소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서비스 제공 및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급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td><td>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td><td></td></tr>
<tr><td></td><td>● 이용자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함</td><td>●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식품위생법」제2조)</td><td>● 규정의 명확화</td></tr>
<tr><td></td><td>Ⅳ. 단기보호서비스
5. 시설 및 인력기준
나. 인력기준
<table><tr><th></th><th>관리 책임자</th><th>사회 복지사</th><th>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th><th>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th></tr><tr><td>이용자 10인이상</td><td>1명</td><td>1명 이상</td><td>이용자 25명당 1명</td><td>1명 (이용자 30명이상)</td></tr><tr><td>이용자 10인미만</td><td>1명</td><td>-</td><td>1명</td><td>-</td></tr></table>●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위탁급식영업자 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영업 등)와도 예외적으로 급식위탁(계약) 가능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의 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채용의</td><td>Ⅳ. 단기보호서비스
5. 시설 및 인력기준
나. 인력기준
<table><tr><th></th><th>관리 책임자</th><th>사회 복지사</th><th>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th><th>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th></tr><tr><td>이용자 10인이상</td><td>1명</td><td>1명 이상</td><td>이용자 30명당 1명</td><td>1명 (이용자 30명이상)</td></tr><tr><td>이용자 10인미만</td><td>1명</td><td>-</td><td>1명</td><td>-</td></tr></table>●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td><td>●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무를 완화 해주는 것으로 위탁업체를 통한 적정 수준의 조리·급식 서비스는 확보되어야 하며, 입소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서비스 제공 및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급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 전체 교체**	
	Ⅶ.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Ⅶ.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 전체 삭제**	
	Ⅷ.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Ⅷ.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장 전체 삭제**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전체 변경	규정의 명확화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8. 미세먼지 관련 조치사항(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8. 미세먼지 관련 조치사항(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 '19년 추경예산으로 설치한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시설에서는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및 유지관리 점검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시·군·구는 공기청정기 사용 실태 등을 수시 점검 - 시설이 폐업할 경우 해당 공기청정기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는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보조금 현금 반납 * 내용연수 9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서식(예시)]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서식(예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점검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8.51%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0.25%	'19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에 따른 '20년 보험료율 결정에 따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를 반영
2-7 장기요양기관설치 및 운영기준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도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1. 장기요양기관 개요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2장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지정등록 관련 업무' 이전의 부분 전체 교체	지정제 변경에 따라 전체 수정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필요서류 (중략) 4.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중략)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필요서류 (중략)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중략)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붙임2>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건의 반영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3.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신청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3.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지정제 변경 반영
	나.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아래 시설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서 조회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 기관유형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기관유형"을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체크 ●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아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참조)	나. 지정요건 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지정제 강화에 따른 대표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결정(상세한 내용은 '지정제 주요 변경사항' 참조)	지정제 변경 반영
	가) 시설기준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가) 시설기준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화장실 등 공동거실내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출 것
<table><tr><th rowspan="2">구분
시설별</th><th rowspan="2">침실</th><th colspan="7">공동거실</th><th rowspan="2">옥외공간</th></tr><tr><th>화장실</th><th>오물처리</th><th>세면 및 간이욕실</th><th>간이주방</th><th>식사공간</th><th>간이세탁 및 수납공간</th></tr><tr><td>치매전담실</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필수, △: 권장)</td><td>않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d><td></td></tr>
<tr><td></td><td>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 개정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월부터 시행 예정 다만,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종전)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개선)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종전과 달리 화장실 등 공동거실내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2) (종전)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는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및 수납공간을 갖출 것 →(개선)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을 갖추면 됨(개별 침실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기존 부대시설 중 핵심 시설인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만 갖추면 인정</td><td>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1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는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및 수납공간을 갖출 것
<table><tr><th rowspan="2">구분
시설별</th><th rowspan="2">침실</th><th colspan="7">공동거실</th><th rowspan="2">옥외공간</th></tr><tr><th>화장실</th><th>오물처리</th><th>세면 및 간이욕실</th><th>간이주방</th><th>식사공간</th><th>간이세탁 및 수납공간</th></tr><tr><td>치매전담실</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필수, △: 권장)</td><td></td></tr>
<tr><td></td><td>※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 설치도 가능
(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는 공동거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추가로</td><td>※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 설치도 가능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설치할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 개정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월부터 시행 예정. 다만,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사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종전)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 (개선)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2) (종전)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갖출 것 → (개선) 시설 자율 설치~~ ~~* 다만, 시설 전속 옥외공간이 없는 시설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1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외부 활동이 가능한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갖출 것	
	나) 인력배치기준 표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요양보호사' 중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나) 인력배치기준 표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요양보호사' 중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치매전담형 개정 반영
	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 개정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월부터 시행 예정) (종전)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1 → (개선)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5:1	<삭제>	치매전담형 개정 반영
	※인력기준(*) 상세요건 (중략) 10.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중략)	※인력기준(*) 상세요건 (중략) 10.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중략)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다)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시설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다)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대표자(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5)으로, 부칙에 따라 개정 당시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라)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상담제 운영 (중략) ● 내용 : 설치신고자는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을 설치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붙임1]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담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상담제 운영 (중략) ● 내용 : 신고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붙임1]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 지적 반영
	다.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다. 신청서 수리 ● 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류 수리 또는 반려	지정제 변경 반영
	<붙임1>	<붙임1>	필요시 차입금 사전신고서의 활용을 위하여 문구 수정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차입금 사전 신고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td><td></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시설명</td><td>대표자 성명</td></tr>
<tr><td>소재지</td><td>전화번호</td></tr>
<tr><td>차입금액</td><td colspan="2"></td></tr>
<tr><td>차입사유 및 용도</td><td colspan="2"></td></tr>
<tr><td>상환계획 또는 방법
* 상환년도, 금액, 재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td><td colspan="2"></td></tr>
</table>
위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설치 목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을 위해 차입한 사항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table>
<tr><td>첨부서류</td><td>1.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td><td>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시설) 차입금 사전 신고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td><td></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시설명</td><td>대표자 성명</td></tr>
<tr><td>소재지</td><td>전화번호</td></tr>
<tr><td>차입금액</td><td colspan="2"></td></tr>
<tr><td>차입사유 및 용도</td><td colspan="2"></td></tr>
<tr><td>상환계획 또는 방법
* 상환년도, 금액, 재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td><td colspan="2"></td></tr>
</table>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시설 설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또는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차입한 사항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table>
<tr><td>첨부서류</td><td>1.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2. 차입금 상환 계획서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td><td></td></tr>
<tr><td></td><td></td><td><붙임2>
1. 표준근로계약서
2. 표준급여명세서</td><td>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td></tr>
<tr><td></td><td>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설치방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 장에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 → 사군구 설치 신고시 지정의제 → 장기요양기관</td><td>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삭제></td><td>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삭제</td></tr>
<tr><td></td><td>●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td><td>●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td><td>중복문구 수정</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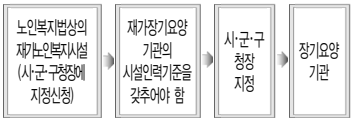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의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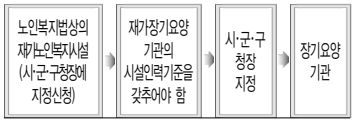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5」에 따라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 전 설치신고된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구비하여야 함('12.2.5일부터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5」에 따라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 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구비하여야 함('12.2.5일부터 시행))	문구수정
	1.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	1.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	2번기관의 신규설치 (3번기관 신규설치불가)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및 구비서류
<table>
<tr><th>서비스</th><th>필요 서류</th></tr>
<tr><td>공 통</td><td>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 일반현황 1부
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7. 신청인(대표자)의 건강진단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td></tr>
<tr><td>주·야간, 단기보호</td><td>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td></tr>
<tr><td>복지용구</td><td>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td></tr>
</table></td><td>(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구비서류
<table>
<tr><th>구분</th><th>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th></tr>
<tr><td>공통
(일반)</td><td>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td></tr>
<tr><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d>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td></tr>
</table></td><td></td></tr>
<tr><td></td><td>●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td><td>●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또한,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 또한,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대표자(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붙임2>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2) 설치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확인 불요(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확인 필요 ● 설치신고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2) 설치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의 장,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사항 확인 준수 <삭제>	3번기관 설명을 2번기관 설명으로 대체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 조회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td><td></td><td></td></tr>
<tr><td></td><td>나) 서비스별 시설 · 인력기준
[주·야간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시설기준
(중략)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td><td>나) 서비스별 시설 · 인력기준
[주·야간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시설기준
(중략)
※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td><td>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준용</td></tr>
<tr><td></td><td>[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시설기준
(중략)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td><td>[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시설기준
(중략)
※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td><td>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준용</td></tr>
<tr><td></td><td>다) 병용, 겸직규정
● 겸직규정
<table><tr><th>병설유형</th><th>공동사용</th></tr><tr><td>●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td><td>●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td></tr><tr><td>●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td><td>●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 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수급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 (조무)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 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td></tr></table>(변경내용이 포함된 셀 발췌)</td><td>다) 병용, 겸직규정
● 겸직규정
<table><tr><th>병설유형</th><th>공동사용</th></tr><tr><td>●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td><td>●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단,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td></tr><tr><td>●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td><td>●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 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수급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 (조무)사는 수급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 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td></tr></table>(변경내용이 포함된 셀 발췌)</td><td>● 규정의 명확화</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별지 제22호서식) 작성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재가장기요양 기관(3) - 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의 '제 호' 는 지정서 발급된 순서 기재 ● 전산입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 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삭제>	3번 기관 신규진입 삭제
	4)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송부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4)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 - 송부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2번기관 신고필증 교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안내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2.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가.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가.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신고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 조회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3) 신청서 수리 (중략)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 기관(3) - 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3) 신청서 수리 (중략)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 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3. 신규류 복지용구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 법적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신규로 복지용구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 법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5호 – 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③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④ 장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약국 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비서류 필요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이용료, 그 밖에 이요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③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④ 장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증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	
	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1) 시설의 규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다음 ①부터 ③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세정 및 소독(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제외)등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 56.2㎡이상	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1) 시설의 규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득·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2) 시설 및 설비 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table><tr><th>구분</th><th>사무실</th><th>진열 및 체험공간</th><th>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th></tr><tr><td>복지용구</td><td>○</td><td>○</td><td>○</td></tr></table>
3) 인력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table><tr><th>관리책임자</th><th>사무원</th></tr><tr><td>1명</td><td>필요한 인원</td></tr></table></td><td>2) 시설 및 설비 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③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배수시설 및 소독·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④ 복지용구 보관·관리·대여 공간

3)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table><tr><th>관리책임자</th><th>사무원</th></tr><tr><td>1명</td><td>필요한 인원</td></tr></table>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td><td></td></tr>
<tr><td></td><td>4.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18.12.1일 현재)
1) 구입 품목(10종)
<table><tr><th colspan="2">품목명(고시제품 수)내구연한</th></tr><tr><td>① 이동변기 (22)</td><td>5년</td></tr><tr><td>② 목욕의자 (22)</td><td>5년</td></tr><tr><td>③ 성인용보행기 (37)</td><td>5년</td></tr><tr><td>④ 안전손잡이 (73)</td><td>-</td></tr><tr><td>⑤ 미끄럼방지용품 (87)</td><td>-</td></tr><tr><td>⑥ 간이변기 (11)</td><td>-</td></tr><tr><td>⑦ 지팡이 (49)</td><td>2년</td></tr><tr><td>⑧ 욕창예방방석 (25)</td><td>3년</td></tr><tr><td>⑨ 자세변환용구 (18)</td><td>-</td></tr><tr><td>⑩ 요실금팬티 (8)</td><td>-</td></tr></table></td><td>4.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20.2월 기준)
1) 구입 품목(10종)
<table><tr><th colspan="2">품목명(고시제품 수)사용 가능 횟수</th></tr><tr><td>① 이동변기 (25)</td><td>5년</td></tr><tr><td>② 목욕의자 (14)</td><td>5년</td></tr><tr><td>③ 성인용보행기 (47)</td><td>5년</td></tr><tr><td>④ 안전손잡이 (71)</td><td>-</td></tr><tr><td>⑤ 미끄럼방지용품 (85)</td><td>-</td></tr><tr><td>⑥ 간이변기 (9)</td><td>-</td></tr><tr><td>⑦ 지팡이 (46)</td><td>2년</td></tr><tr><td>⑧ 욕창예방방석 (14)</td><td>3년</td></tr><tr><td>⑨ 자세변환용구 (15)</td><td>-</td></tr><tr><td>⑩ 요실금팬티 (28)</td><td>-</td></tr></table></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2) 대여 품목(7종) 품목명(고시제품 수)내구연한 ① 수동휠체어 (72) 5년 ② 전동침대 (74) 10년 ③ 수동침대 (15) 10년 ④ 이동욕조 (5) 5년 ⑤ 목욕리프트 (2) 3년 ⑥ 경사로 (7) 8년 ⑦ 배회감지기(10) 5년 3) 구입 또는 대여 품목(1종) 품목명(고시제품 수)내구연한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36) 3년	2) 대여 품목(7종) 품목명(고시제품 수)사용 가능 횟수 ① 수동휠체어 (67) 5년 ② 전동침대 (78) 10년 ③ 수동침대 (13) 10년 ④ 이동욕조 (5) 5년 ⑤ 목욕리프트 (1) 3년 ⑥ 경사로 (6) 8년 ⑦ 배회감지기(9) 5년 3) 구입 또는 대여 품목(1종) 품목명(고시제품 수)사용 가능 횟수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36) 3년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년간 다. 복지용구 제품 : 573개 제품 ('18.12.1일 현재)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다. 복지용구 제품 : 564개 제품 ('20.2월 기준)	
	Ⅱ. 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행정처분 등 Ⅱ-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2. 변경신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Ⅱ. 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행정처분 등 Ⅱ-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2.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사항 가. 변경지정 사항 ●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제도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나. 변경신고 사항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3. 변경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 ※ 인력변경 신고는 제외하며, 절차는 하단 참조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인력(변경)현황(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신규인력이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 인력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자격 증명서 및 자격유에 증빙서류 첨부 • 시설(변경)현황(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입소·이용 정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시) →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인력변경 신고 ※ 2011. 4.7.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3.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절차 가. 변경지정 신청자 ● 접수처 : 신청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19호의2) ※ 인력변경 신고는 제외하며, 절차는 하단 참조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인력(변경)현황(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2 인력(변경)현황 서식 ※신규인력이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 인력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자격 증명서 및 자격유에 증빙서류 첨부 • 시설(변경)현황(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 시설(변경)현황 서식 ●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변경신고) 제3항에 따라 2011.10.7부터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 입사, 퇴사, 휴직, 복직, 근무자격 변경 등 인력변경 사항 - 신고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고 - 신고절차 (중략)	고)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청 대상 : 입사, 퇴사, 휴직, 복직, 근무자격 변경 등 인력변경 사항 -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에 신청 - 신청절차 (중략)	
		나. 변경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구비서류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입소·이용 정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시) →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나. 시·군·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다. 시·군·구 행정사항 ● 변경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변경내역 처리요령 -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다. 변경기준의 항목에 따라 변경처리하거나 지정취소처리 후 신규 지정 ● 신고서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	● 변경내역 처리요령 -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다. 변경기준의 항목에 따라 변경처리하거나 지정취소처리 후 신규 지정 ●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서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변경지정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류는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재사항의 변동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기재 사항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회수하고 신규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재출력하여 신고인에게 송부</td><td>신청 또는 변경신고는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의 변경지정 신청 또는 신고서류는 반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재사항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지정서를 회수하고 신규 지정서를 재출력하여 신고인에게 송부</td><td></td></tr>
<tr><td></td><td>다. 변경기준
<table><tr><th>구 분</th><th>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h>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r><tr><td>기관설립 주체변경</td><td>-</td><td>지정취소 후 신규지정</td></tr><tr><td>대표자 변경</td><td>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td><td>변경신고로 처리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td></tr><tr><td>법인등록 번호변경</td><td>-</td><td>지정취소 후 신규지정</td></tr><tr><td>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변경</td><td>●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 변경신고 처리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td><td></td></tr><tr><td>장기요양 급여종류, 급여종류 추가, 입소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변경</td><td>●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변경신고와 병행하여야 함
● 재가서비스의 경우 급여 종류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신고급여의 종류로 처리(기관 전체를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td><td></td></tr><tr><td>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의 행정절차</td><td>● 변경신고로 처리
- 공동명의로 설치신고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동명의자 일부만 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신규로 설치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요양보험운영과-332, 2010.1.29. 회신문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은 법인대표자로 체크하고 변경내역에는 공동명의 변경으로 표기, '변경전' 및 '변경후' 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td><td></td></tr></table></td><td>다. 변경기준
<table><tr><th>구 분</th><th>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h>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r><tr><td>기관설립 주체변경</td><td>-</td><td>지정취소 후 신규지정</td></tr><tr><td>대표자 변경</td><td>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td><td>변경신고로 처리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td></tr><tr><td colspan="3">• 지자체 설치·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위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로 처리</td></tr><tr><td>법인등록 번호변경</td><td>-</td><td>지정취소 후 신규지정</td></tr><tr><td>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변경</td><td colspan="2">•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 변경신고 처리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td></tr><tr><td>장기요양 급여종류, 급여종류 및 형태, 인력현황, 시설현황 변경</td><td colspan="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변경신고와 병행하여야 함
• 재가서비스의 경우 급여 종류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지정(급여의 종류로 처리(기관 전체를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td></tr><tr><td>입소정원</td><td colspan="2">•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td></tr><tr><td>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의 행정절차</td><td colspan="2">• 변경신고로 처리
- 공동명의로 설치신고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동명의자 일부만 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신규로 설치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요양보험운영과-332, 2010.1.29. 회신문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은 법인대표자로 체크하고 변경내역에는 공동명의 변경으로 표기, '변경전' 및 '변경후' 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td></tr></table></td><td>지자체 의견 반영</td></tr>
<tr><td></td><td>II-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2. 신고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td><td>II-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2. 신고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td><td>규제혁신 건의 반영</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설치신고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폐업일과 설치신고수리일을 동일일로 처리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설치신고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폐업일과 설치신고수리일을 동일일로 처리 - 대표자 사망 등 급작스런 부재 시, 수급자 보호조치를 위해 사망 후 폐업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사망한 대표자의 상속인이 행정절차법 제10조* 에 따라 폐업신고할 수 있는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폐업 또는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 가능하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대표자 사망에도 상속인이 폐업신고 등을 해태하거나 시설·인력현황 등 변경에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3. 신고절차 다. 처리방법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 시·군·구 담당자는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이 예정된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자 전원조치 검토 또는 시행 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시설에 우선적으로	3. 신고절차 다. 처리방법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 시·군·구 담당자는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이 예정된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자 전원조치 검토 또는 시행 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관(행정처분 중이	● 행정처분 기관의 지자체 관리강화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전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닌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전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4.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2. 행정처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1. 일반기준 (중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Ⅱ-4.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2. 행정처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1. 일반기준 (중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	3)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 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 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 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3) 삭제<2019. 6. 12.>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표 교체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 (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 (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전체 삭제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3. 행정처분절차 (중략) ● 행정처분 통보서 (중략)	3. 행정처분절차 (중략) ● 행정처분 통보서 (중략) ※(협조사항)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확정된 행정처분 내용은 행복e음 전산에 반드시 입력하여 향후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① 기관 행정처분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행복e음) 입력*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산등록 매뉴얼」 참조(사회보장정보원) ②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입력 ③ 장기요양요원 급여제공제한 : 시군구 → 시도 취합 →건보공단 통보	행정처분 입력 관련 시군구 협조사항 추가
	II-5.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신고) 금지기간 2. 재지정(신고) 금지기간 기준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금지	II-5.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2. 재지정 금지기간 기준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금지	재가장기요양기관 삭제에 따른 변경사항
	(신설)	'II-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장 전체	제도변경
	별첨-1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 일반기준 3. 세입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별첨-1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 일반기준 3. 세입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세입처리 명확성 제고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 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 “장기요양급여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td><td>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 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입처리기준은 별첨-2에 따른다.</td><td></td></tr>
<tr><td></td><td>4. 세출처리 및 정산방법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중
(중략)
<table><tr><th colspan="6">과목</th><th rowspan="2">명세</th></tr><tr><th colspan="2">관</th><th colspan="2">항</th><th colspan="2">목</th></tr><tr><td>04</td><td>전출금</td><td>41</td><td>전출금</td><td>411</td><td>법인회계 전출금</td><td>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td></tr><tr><td></td><td></td><td></td><td></td><td>412</td><td>기타 전출금</td><td>기타 법인, 개인 등 설차·운영자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td></tr></table>
(1) 퇴직금 제도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함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님(단, 국공립 및 법인은 적립 가능)
(2)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대표 또는 시설장은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근거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td><td>4. 세출처리 및 정산방법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중
(중략)
<table><tr><th colspan="6">과목</th><th rowspan="2">명세</th></tr><tr><th colspan="2">관</th><th colspan="2">항</th><th colspan="2">목</th></tr><tr><td>04</td><td>전출금</td><td>41</td><td>전출금</td><td>411</td><td>법인회계 전출금</td><td>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td></tr><tr><td></td><td></td><td></td><td></td><td>412</td><td>기타 전출금</td><td>기타 법인, 개인 등 설차 운영자로의 전출금</td></tr></table>
(1) 퇴직금 제도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함
– 대표자 또는 대표자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님
(2)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대표 또는 시설장은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근거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td><td></td></tr>
<tr><td></td><td>6.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원금 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관리
(중략)
(신설)</td><td>6.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원금 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관리
(중략)
● 운영비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액 및 이자,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td><td>감사원 지적사항 반영</td></tr>
</table>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신설)</td><td><붙임1>
<u>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u>
<table><tr><td>접수번호</td><td>접수일</td><td></td></tr><tr><td rowspan="2">신고인</td><td>시설명</td><td>대표자 성명</td></tr><tr><td>소재지</td><td>전화번호</td></tr><tr><td>차입금액 및 연간이자</td><td colspan="2"></td></tr><tr><td>차입사유 및 용도</td><td colspan="2"></td></tr><tr><td>상환계획 또는 방법
* 상환년도, 금액, 재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td><td colspan="2"></td></tr></table>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 목적을 위해 차입한 사항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table><tr><td>첨부서류</td><td>1. 차입관련 증빙 서류(대출계약서 등) 사본 1부
2. 차입금 상환 계획서 1부</td><td>수수료 없음</td></tr></table></td><td>감사원 지적사항 반영</td></tr>
<tr><td></td><td>별첨-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9.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
다.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
●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u>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u> 법인의 대표자(또는 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또는 설치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모두 시설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td><td>별첨-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9.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
다.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
●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할 경우,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또는 설치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모두 시설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td><td>● 적립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td></tr>
<tr><td></td><td>11. 결산서 제출 관리
가. 세입결산서
(중략)
● 세입결산서에서의 본인부담금수입과 1년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수입이 일치 하여야 한다.</td><td>11. 결산서 제출 관리
가. 세입결산서
(중략)
● 세입결산서에서의 본인부담금수입과 1년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수입이 일치하여야 한다.</td><td>감사원 지적 반영</td></tr>
</table>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td><td>※ 시·군·구에서는 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결산서 자동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상의 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하여야 함</td><td></td></tr>
<tr><td></td><td>12. 인건비 지출 관리
(중략)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건비지급비율에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는 결산서에서 세입 처리된 장기요양급여수입+본인부담금수입과 세출 처리된 직접인건비로 산출한다.
<table>
<tr><th>구분</th><th>장기요양요원</th><th>인건비 지출비율 (%)</th></tr>
<tr><td>노인요양시설</td><td>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60.2</td></tr>
<tr><td>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td><td>64.7</td></tr>
<tr><td>주야간보호</td><td>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48.0</td></tr>
<tr><td>단기보호</td><td>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58.3</td></tr>
<tr><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td><td>86.4</td></tr>
<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td><td>49.1</td></tr>
<tr><td>방문간호</td><td>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td><td>59.0</td></tr>
<tr><td colspan="3">※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td></tr>
</table></td><td>12. 인건비 지출 관리
(중략)
<삭제>
<table>
<tr><th>구분</th><th>장기요양요원</th><th>인건비 지출비율 (%)</th></tr>
<tr><td>노인요양시설</td><td rowspan="4">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60.4</td></tr>
<tr><td>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64.9</td></tr>
<tr><td>주야간보호</td><td>48.1</td></tr>
<tr><td>단기보호</td><td>58.3</td></tr>
<tr><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td><td>86.5</td></tr>
<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td><td>49.2</td></tr>
<tr><td>방문간호</td><td>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td><td>59.3</td></tr>
<tr><td colspan="3">※ 인건비 지출비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td></tr>
</table></td><td></td></tr>
<tr><td></td><td></td><td>‘별첨-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장 전체 신설</td><td>세입처리 명확성 제고를 위한 신설</td></tr>
<tr><td></td><td>별첨-2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td><td>별첨-3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별첨-3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관련 서식 (중략)	별첨-4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관련 서식 (중략)	양식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2. 7.)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이 없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정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상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이 없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상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인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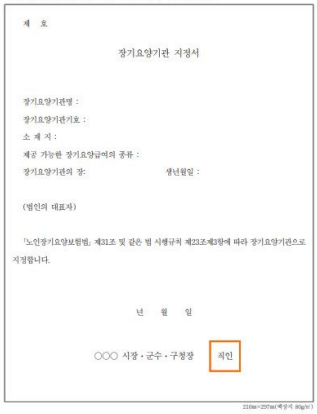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소 재 지 :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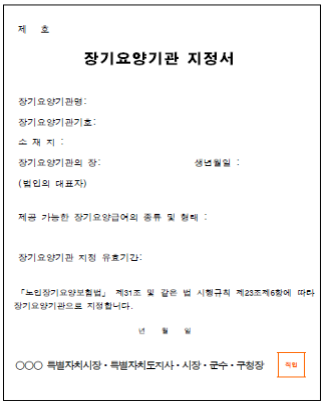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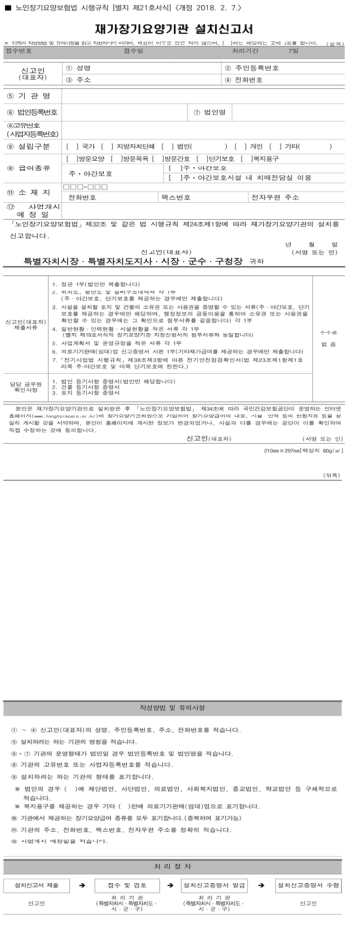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대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 관 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 법인명 ⑧간호사 (사업자등록번호) ⑨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⑩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 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⑬ 사업개시 예 정 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부서도, 본인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농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관장에(업대)법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자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주·야간보호 및 아목 단기보호에 한한다.) 수수료 없 음 당담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됨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정보의 구성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실 인에 의한자의 요청 보 설치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적절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이 운영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업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하여 표기가능)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⑫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설치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인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개정에 따른 삭제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재가장기요양기관명: 재가장기요양기관장: 소재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8. 7.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 ⑤장기요양기관기호 /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 ]법인대표자 [ ]업소(이용)정원 ⑧ 변경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제출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3-8 노인실명예방사업	3 사업개요 가. 사업연혁 ● 사업기간 : '03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19,840,800천원('03~'18까지 투자액) ● 사업규모 : 안검진 175,801명, 개안수술 58,542안('03~'18년까지) 저시력예방교육 39,464명('10~'18년까지) ※ '18년도 실적 : 안검진 10,411명, 수술 7,718안(백내장 등 6,727안, 망막질환 991안)(자부담포함), 저시력예방교육 7,255명 나. 2019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다. 사업 집행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이하 '재단') ●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 라. 사업목표 : 안검진 대상인원 7,900명, 개안수술 7,657안, 저시력예방교육 7,000명 (노인 6,800명, 보건인력 200명) 마. 사업기간 : 2019년 1월~2019년 12월	3 사업개요 가. 사업연혁 ● 사업기간 : '03년 ~ 단년도 계속 나. 사업 집행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이하 '재단') ●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 다. 사업목표 : 안검진 대상인원 7,900명, 개안수술 7,657안, 저시력예방교육 7,000명 (노인 6,800명, 보건인력 200명) 라. 사업기간 : 2020년 1월~2020년 12월	
	4 노인 안검진 사업 다. 대상지역 선정기준 - 시·도별 신청을 받아 예산상 수용인원('19년 7,900명)에 맞추어 안검진 대상지역 및 안검진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지역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4 노인 안검진 사업 다. 대상지역 선정기준 - 시·도별 신청을 받아 예산상 수용인원에 맞추어 안검진 대상지역 및 안검진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지역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7. 행정사항 나. 실적 보고 등 추진일정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19. 2.	7. 행정사항 나. 실적 보고 등 추진일정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20. 2.	
3-9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	3 사업개요 ● 2019년 사업비 : 29.9억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26.5억원 * '18년 수술비 지원인원 약 2,200명 - 교육·홍보 및 관리운영비 : 3.4억원	3 사업개요 ● 2020년 사업비 : 29.9억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26.5억원 - 교육·홍보 및 관리운영비 : 3.4억원	
	7 교육 및 홍보 ● 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 (중략) - (대상 및 기간) 전국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	7 교육 및 홍보 ● 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 (중략) - (대상 및 기간) 전국 60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	
3-10 노인 건강진단	6. 행정사항 가. 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중략)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제출된 1·2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와 노인 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상반기는 7월 2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신설)	6. 행정사항 가. 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중략)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제출된 1·2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와 노인 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상반기는 7월 2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전년도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시 우선 고려 ※ '20년도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시는 '18년도 사업실적도 고려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 전체 교체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4-3 경로당 운영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 등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 등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학습지·교구 활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등 ** 농·어·산촌 경로당의 경우, 인근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경로당과 경로당 간 화상 프로그램 등 활용 가능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치매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 연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농·어촌의 노인복지 인프라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화상 프로그램 예시
	4.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1) 사업방향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생략> 2) 사업내용 가) 협의체 구성 -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생략>	4.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1) 사업방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생략> 2) 사업내용 가) 협의체 구성 -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생략>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폐지('17년)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7. 행정사항 ● 경로당 운영관련 사항 <신규>	7. 행정사항 ● 경로당 운영관련 사항 - 경로당 이용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냉·난방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경로당 실내온도를 이용자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높게 하거나 하여 에너지 낭비 등 언론 비판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별표 1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원/월) 직위(호봉) / 원장 / 사회복지사 / 생활복지사 / 간호사 / 생활기초원 / 생활복지원 / 취미지 / 기능지 1호봉 2,510,500 2,049,900 2,051,900 1,903,100 1,832,100 1,780,500 1,750,000 2호봉 2,601,600 2,227,400 2,119,200 1,909,400 1,861,300 1,823,100 1,791,200 3호봉 2,700,900 2,417,400 2,189,400 2,053,400 1,910,400 1,866,300 1,823,700 4호봉 2,804,300 2,609,700 2,263,500 2,127,300 1,967,900 1,903,400 1,864,500 5호봉 2,923,600 2,809,100 2,338,200 2,193,400 2,023,200 1,943,400 1,904,900 6호봉 3,052,200 2,720,300 2,426,300 2,238,300 2,083,600 2,000,100 1,955,400 7호봉 3,177,100 2,835,600 2,594,100 2,330,000 2,175,500 2,091,200 1,995,500 8호봉 3,302,500 2,952,300 2,702,900 2,472,200 2,266,300 2,169,300 2,056,700 9호봉 3,423,900 3,077,100 2,814,700 2,569,900 2,357,200 2,217,300 2,129,500 10호봉 3,549,000 3,200,100 2,923,300 2,660,300 2,444,000 2,297,300 2,220,600 11호봉 3,669,100 3,315,100 3,021,700 2,751,100 2,534,400 2,379,200 2,276,900 12호봉 3,797,100 3,415,300 3,111,500 2,837,200 2,590,100 2,453,300 2,341,500 13호봉 3,933,400 3,508,100 3,139,900 2,900,400 2,653,900 2,523,400 2,409,600 14호봉 3,971,200 3,590,700 3,266,100 2,970,400 2,716,600 2,581,900 2,468,900 15호봉 4,054,700 3,673,500 3,339,200 3,037,400 2,776,100 2,626,700 2,507,700 16호봉 4,133,300 3,756,900 3,408,100 3,101,900 2,837,700 2,677,900 2,556,300 17호봉 4,207,700 3,824,300 3,473,900 3,162,500 2,899,000 2,727,900 2,605,900 18호봉 4,277,300 3,892,900 3,537,600 3,221,000 2,957,600 2,778,100 2,650,200 19호봉 4,343,300 3,953,600 3,594,100 3,275,200 3,010,100 2,820,500 2,731,200 20호봉 4,401,300 4,017,200 3,650,500 3,323,300 3,061,300 2,861,400 2,774,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707,300 3,377,400 3,107,400 2,910,200 2,822,200 22호봉 4,514,700 4,122,700 3,752,900 3,424,100 3,153,900 2,965,600 2,873,500 23호봉 4,566,100 4,173,200 3,800,300 3,468,900 3,196,300 3,023,100 2,933,600 24호봉 4,614,900 4,220,200 3,843,000 3,511,000 3,238,200 3,076,300 2,987,300 25호봉 4,662,200 4,267,300 3,884,900 3,552,900 3,277,900 3,125,400 3,042,500 26호봉 4,701,100 4,308,200 3,925,200 3,593,200 3,314,500 3,163,200 3,092,900 27호봉 4,740,700 4,346,900 3,960,300 3,626,100 3,345,300 3,210,500 3,135,100 28호봉 4,775,200 4,381,300 3,990,700 3,655,900 3,372,200 3,239,700 3,166,700 29호봉 4,801,600 4,410,500 4,019,100 3,683,700 3,397,400 3,272,300 3,199,400 30호봉 4,823,300 4,441,200 4,045,400 3,708,100 3,421,100 3,292,400 3,223,600 31호봉 – 4,460,400 4,071,600 3,736,600 3,443,500 3,316,300 3,251,100	별표 1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원/월) 직위(호봉) / 원장 / 사회복지사 / 생활복지사 / 간호사 / 생활기초원 / 생활복지원 / 취미지 / 기능지 1호봉 2,580,800 2,312,900 2,109,400 1,982,100 1,883,400 1,830,400 1,799,000 2호봉 2,674,400 2,392,600 2,179,200 2,045,100 1,913,400 1,874,100 1,831,700 3호봉 2,776,500 2,485,100 2,250,700 2,116,000 1,963,900 1,918,600 1,874,800 4호봉 2,882,800 2,580,000 2,347,400 2,187,400 2,023,000 1,961,800 1,916,700 5호봉 3,010,600 2,682,200 2,449,900 2,260,000 2,085,000 2,003,000 1,958,200 6호봉 3,138,300 2,797,000 2,555,900 2,352,400 2,147,100 2,056,100 2,010,200 7호봉 3,266,100 2,911,900 2,666,700 2,446,800 2,236,400 2,149,800 2,051,400 8호봉 3,395,000 3,035,500 2,778,600 2,542,000 2,329,800 2,230,000 2,113,800 9호봉 3,524,900 3,163,300 2,895,500 2,641,900 2,423,200 2,279,400 2,189,100 10호봉 3,648,400 3,289,700 3,004,100 2,734,800 2,512,400 2,362,100 2,282,800 11호봉 3,771,800 3,407,900 3,106,900 2,828,100 2,595,100 2,445,900 2,340,700 12호봉 3,893,100 3,510,900 3,196,600 2,906,400 2,662,600 2,522,000 2,407,100 13호봉 3,997,300 3,601,200 3,279,200 2,981,600 2,728,200 2,594,100 2,477,100 14호봉 4,082,400 3,691,200 3,357,600 3,053,600 2,792,700 2,654,200 2,532,900 15호봉 4,168,200 3,781,500 3,432,700 3,122,400 2,853,800 2,700,200 2,577,900 16호봉 4,249,500 3,862,100 3,508,500 3,188,800 2,917,200 2,752,900 2,628,400 17호봉 4,325,500 3,991,900 3,571,200 3,251,100 2,980,200 2,804,300 2,678,900 18호봉 4,397,600 4,001,900 3,636,700 3,311,200 3,040,400 2,855,900 2,755,200 19호봉 4,464,900 4,064,300 3,694,700 3,366,900 3,094,400 2,899,500 2,807,700 20호봉 4,525,100 4,124,500 3,752,700 3,421,500 3,147,000 2,941,500 2,852,000 21호봉 4,584,200 4,183,700 3,806,200 3,472,000 3,194,400 2,991,700 2,901,800 22호봉 4,641,100 4,238,100 3,858,000 3,520,000 3,242,200 3,048,600 2,959,100 23호봉 4,694,000 4,290,000 3,907,200 3,566,000 3,285,800 3,107,700 3,015,700 24호봉 4,744,100 4,338,400 3,950,600 3,610,100 3,328,900 3,162,400 3,071,500 25호봉 4,792,700 4,386,800 3,998,700 3,652,400 3,369,700 3,212,900 3,127,700 26호봉 4,832,700 4,428,800 4,035,700 3,693,800 3,407,300 3,256,900 3,179,500 27호봉 4,873,400 4,468,600 4,071,200 3,727,600 3,439,500 3,300,400 3,222,900 28호봉 4,908,900 4,504,000 4,102,400 3,758,300 3,466,600 3,330,400 3,255,400 29호봉 4,936,000 4,534,000 4,131,600 3,786,800 3,492,500 3,363,900 3,289,000 30호봉 4,958,900 4,565,600 4,158,700 3,811,900 3,516,900 3,384,600 3,311,000 31호봉 – 4,585,900 4,185,600 3,841,200 3,545,100 3,419,400 3,342,100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3. 노인복지관 운영 마.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유형 구분 – (기본사업) ..... •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포함 건강증진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3. 노인복지관 운영 마.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유형 구분 (기본사업) .....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전문상담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사업,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건강증진지원*),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 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커뮤니티 케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 정책사업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본사업 기존 내용 재조정 및 정렬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치매발병 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원예·미술·음악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치매발병 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두뇌·신체·영양사회성 등 분야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치매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적 지원 영역 구체적 명시
	–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 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등	–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 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등	가족통합서비스를 가족기능지원사업 세부 내용으로 포함(사업 구분 간소화)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2) 사업별 세부내용 ●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금상담 등),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치매 종합상담, 노인학대 상담(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 노인 성상담, 노인자살예방사업, 복지 정보제공, 상담 등	2) 사업별 세부내용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금상담 등)	- 일반 노인복지 정보제공 및 일반 이용상담, 외부 전문가 연계 상담으로 사업내용 구체화, - 심리상담 등은 전문상담 사업으로 재분류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심리·정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전문상담 사업** -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심리·정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생활을 지원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개별 혹은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심리상담, 치매 종합상담, 노인학대 상담(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 노인 성상담 등	노인 심리 정서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전문상담 사업으로 명칭 변경 및 내용 구체화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사업 등 진행 -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돌봄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취약 노인에게 우선적인 지원사업 시행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내 위기 및 취약 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사업 등 진행 -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취약 노인에게 우선적인 지원사업 시행	독거노인 뿐 아니라 노인부부세대, 조손가족, 장애인자녀 부양 노인 등 실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 대상에 대한 명시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신규>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 노인의 일상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반응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 돌봄 서비스 등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 케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읍면동 허브화 사업 등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구체 명시
	● **건강생활지원 사업** • **건강증진지원**: 건강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 상담, 건강교실 운영(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인지활동서비스), 이·미용, 물리치료	● **건강생활지원 사업** • **건강증진지원**: 건강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 상담, 건강교실 운영(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공중위생관리법 및 지역내 민원 발생 등으로 이·미용 삭제
	● **평생교육지원 사업** - 노년기의 연장과 <생략>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 프로그램 등	● **평생교육지원 사업** - 노년기의 연장과 <생략>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프로그램, 은퇴후 경제적 노후설계를 위한 경제교육, 웰다잉교육 등	사업 구분(노년사회화교육)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추가
	● **노인권익증진 사업** - 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정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 **노인권익증진 사업** - 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 정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인권교육 필요성 추가
	●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 저소득 노인에 대한 후원금 연결과 은퇴 후 경제적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교육 실시	●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 저소득 노인에 대한 후원금 연결	고령자 대상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사업 내용 구체화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2019년 안내</th><th>2020년 안내</th><th>변경사유</th></tr>
<tr><td></td><td>- 노인의 사회참여 <생략>
• 고용자취업지원 사업, 경제교육, 노후준비교육 등</td><td>- 노인의 사회참여 <생략>
• 고용자취업지원 사업, 고령자 창업 지원(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등</td><td></td></tr>
<tr><td></td><td>● 가족기능지원 사업
- 요보호노인으로 <생략>
● 가족통합지원 사업
-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사업</td><td>● 가족기능지원 사업
- 요보호노인으로<생략>
-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 가족 통합 지원 사업</td><td>기존 가족통합서비스를 가족기능지원사업 세부 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 구분 간소화</td></tr>
<tr><td></td><td>[노인복지관 사업구분]
<table><tr><th colspan="2">사업 구분</th><th>프로그램 (예시)</th></tr><tr><td rowspan="2">상담</td><td>상담 및 정보제공</td><td>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우울상담), 집단상담, 자원상담, 노인학대상담 등</td></tr><tr><td>정서 및 사회생활지원</td><td>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td></tr><tr><td>사례관리</td><td>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td><td>취약노인의 신와·정서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응급안전장갑독거센터 및 유관기관 통과 연계 (취약노인연계협력구축사업)</td></tr><tr><td rowspan="3">건강생활지원</td><td>가족기능지원</td><td>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td></tr><tr><td>건강증진지원</td><td>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프로그램(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킴이사업, 건강 경기사업, 인구술, 노인건강증등, 지역에맞춤 일과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td></tr><tr><td>기능회복지원</td><td>방, 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td></tr><tr><td rowspan="3">노년사회교육</td><td>문화지원</td><td>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밥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td></tr><tr><td>평생교육지원</td><td>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td></tr><tr><td>취미여가지원</td><td>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동아리, 손선개발,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td></tr><tr><td rowspan="3">지역조직 및 자원봉사</td><td>지역자원개발</td><td>자원봉사자 발굴 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td></tr><tr><td>지역복지연계</td><td>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 (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td></tr><tr><td>주거지원</td><td>주변시설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td></tr><tr><td rowspan="3">사회참여 및 권익증진</td><td>가족통합지원</td><td>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td></tr><tr><td>사회참여지원</td><td>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복지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 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td></tr><tr><td>노인권익증진</td><td>경찰연계, 노인인권 후호, 노인인식개선사업, 권리지킴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td></tr><tr><td colspan="2">교육 및 소득지원</td><td>고령자취업지원 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td></tr><tr><td colspan="2">돌봄</td><td>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td></tr></table>※기타 게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td><td>[노인복지관 사업구분]
<table><tr><th colspan="2">사업 구분</th><th>프로그램(예시)</th></tr><tr><td rowspan="3">상담</td><td>일반상담 및 정보제공</td><td>노인의 욕구 정보 제공, 일반상담(이중상담, 접수상담)
의무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 상담경계,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우울상담), 집단상담, 자원상담, 노인학대상담 등</td></tr><tr><td>정서 및 사회생활지원</td><td>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역할 및 인형, 인지 및 행동 상담 상담, 태도, 상담, 관계개선관계, 떠난관계, 재난관계 등) 등에 대한 개별 혹은 집단 개입 등</td></tr><tr><td>전문상담</td></tr><tr><td rowspan="3">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td><td>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td><td>취약노인의 신와·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응면응불장독지센터 및 유관기관 통과 연계(취약노인연계협력구축사업)</td></tr><tr><td>지역사회 생활지원체계 및 지원</td><td>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반옹여망감하옹 위한 지원 활동
지역사회 중인통 욕지 취브회의 맞춤 돌봄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연계</td></tr><tr><td>가족기능지원</td><td>노인과 관련된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td></tr><tr><td rowspan="2">건강생활지원</td><td>건강증진지원</td><td>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노인건강증등, 지역에맞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td></tr><tr><td>기능회복지원</td><td>방, 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td></tr><tr><td rowspan="3">노년사회참여교육</td><td>문화지원</td><td>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밥반찬 · 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td></tr><tr><td>평생교육 지원</td><td>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참여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과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경제교육, 웰라상교육 등</td></tr><tr><td>취미여가지원</td><td>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동아리, 손선개발,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td></tr><tr><td rowspan="2">지역자원 및 조직화</td><td>지역자원개발</td><td>자원봉사자 발굴 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td></tr><tr><td>지역복지연계</td><td>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 (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td></tr><tr><td rowspan="3">사회참여 및 권익증진</td><td>주거지원</td><td>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td></tr><tr><td>사회참여지원</td><td>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 봉사, 동아리 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td></tr><tr><td>노인권익증진</td><td>정책건의, 노인인권 후호, 노인인식개선사업, 권리지킴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td></tr><tr><td colspan="2">교육 및 소득지원</td><td>고령자취업지원 사업, 취업교육,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 등</td></tr><tr><td colspan="2">돌봄</td><td>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등</td></tr></table>※기타 게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td><td></td></tr>
<tr><td>4-5 노인교실</td><td>(신설)</td><td>‘4-5. 노인교실’ 장 전체 신설</td><td></td></tr>
<tr><td>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td><td>‘5-1. 노인돌봄기본서비스’</td><td>‘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 전체 교체</td><td>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td></tr>
<tr><td></td><td>‘5-3. 노인돌봄종합서비스’</td><td>‘5-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 전체 삭제</td><td></td></tr>
<tr><td>5-3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td><td>5-4.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td><td>5-4.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td><td></td></tr>
</tabl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3조제1항) 2.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34조) 6.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1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1.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12.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1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인지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인지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4 부터 제39조의9 까지, 제39조의11, 제39조의12, 제39조의15 부터 17 까지, 제39조의18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4 부터 제39조의9 까지, 제39조의11, 제39조의12, 제39조의15 부터 제39조의18까지, 제39조의20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 기타업무 (중략)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 기타업무 (중략) ●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신분조회 요청 절차)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략)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중략)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신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중략) ●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사실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 통보 (서식 5-2)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사실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노인복지법」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 통보 (서식 5-2)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중략) ●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중략) - 상담원은「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4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 전문교육 이수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중략) ●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중략) - 상담원은「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5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 전문교육 이수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가.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나) 경찰관서 (중략) ● 경찰관서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사실 (서식 5-2)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가.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나) 경찰관서 (중략) ● 경찰관서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사실 (서식 5-2)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사) 신고의무자 직군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 및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 신고의무자 직군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예산 지원 ● 인건비 (중략) - 입·퇴사, 휴직 등 근무인력의 이동시 해당사항을 시·도지사에 지체 없이 신고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예산 지원 ● 인건비 (중략) - 입·퇴사, 휴직 등 근무인력의 이동시 해당사항을 시·도지사에 지체 없이 보고	
	● 사업비 사용방법 - 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방법 - 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 가능	
	•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 삭제	(삭제)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9. 행정사항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중략) ※ 해당 연도의 총 입소기간을 초과할 경우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 (신설)	9. 행정사항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중략) ※ 해당 연도의 총 입소기간을 초과할 경우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 ※ 노인보호사업 일시보호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32개소) (노인학대 상담번호 전화 1577-1389 또는 110, 129) (2018. 12. 31. 기준) 구 분 / 주 소 / 연 락 처 / 홈 페 이 지 중앙(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회관 4층 / 02)3667-1389 / www.ninhoho.or.kr 서울특별시남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 02)572-1389 /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수유동) 3층 / 02)901-1389 / www.sn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3 (범일동) 5층 / 051)462-0350 / www.bn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9(연산동, 케이에스빌딩 5층 / 051)867-9119 / 1389.busanbo.or.kr 대구광역시남부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03, 3층 / 053)472-1389 / www.dn1389.or.kr 대구광역시북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로 224 / 053)357-1389 / www.dbn1389.or.kr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00 인천시서부복지관 2층 / 032)1426-0792~4 / www.ic1389.or.kr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5 / 062)655-4155~7 / www.gjw.or.kr/bl138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70번길 103 / 042)472-1389 /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1길 32-3 1층 / 052)285-1389 / www.us1389.or.kr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40번길 20 4층(신흥동복지관) 2층 / 031)736-1389 / www.gn1389.or.kr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뉴로 136번길 7 / 031)821-1461 / www.emnin.kr 경기서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3, 2층 / 032)1603-1389 / www.gsw1389.or.kr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 033)258-1389 / www.1389.or.kr 강원동부 / 강원도 강릉시 송곡로 2954, 3층 / 033)655-1389 / www.wd1389.or.kr 강원남부 / 강원도 원주시 공작로 170 (개운동) 2층 / 033)744-1389 / www.ws1389.co.kr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35개소) (노인학대 상담번호 전화 1577-1389 또는 110, 129) (2019. 12. 31. 기준) 구 분 / 주 소 / 연 락 처 / 홈 페 이 지 중앙(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회관 4층 / 02)3667-1389 / www.ninhoho.or.kr 서울특별시남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 02)572-1389 /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수유동) 3층 / 02)901-1389 /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구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벚꽃로12길 30-1, 3층 / 02)6337-1389 / www.snl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3 (범일동) 5층 / 051)462-0350 / www.bn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9(연산동, 케이에스빌딩 5층 / 051)867-9119 / 1389.busanbo.or.kr 대구광역시남부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03, 3층 / 053)472-1389 / www.dn1389.or.kr 대구광역시북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로 224 / 053)357-1389 / www.dbn1389.or.kr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00 인천시서부복지관 2층 / 032)1426-0792~4 / www.ic1389.or.kr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5 / 062)655-4155~7 / www.gjw.or.kr/bl138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70번길 103 / 042)472-1389 /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1길 32-3 1층 / 052)285-1389 / www.us1389.or.kr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40번길 20 4층(신흥동복지관) 2층 / 031)736-1389 / www.gn1389.or.kr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뉴로 136번길 7 / 031)821-1461 / www.emnin.kr 경기서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3, 2층 / 032)1603-1389 / www.gsw1389.or.kr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01번길 1,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031)252-1338 / www.ggsa.co.kr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 033)258-1389 / www.1389.or.kr 강원동부 / 강원도 강릉시 송곡로 2954, 3층 / 033)655-1389 / www.wd1389.or.kr 강원남부 / 강원도 원주시 공작로 170 (개운동) 2층 / 033)744-1389 / www.ws1389.co.kr	
	[서식 5-2호]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관할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의무위반 사실: 일 시 / 장 소 / 내 용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 소 속 / 직 급 / 전화번호 끝. ○○경찰관서장(○○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기안자 (또는 직급) 서명 검토자 (또는 직급) 서명 결재권자 (또는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서식 5-2호]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관할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의무위반 사실: 일 시 / 장 소 / 내 용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 소 속 / 직 급 / 전화번호 끝. ○○경찰관서장(○○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기안자 (또는 직급) 서명 검토자 (또는 직급) 서명 결재권자 (또는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5-4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Ⅱ. 설치 및 운영** **4. 운영** ● 급식위생 -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단표를 참고하여 제공 (신설)	**Ⅱ. 설치 및 운영** **4. 운영** ● 급식위생 -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단표를 참고하여 제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 제2항 [별표13]에 근거하여, 관할 보건소의 협조 요청	
	Ⅲ. 입소(이용) 및 퇴소 **3. 입소 및 이용** ● (대상)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Ⅲ. 입소(이용) 및 퇴소** **3. 입소 및 이용** ● (대상) 만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Ⅳ. 기타 행정사항 **5. 실적보고** (중략)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복지부에 16개 쉼터의 운영실적(매달 5일까지) 및 결과(매년 1월 10일까지)를 보고	**Ⅳ. 기타 행정사항** **5. 실적보고** (중략)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복지부에 17개 쉼터의 운영실적(매달 5일까지) 및 결과(매년 1월 10일까지)를 보고	
5-5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나.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2월 말까지 2019년 실적 제출 - 법 시행일('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나.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1년 2월 말까지 2020년 실적 제출 (삭제)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집합 교육]	2. 인권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3) 교육 신청방법 [집합 교육]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노인보호전문기관 (삭제)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신설)	※ 홈페이지를 통한 집합교육 신청 방법 ①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goldedu.or.kr) 접속 후 신청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지역선택 후 개설된 교육 확인 ③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버튼 클릭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교육자 이름, 생년월일 등 입력 ⑤ 교육 희망 시험장 교육장소에 장소(시험) 입 수강 * 교육 시간 접수, 이수 인정 시간(4시간)을 숙지하기 못할 시 미이수 처리될 수 있음 ⑥ 교육 종료 7일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 교육 이름클릭 → 낙론인권교육기술 이수증 출력
	- 시설(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 등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시설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삭제)	
	[인터넷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중략) ⑤ 교육 수강 * 세부교육일정은 2~3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인터넷 교육] (삭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신설)	* 총6시간으로 구성, 과정별 12차시 모두 완료하여야 6시간 수료 인정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4)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 강사 양성 · 관리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5)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2월 말까지 2019년 실적 제출 - 법 시행일('18년 4월 25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 제출대상 : 2019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4)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중도이탈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 강사 양성 · 관리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취득(유지) 후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5)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021년 2월 말까지 2020년 실적 제출 (삭제) ● 제출대상 : 2020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2> □ 교육 개요 (중략) ○ (교육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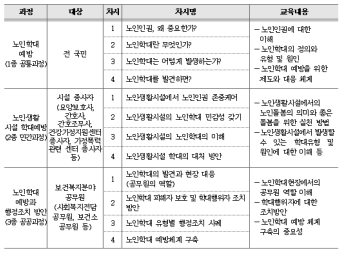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2> □ 교육 개요 (중략) ○ (교육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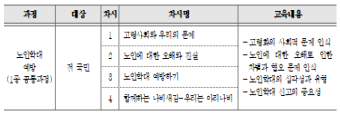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과정별 2시간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과정별 1시간	
7-1 장사정책 추진	1. 목적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목적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정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중략) ↘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중략) (신설)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중략) ↘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개선 (중략)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18~'22)에 대비하여 불법·무연분묘 정비 방안 개발	
	3. 주요 추진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시설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자연장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사업 집중 지원 ● 공설묘지는 재개발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또는 종합장사시설 조성 ● 공설봉안당은 민간시설 투자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투자 축소 검토 ● 첨단 화장로로 교체하여 열효율수준은 높이고 환경오염 문제 방지	3. 주요 추진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 지자체 간 공동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간 장사업무 협력 체계 구축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성·접근성 증대 ● 노후 화장로를 신형 화장로로 교체하여 화장서비스 편의성 제고 ●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 공설묘지 재개발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광역화장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확정		
	나.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장사시설 공동설치기준 완화 ● 주민참여·갈등 조정 절차 규정 ● 자연장지 조성 가능한 지역 확대 ● 화장사용료 편차개선 ●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원화 ● 친환경 화장용품 규격화·표준화	나.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화장시설의 관내·관외 요금 격차 해소 ※ 관내·관외 요금 격차는 원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 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서비스 증대 ※ 화장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이용 방안 모색	
	다. 장례서비스 개선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 마련 ●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후속조치 실시 ●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에 따른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시신의 위생관리 방법 등 하위법령 마련 ●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장사법령 관련 교육 실시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 실시	다. 장례서비스 개선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 제고를 위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실시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 실시	
	라.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 장사법령 및 정책안내, 민원질의답변, 장사시설에 대한 검색서비스, 관련 장사문화 및 화장료 감면혜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매·	라.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 장례절차 및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화장 관련 민원처리 ● 장사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장사 상담 서비스 확대 ●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망자 정보 등록 등 마.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 모범 자연장 조성사례 및 장사시설·문화 인식개선 등 관련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 ● 장사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하여 공모를 통한 시설유치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 ● 검소하고 소박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선진 장사문화 확산·보급을 위한 친자연적 장례 교육·홍보 확대 ● 기존 매장 관행에서 화장·자연장 문화로의 이행 가속화 유도 ※ 장사법 개정('15.12.29. 공포)에 따라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른 묘지 연장신청이 '31.1.13. 이후로 변경됨(적용대상은 기존처럼 2001.1.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	●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 장사시설 신축 시 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통한 시설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호화·사치 장례 근절 및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 추진	
7-2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2. 화장 나. 화장신고 ● 사전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위반시 행정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화장 나. 화장신고 ● 사전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 ※ 장사법상의 각종 신고는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 위반시 행정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 화장신고의 종류 - 시신의 화장신고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 화장신고의 종류 - 시신의 화장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 교부 -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 가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 교부	-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 (삭제)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다.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개장 가. 개장의 정의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3. 개장 가. 개장의 정의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종전의 분묘가 있던 구덩이(광중, 壙中) 파묻어야 함	
	나. 개장신고 ↘ 사전신고 :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신고관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나. 개장신고 ↘ 사전신고 :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신고관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 신고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용인시이면 용인시가 현존지가 되며, 이를 수원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가 개장지가 됨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묘지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 신고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다.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사전신고 후 개장(법 제8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위반시 행정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사전신고 후 개장(시행규칙 제2조)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위반시 행정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라.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신설)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략)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략) (삭제)	
	(신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행정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 봉안기간은 5년(2020.1.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며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행정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 봉안기간은 5년(2020.1.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골은 제외)하며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마.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중략) (신설)	마.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략) -개장허가증의 교부 ☞시장 등은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바.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개장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바.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개장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7-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1. 분묘 다. 분묘의 설치기간 ● 적용대상 분묘 (중략) (신설)	1. 분묘 다. 분묘의 설치기간 ● 적용대상 분묘 (중략)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 제외)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음	

세부사업명	2019년 안내	2020년 안내	변경사유
	라.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중략) (신설)	라.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 장사법 일부개정으로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15. 12. 29, 법률 제13660호). 단, 분묘 설치기간은 묘지 사용 계약기간과는 별개이므로 묘지 사용 계약은 15년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가능함	
	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중략) ☞봉안기간은 10년 (중략)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중략)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봉안기간은 10년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봉안기간은 5년(2020. 1. 7. 시행) (중략)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중략)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봉안기간은 5년(2020. 1. 7. 시행)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1-2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 격 기 준	
건강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5등급)의 자	※ 제도시행 : '08. 7. 1
	● 노인복지시설 (의료)	·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로서 · 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 시설로 통합 ('08.4.4)
	●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	
	● 치매검진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인 자	진단·감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 세부사업지침 추후 확정 및 통보예정
주거보장	● 노인복지시설 (주거)	·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통합 ('08.4.4)
사회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이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가병 방문지원ㅅ하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 '20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없음	※ 지방이양사업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지방이양사업
	●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없음	

1-3 2020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예산 (B)	증 감 (B-A)	증 감 (%)
총 계	2,598,504	3,471,981	873,477	33.6
[일 반 회 계]	2,331,557	3,223,522	891,965	38.3
● 양로시설 운영지원	36,336	38,619	2,283	6.3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4,763	5,003	240	5.0
● 노인보호전문기관	8,561	9,445	884	10.3
● 노인단체 지원	44,246	40,488	△3,758	-8.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2,396	372,797	260,401	231.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2,761	1,201,501	278,740	30.2
● 장사시설설치	44,016	46,893	2,877	6.5
● 고령친화산업육성	2,332	1,732	△600	-25.7
●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2,795	1,692	△1,103	-39.5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035,129	1,418,462	383,333	37.0
● 노인요양시설 확충	117,738	86,406	△31,332	-26.6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0	0.0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255,952	231,984	△23,968	-9.4
● 치매관리체계 구축	236,356	206,765	△29,591	-12.5
● 노인건강관리	19,596	25,219	5,623	28.7
[응 급 의 료 기 금]	10,995	16,475	5,480	49.8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0,995	16,475	5,480	49.8

* 일반회계는 노인정책관 기본경비 제외예산

Chapter 2

노인요양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1 노인주거복지시설 ····· 65
2–2 노인의료복지시설 ····· 102
2–3 재가노인복지시설 ····· 140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84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257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19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 322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 476

2-1 노인주거복지시설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1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15.7.29일부터 폐지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개정전의 규정에 따름

2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1)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은 우선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의뢰하여야 하며, 지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조치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0년도 3월에 202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19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9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9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주제별 통계 → 물가·가계 → 가계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도시(명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참고

3)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나. 노인복지주택

-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신규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내]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등급외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여야 함

[기존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내]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에 대하여 입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등급외자에 대하여 입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여야 함

3 입소절차

가. 무료 입소대상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나.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다.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4 퇴소 및 전원 절차

가. 공통사항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서류

  ①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④ 보조금·후원금의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⑤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 위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위의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① 위의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②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등

*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공포, '16.6.30 시행)

나. 무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의 사망, 시설의 전원,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장) 및 입소자 가족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의 전원 및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복지실시기관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당해 입소자의 요청이나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시설보호자 퇴소 및 전원 심의요청서를 복지실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시설보호자 퇴소 및 전원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복지실시 기관에서는 당해 입소자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 당해 시설보호자의 퇴소 및 전원 여부와 전원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시설장 및 해당 입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실비 및 유료 입소대상자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퇴소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가.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참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시설설치 부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 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참조)
  - 용도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08.8.4일부터)

다.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특히,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라.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2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 운영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사회보장위원회 '14.10.29보고)

4 시설운영비 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 12.5명당 1명, 사무원 1명(입소인원 100명 이상 시설),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시설), 조리원 2명(입소인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 50명당 1명

※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사무원, 관리원, 요양보호사, 위생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시간외근무수당〉
- 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야간근로·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계약의사 포함)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계약의사 및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제외)

* 기타 연도별 세부 지원기준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침 확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법인이 동일지역에 1개의 양로시설과 1개 이상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법인 및 개인이 2개 이상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 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할 수 있음)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 기존에 지원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 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산정
  -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함
  - 시설 종사자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 종사자 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6. 직원의 배치기준')
  - 양로시설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

나. 관리운영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936,2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468,2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
  - (예시)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일반 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소멸성 또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보장성 보험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다. 프로그램 사업비

- 국비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기초수급자 : 123,4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입소자 : 61,7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
  - (예시) 프로그램 사업비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가 프로 그램 등을 진행하기 위한 강사료, 재료구입비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라. 실비 입소자의 소득 확인 등

1) 실비 입소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 :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 월별 비용수납 권장액 : 449,3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권장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관리운영비에 생계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월별 비용수납 권장액의 예외 인정

- 예외 인정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월별 수납 권장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조건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3] 제4호)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5 국고 지원시설의 주요 운영지침

가. 연도별 예산신청 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양로시설 중 관할지자체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한해 지원
- 연도별 예산신청 안내 지침 확인(n-1년 3월에 시·도 배포)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절차

지원시설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주기
  - 신청주기 : 분기별로 첫월 5일 이내 복지부에 신청(1월, 4월, 7월, 10월)
  - 교부주기
    - 보건복지부는 분기별 첫월 15일까지 분기요구액을 시·도에 교부
    - 관할 지자체는 매월 25일 이내에 지원시설에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n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총괄표(시도별)
  - n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설별)
  - n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내역서(시설별)
  - n-1분기 국고보조금 정산 총괄표(시도별)
  - n-1분기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서(시설별)
  - n년도 국고보조금 결산내역(시도별)
-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 운영절차
  - 관할지자체는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시 지원시설로부터 교부신청 내역을 확인 후 입소현원 기준의 인력배치기준상의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월할계산하여 지원시설에 교부한다.

- 프로그램사업비는 반기별 연 2회로 나누어 50%씩 교부신청하며, 신청 당시 입소현원을 기준으로 신청한다.
- 프로그램사업비 교부신청시 프로그램의 제목, 일자, 내용, 비용 등을 상세히 기술한 프로그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는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한다. 또한, 사후 내용 및 비용 등 정상 추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금 정산

-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

지원시설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前분기 정산내역을 함께 제출
- 당해연도 (n-1)분기 정산내역을 (n)분기 교부신청금액에 가감 반영하여 교부 신청한다.
- 당해연도 4분기 정산내역 제출은 차기연도 1분기 교부신청시 함께 제출하며, 감액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반납고지 의뢰를 한다. (증액은 불인정)
- 시·도는 당해연도 시설별 정산내역을 차기년도 1월 20일까지 월별, 분기별 정산내역을 취합,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별 불용액 등에 대하여는 반납고지 의뢰 하여야 한다.

라. 국고지원시설의 세부 운영지침

- 국고지원 시설은 국가보장시설로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시설급여 전환 및 보장시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국가보장시설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과 시설별 적정 프로그램사업 수행 등 일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도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을 정원 규모를 20인 이상, 최소 입소인원은 10인 이상 시설에 한정한다.
  - 신규 개원시설은 n-1년도 연내에 준공하여 신고한 시설로서 n년도 최소 입소인원 10인 충족 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개시한다.
- 국고지원 시설의 실비입소자는 입소정원의 30%이하로 제한한다.
- 국고지원 시설은 입소정원 대비 실비입소자의 입소율이 30%이하로 될 때까지 실비 입소자의 입소를 제한하며, 기타 유료입소자의 입소는 불가하다.

- 실비입소자의 입소비용은 시설운영비, 생계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 국고지원 시설중 입소정원 대비 실비입소자의 입소율이 30%이상인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실비입소자의 입소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율을 산정하여 인건비를 조정한다.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조정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미만인 시설

- 실비입소자 30%초과인원 : A
- 조정계수(B) : A x 0.5 = B
- 조정율 = {(입소현원-B) ÷ 입소현원} x 100 = 00 %
- 인건비 지원액 = 인건비 총액 x 조정율(소숫점 첫 자리 절사)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이상인 시설

- 실비입소자 입소인원 : C
- 조정계수(D) : C x 0.5 = D
- 조정율 = {(입소현원-D) ÷ 입소현원} x 100 = 00 %
- 인건비 지원액 = 인건비 총액 x 조정율(소숫점 첫 자리 절사)

-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입소인원 변동에 따른 시·도별, 시설별 예산지원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변경내시 할 수 있으며,
  - 시·도지사는 분기별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 입소인원의 변동에 따른 시설별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은 시설별 입소현원을 기준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연도말 시설별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시 해당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사전 사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국고지원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일정양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국고지원시설에 대하여 1년 1회(4분기) 시설입소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한다.
- 기타 상기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하여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6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가.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횡령 금지

- 생활인원 허위신고
  - 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종사자 인건비 과다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임의 사용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미지급 또는 경비로 사용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 회계관련 서류 조작
  - 주·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 또는 정산하는 사례
  -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조작하는 사례

나.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전용계좌를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업무추진비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Ⅲ.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1 목적 및 연혁

가. 목 적

- 양로시설(유료)*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임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유료)은 입소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

나. 연 혁

-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
  -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 경제행정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 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형 폐지(2015.1.28)

2 설치 및 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양로시설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노유자시설"에 해당됨

다. 건축물 허가

- 건축물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건축담당부서)
- 허가절차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 양로시설(유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건축담당 부서는 건축 관련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역할
  -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양로시설(유료)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양로시설(유료) 사업자가 동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의 부도 발생시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불가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양로시설(유료)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토록 하여야 함

• 시설 설치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 입소자 모집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② 등기부 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급된 것) : 등기부 등본으로 저당권 설정 여부, 저당권 설정사유 등 파악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 문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08.7.1)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라.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형태 : 당사자간의 계약(「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입주자 모집시기

  - 건축공정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별표1의2])

구 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 사 진척 내 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이상이 완성된 때
기 타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마.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시설 신고시 유의사항

◈ **양로시설(유료)**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양로시설(유료)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 입소 금지
- 저당권 설정 제한 : 피담보채권액+입소보증금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
- 합숙용 거실 정원 : 4명 이하
  - 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목적
-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 : 2명,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 입소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향상과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목적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 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아. 시설 및 설비기준(30명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3조, 제4호)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4호)

※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명 → 4명 이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 4. 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 정원을 6명 → 4명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자. 직원 자격 및 배치 기준(30명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명(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입소자 50명당 1명), 관리인 각각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입소자 12.5명당 1명)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1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1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배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08.1.28)하여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0명당 1명 → 12.5명당 1명으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 이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제3조)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차.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운영위원회에 대신 운영간담회만 설치 가능)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카. 보증금 반환장치 등 입소자 보호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한 금지
-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양로시설(유료)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08.7.1)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양로시설(유료) 설치시 구비조건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양로시설(유료)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 사용의 경우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양로시설(유료)에 대한 정부지원

●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 다만, 양로시설(유료)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 위반(사업폐지)

●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노인복지법 제57조 개정('16.12.2.공포, '17.6.3.시행)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노인복지법 제57조 개정('16.12.2.공포, '17.6.3.시행)

4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유료)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입소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양로시설(유료)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토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한 입소자 모집시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② 등기부등본(저당권 설정시 설정사유 등 기재)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Ⅳ.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 목 적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임
-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60세 미만의 배우자,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도 가능)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 법률 제13102호)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15.7.29일 부터 폐지하되, 2015.7.29일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개정전의 규정에 따름

2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유자시설임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고,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며, 설치·관리·공급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설치·관리·공급 관련 적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의 관련규정을 준용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준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준용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규정 준용
- 노인복지주택의 건설기준 관련 준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준용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달리 건설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제8항 : 적용의 특례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특례조항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제4항 : 주차장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 이상이 되도록 특례 인정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라. 건축물의 허가

- 건축물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건축담당부서)
- 허가절차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건축담당 부서는 건축 관련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역할
  -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노인복지주택 사업자가 동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의 부도 발생시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불가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토록 하여야 함
    - 시설 설치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 입소자 모집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② 등기부 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급된 것) : 등기부 등본으로 저당권 설정 여부, 저당권 설정사유 등 파악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 문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노인복지주택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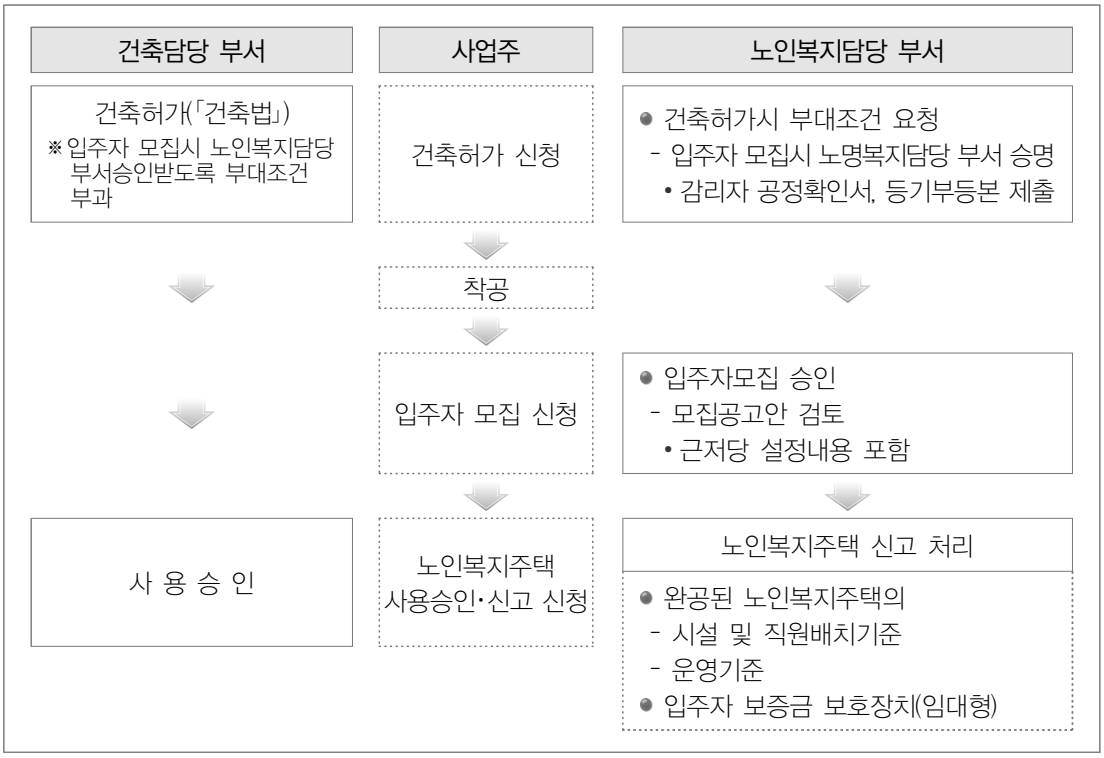

마.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형태 및 분양계약 대상자(「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모집형태 : 분양 또는 임대
- 분양계약 대상자 : 60세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의 자이어야 함
  ☞ 분양대상자 :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절차
  -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입주자 모집공고안
    -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행분)
    - ☞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분양·임대) 승인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검토사항
  - 노인복지 담당부서는 사업주가 건축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분양·임대) 승인을 요청한 경우 건축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 ☞ 분양공고안에 분양·매매·임대·입소대상자가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 특히 분양 받은 후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다거나 가능한 것처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반드시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매매·임대·입소가 가능함)
    - ☞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입소는 60세 이상 부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자녀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불가)
  - 부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 이와 같이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승인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시 "시설·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적격자 분양여부"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설치신고 시점 : 노인복지주택 건축 사용검사 신청시

- 노인복지주택 설치 사업자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 주택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설치신고 시점은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신청을 받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신고된 시설이 노인복지법령의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 건축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동 부서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신고시 유의사항

노인복지주택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건축법 일부 준용)에서 정한 시설·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분양 및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 및 부양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 가능)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은 분양·소유 및 입소 금지
- 분양받은 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함으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 금지
- 분양·입소 중 사망시 60세 미만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매매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임대 가능

● 입주자 모집(분양)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시 공고문안의 자격기준에 60세 이상 명시
  ➡ 시·군·구 건축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문 승인시 공고문안에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매매 및 입소자격이 있음을 명시(「노인복지법」)

- 입주자 모집(분양)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 처벌

  ➡ 입주자 모집(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에 상담·신고(지침 본문 참조)

● **시·군·구내 관련부서 간 협조 강화**

-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후 사용승인을 거쳐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하게 됨

  ➡ 일련의 과정에서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점에서 60세 미만의 자가 다수 분양·입소되어 설치 신고가 반려된 사례 발생

  ➡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허가시** 부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시 반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노인복지법」 처벌규정**(2015.1.28. 공포, 2015.7.29. 시행)

- 분양·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 담당 공무원은 동 내용을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내

참고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 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후략)

제56조(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② 삭제 〈2015. 1. 28.〉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후략) [전문개정 2016. 12. 2.]

사.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6항)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15.1.28)
  - 단,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일정한 기간내에 퇴소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 개정('17.10.24. 공포, '18.4.25 시행)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아.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 시설규모 : 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자. 시설 및 설비기준

- 침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차.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회복지사, 관리인(부대 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각 1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카.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설치·운영 가능)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입소보증금 보호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위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3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 위반(사업폐지)

-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6조)
- 노인복지주택 임차자가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28.〉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행정사항

가. 노인복지주택관련

- 설치 및 신고 처리시 건축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 요청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노인복지법령의 노인복지주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특히, 건축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시 분양광고안 등을 같이 검토하여, 60세 미만자에게 분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건립시부터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립후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주자 분양관리 철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하여야 함

• 60세미만자도 분양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허위·과대 광고시 처벌규정 안내(붙임 참고)

●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후 사후관리 철저

-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후에도 60세 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기 타

● 처벌규정('15.1.28. 시행)

- 분양·매매·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등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공무원은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참 고〉

노인복지주택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 신고

◪ 노인복지주택 분양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의 처벌

● 60세 미만 자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경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 처벌 가능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법률 제10509호, 2011. 3.30) 개정사항

● (주요내용)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입소·양도·임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신설규정)

-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2-2 노인의료복지시설

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2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 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입소대상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요양병원 입원을 권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시설은 의료연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입소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3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1) 입소대상 1)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 참조)

2) 입소대상 2) 대상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4 입소비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1) 입소대상 1)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입소대상 2) 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1)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 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장 겸직규정(동일건물에 2개소 까지 겸직인정)은 동 사업안내 개정 이후('10.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 변경 사유 발생시 시설장 각각 배치하여야 함

- 2013년 11월 30일 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공동주택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고려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12.2. 5.부터 시행)

* 신규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구 분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시 경보장비

**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 장비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시설설치 부지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설정금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이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08.8.4일부터)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이 하나 이상인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 일자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용권 설치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제2항 나목의 (1) :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제2항 나목의 (3)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출 것

- 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 있어야 함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님에 유의

- 다만, 상가건물에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세권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설치신고 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사후확인 필요

  * (예시 1)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설치 불가

    (예시 2)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설치 가능

3) 신고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변경)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 상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정원은 연면적을 1인당 점유면적(입소정원 10인이상 : 23.6㎡, 입소정원 9인 이하 : 20.5㎡)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개별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6.6㎡)을 확보하여야 함
-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로 할 것
  (나)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침실에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19.4.1. 시행규칙 개정 이전) 적용
(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이 '19.4월부터 개정되었으나,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이며, 1인당 15㎡ 이상의 공간 확보
  * '시설 전체' 1인당 면적기준(23.6㎡)은 변함 없음
(2) 요양시설은 치매전담실 포함하여 입소정원이 30명 이상
(3)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
  * 치매전담실 내 침실은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또한,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함
  (가)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함)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령에 따름
  - 다만,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포함 가능
  - 옥외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법상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가능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종교시설·의료시설등	근린생활시설	그밖의건축물(노유자시설등)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연면적 및 정원 산정 예시

(사례) 집합건물에 위치한 A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시설 전유부분 면적이 600㎡, 공용부분 면적(해당 지분)이 474㎡(복도 등 187㎡, 주차장 287㎡)

(연면적) 연면적은 시설 전유면적+공유면적지분(주차장제외)+주차장 의무설치면적(시설면적 300㎡ 당 1대) 이므로,
→ 600㎡ + 187㎡ + 34.5㎡ = 821.5㎡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은 787㎡(600㎡+187㎡)을 300㎡으로 나눈 값을 반올림하면 3대이며, 3대의 주차단위구획면적은 34.5㎡(3×11.5㎡)

(정원) 821.5㎡를 노인요양시설 1인당 연면적 23.6㎡으로 나누면 34명(소수점 이하 절삭)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용도가 '승객용'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4)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5) 시설명칭

-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사용하려는

명칭만으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유형을 함께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권고할 것(신규시설 설치시 동 사항 적용토록 조치)

- 예를 들어 “덕○원(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노인 요양시설 덕○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원)”

6)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므로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하여 관련 준수사항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2 폐지·휴지 및 변경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유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
  -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휴·폐지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1부
  - 입소자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5.12.29. 공포, '16.6.30. 시행)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법령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5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 운영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함

> **※소규모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 기존 기능보강지원 모형인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을 준용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 시설등 각 시설 유형의 운영기준을 준용

- 특히,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은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 또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1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 다만, 국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닌 설치자 (지자체장)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설은 설치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경우, 시설 또는 위탁법인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시·도의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입소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와 같음

3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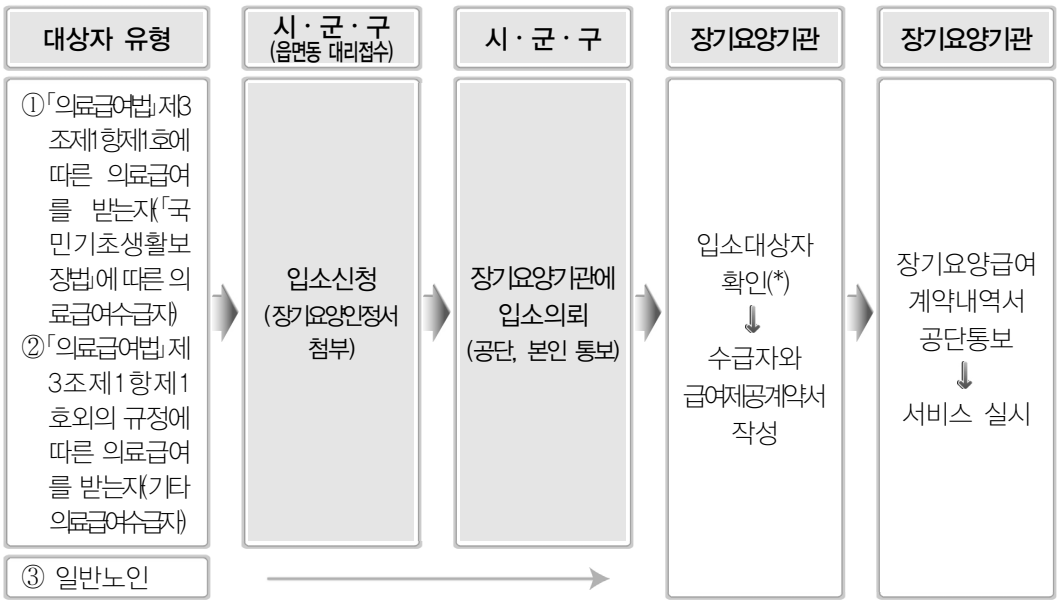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①의 대상자나 ②의 대상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일반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4 시·군·구의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5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입소자 조치 사항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일반노인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2)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의 2(인건비 지출비용)를 준수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시설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 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5) 장기요양급여제공 거부 금지의 의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6조)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이때 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정·현원 현황, 기관의 사진, 입소 대기자수,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은 필수 게재하여야 하며,
  - 입소 현원의 변경 발생시 조기에 정보를 수정 게재하여 수급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기타 동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서(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7)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운영 특례(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46조)

-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음.
- 위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음.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함.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운영하고, 의료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 보호하여야 함

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소자 입·퇴소 보고를 누락 없이 하여야 함

-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의 입·퇴소 날짜, 사유, 보고일, 전원일, 사망일 등
-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고
- (주기) 입퇴소자 발생할 경우 실시간 입력
- (절차)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ww.w4c.go.kr)로 접속하여 등록

(전산화면) 이력정보 / 노인재가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정보관리 / 우측 상단 / 신규버튼 체크(빨간색) 후 입력저장 / 시군구 보고 / 공문작성 / 입소자 입퇴소 보고조회 클릭 / 우측 상단 입소보고 버튼 클릭 / 팝업 공문작성 후 저장 / 입퇴소자 명부 / 입소자 대상 추가 후 저장 / 공문생성 후 결재

※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참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

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18.7.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설 운영자는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7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시설입소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 이 때 입소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장기요양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타 시·군·구와 입소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음

1) 협약절차

- 원 지자체는 연내 타 지자체로 입소 의뢰할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 입소전망을 명기하여 입소협약(MOU) 체결 요청
- 타 지자체는 시설여유상황,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락여부를 결정
- 원 지자체와 타 지자체 간 입소협약(MOU) 체결

2) 협약조건

- 원칙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하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비용은 원 지자체에서 부담함
  - 다만,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
- 지자체 협약에 따라 시설입소에 따른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 제반 비용도 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가능
- 입소자의 주소지는 원 지자체에 두도록 할 수 있으며, 향후 입소자의 주소지를 시설 소재지로 변경하더라도 원 지자체가 제반비용을 계속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3) 협약서 : [협약서 예시(p. 151)] 참조

4) 비용의 정산

- 시설입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에 따라 공단에서 예탁금 정산 하나, MOU체결에 의한 입소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입소협약서 상의 비용부담주체인 지자체 예탁금에서 비용을 정산함
-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은 주소지에 따라 전산에서 자동 지급되므로, MOU체결에 따라 원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간 회계 정산 필요

5) 입소의뢰서 서식

- 지자체간 입소협약에 따른 입소 의뢰시에는 입소의뢰서식(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비용부담 주체 등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운영 센터)로 송부

8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 기초수급자의 비급여 비용 수납한도
  - 기초수급자의 비급여 비용은 당해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

기존 입소자의 보호

* '08.7.1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보호
* '08.6.1일 이전에 자의로 운영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3~5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시설급여"를 제공

2) 등급외자의 입소비용 및 지급절차

가. 지원대상 등급외자

- '08.7.1일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있던 기초수급노인 및 실비입소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조치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또는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나. 등급외자 지원비용

- 위 지원대상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아래 지원비용에 따라 매월 소요비용을 지원

대상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
기초 수급자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등급 적용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
실비 입소자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등급의 50% 적용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의 50% 적용

※ 소규모요양시설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기초수급자에 준함

다. 등급외 실비 입소자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기존 지원시설의 등급외 실비 입소자에 대해서는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수납을 할 수 있으며,
-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 가능

※ 등급외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므로 장기요양급여의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아닌 기존 방식에 따른 기저귀비용,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를 추가 수납

시설유형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기초수급자	생계비 범위 내 수납
실비입소자	727천원 (추가 수납가능비용 : 218천원)

라.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의 변경

- 월별 비용 수납액이나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은 비용 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9 사회복지시설 통합사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의 통합사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도 가능
  - 다만, 인력은 각각의 시설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협약서 예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에 관한 협약

협약번호 : 제20 - 호
협 약 명 :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협약
시설입소전망 : 연간 명 내외
비용부담주체 : OOO 시
지원 내역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수급비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 연간 ooo 원/1인당

○○○시(갑)와 ○○구(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입소 협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의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의 관할 내 의료 급여수급권자가 을의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상기 시설입소전망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을의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 의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상기 비용부담주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수급비용, 기초노령연금 등을 협약상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입소 의뢰받은 수급자를 입소 조치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입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동 협약에 따른 갑의 입소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 ○ 시 장 (인)
(을) ○ ○ 구 청 장 (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입소·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 장기요양기관 명칭 :
- ○ 장기요양기관 기호 :
- ○ 장기요양기관 주소 :
-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1 |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016.9)

1 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교육·활동내용·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협회를 통해 추천된 계약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제3조, 제4조)

나.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다.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등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

마.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제8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9조)

사.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10조)

아.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11조)

자.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제12조)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5-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 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직역별 협회'라 한다.)의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정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의사회에서는 전문성, 교육이수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4의 서식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계약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사 교육) ① 직역별 협회에서는 계약의사의 장기요양기관 및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하고, 교육이수자 명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역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명부를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 활동) ① 의사는 입소노인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활동비용)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계약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준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 ○○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계약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희망하는 계약의사가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의료기관 및 연락처를 기재)

2.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
(100자 이내)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 2]

계약의사 추천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기호)			
의료기관 주소			
전문과목		임상경력	
계약의사 교육 이수여부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계약의사 추천서

□ ○○ 시설장 귀하

□ 추천 대상자

순번	소속 의료기관명 (기호)	성명 (면허번호)	전공과목	교육이수 여부	계약의사 연락처	비고

1.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위 추천 대상자 중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우리 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역의사회장 (직인)

[붙임 4]

계약의사 지정통보서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계약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위촉(활동)기간	비고
		~	

위와 같이 계약의사를 지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 5]

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서

요양시설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연 락 처	
계약의사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의료기관명			

협 약 내 용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상기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상기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가 상호간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 "요양시설"과 "계약의사"는 입소어르신에게 적기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요양시설	계약의사
1. "계약의사"의 계약의사 활동을 협조한다. 2.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 입소어르신에 대한 계약의사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3. 계약의사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약정일에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1. "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의 진찰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어르신의 진찰내용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사전 협의된 진찰일에 방문 건강관리를 한다.
(공통) 사정상 계약의사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상호 조율한다.	

제4조(진찰일) "계약의사"는 매월 ___, ___, ___주 ___요일에 "요양시설"의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요양시설"과 "계약의사"는 입소어르신과 요양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부담금 송금계좌)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명 : _____

제7조(송금약정일) 계약의사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은 매월 ___일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조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9조(기타사항)이 협약은 "요양시설"과 "계약의사" 중 어느 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시설"과 "계약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상기내용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시설장 성명	(인)	계약의사 성명	(인)

(뒷면)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붙임 5-1]

협 약 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생년월일	–
의료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생년월일	–
	협약(진료)과목			
협약기간			회차당 진료인원	명

협약 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 ”과 “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
4. “협약의료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시 설 장 성 명 (인) 의료기관장 성 명 (인)

[붙임 6]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포괄평가 기록지

[입소자 포괄적 평가]

주 소	
생 년 월 일	-
평 가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A. 진단명(기존 질병)

입소이유( )

고혈압 ( ) 당뇨 ( ) 골관절염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관상동맥질환 (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 백내장 ( ) 갑상선↑↓( ) 기타 ( )

B. 과거력

1) 주요수술 : 2) 급성기 병동 입원 : 3) 알레르기 :

C.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D. Medical & Functional

Ht/Wt : cm/ kg BP : / mmHg PR : / min

Vision : Hearing : ADL : IADL :

Incontinence : Constipation : Nutrition :

Mobility (timed "up and go" test) :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E. Neuropsychiatric

GDS-SF(우울) 점 K-MMSE : 점 BPSD :

Mental status : _ oriented _disoriented _not alert

F.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약품명 기재

고혈압제 ( )	이뇨제 ( )	당뇨약 ( )
항우울제 ( )	안정제 ( )	진통제 ( )
항히스타민제 ( )	혈관확장제 ( )	혈관수축제 ( )
마약류 ( )	한약 ( )	기타 ( )

G. Advance directive (사전치료지시) :

DNR ( ), 입원 거부 ( ), 영양관 공급 거부 ( )

H. Problem

(Acvtive)	(Inactive)
1.	1.
2.	2.
3.	3.
4.	4.

I. Management Plan

일자	주요 관리 사항	관리 사항 완수 여부	불이행 이유

참고사항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Essential〉

CBC :　　ESR :

UA :

Stool :　　T.P./Alb :

FBS :

BUN/Cr :　　Uric Acid :

T.Bilirubin :

AST/ALT :　　ALP :

T.Chol :

TSH/T4 :

EKG :

Chest PA :

L-S Spine, Knee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의사 :　　(서 명)

[붙임 7]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Unit No :			Date : 20 / / (입소일자 : 20 / /)		
Name :			Sex / Age :		
활력증상	BP : mmHg R : /min			P : /min BT : 。C	
체중	kg	체중변화	증/감 kg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
신장	cm	직업/학력		종교	□천주교□기독교 □불교 □기타
건강행위	□술(양/종류) □수면습관				□담배(양/흡연력) □운동습관
현 병력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뇌졸증 □치매 □관절염 □암 : 부위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명료 □졸림 □질문에만 반응 □통증에만 반응 □통증에도 반응 없음
	정서상태		□안정 □불안 □분노 □슬픔 □우울 □거부 □ 긴장 □기타
	활동상태		□보행가능 □도움으로 가능 □완전 의존 □마비 : 부위 □감각이상 : 부위 □ 보조기 : 종류
	호흡기계		□호흡곤란 □청색증 □기좌호흡 □기침 : 객담, 객혈 □통증 : 부위 □기관지절개관 □ 산소사용 : L/min □ 기타
	소화기계		□식욕부진 □연하장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통증
	식이상태		□구강 (□정상식, □치료식( ) Kcal) □위관 # □수액
	심혈관계		□흉통 : 부위 양상 □부종 : 부위 □심계항진 □부정맥 □심잡음 □weak pulse □기타
	피부상태		□욕창(크기, 부위, 정도) □발진 □소양감 □탈수 □ 상처(유/무, 부위)
	배설기능	소변	□ 자연배뇨 : 회/일 (□빈뇨 □뇨실금 □배뇨곤란 □긴박감 □통증) □ 유치도뇨관 □ 색깔 및 양상 (□ 정상 □혈뇨 □탁한뇨 □기타)
		대변	□ 횟수 : 회/ 일 □ 색깔 및 양상(□ 정상 □혈변 □기타)
간호계획			

간호(조무)사 서명 : _____

[붙임 8]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건강 관리 기록부

월 / 일								
입소일수								
혈 압								
맥 박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호 흡								
체 온	℃	℃	℃	℃	℃	℃	℃	℃
체 중	kg	kg	kg	kg	kg	kg	kg	kg
혈 당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문제 행동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낙상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탈수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소변/대변실금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통증(VAS)	약/중/강	약/중/강	약/중/강	약/중/강	약/중/강	약/중/강	약/중/강	약/중/강
욕창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섬망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간호제공내용								
간호(조무)사 서명								

[붙임 9]

계약의사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 **신청자** (☐ 시설, ☐ 계약(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대상** (☐ 시설, ☐ 계약(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사 추천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중앙협의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붙임 10]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 귀하

❒ 조정 결과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2-3 재가노인복지시설

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1 연 혁

-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최초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이어 은천노인복지회등으로 시범사업 확대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2006년~2009년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기능 보강 지원
- 2009년 (종합)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기능 보강 지원
- 2008년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2016년 7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

2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4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부분 참조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5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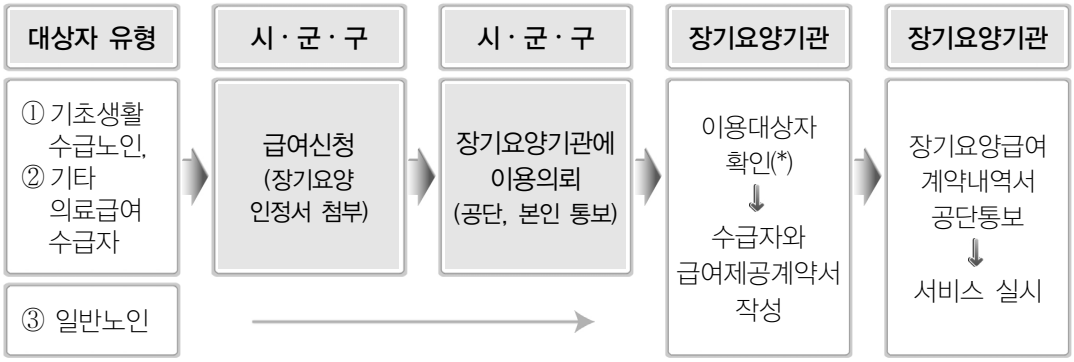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신청시에는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 결정
   - 입소이용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비용 인정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이용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재정상황, 서비스의 지속제공 가능성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수급자에게 적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위반 등)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실태, 수급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기관의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필요하게 월한도액까지 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의 상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승인(필요시 급여내역 조정)
-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신청내용을 확인(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부득이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하여 적정 급여 여부를 확인)

※ 「입소·이용의뢰서」는 지자체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급여비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뢰기관의 선정, 급여내역 승인 등에 있어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

- 관내에 이용 가능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시설 등이 없는 경우 필요시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이용의뢰하거나 아래 "6.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용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이용의뢰 가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자체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사항을 준용)

※ 재가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간 MOU체결이 필요 없으나, 주야간 및 단기보호의 경우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존 국비지원시설(기능보강, 운영비지원 등)일 경우 시·군·구의 필요에 따라 MOU 체결 가능

3) 시·군·구는 이용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므로, 기초 수급 자는 「수급자증명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하되, 계약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지자체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에 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범위(계약기간은 이용기간)내에서 계약을 체결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의 승인 없이 장기요양기관 또는 급여의 내용을 임의로 추가·변경할 수 없음

※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의 사망, 수급자격의 변동 등으로 급여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시·군·구에 즉시 통지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7) 서비스이용기관 변동시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이전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계약해지시 이전기관 및 공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8) 지자체에서 입소이용의뢰서를 변경할 경우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의뢰서 통보일 이전까지의 신청내용에 대한 급여비용을 인정하되, 통보일자부터는 지자체의 변경내용 적용

9) 급여 이용 이후에 입소·이용신청을 한 경우 사례별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전 급여 이용에 대한 이유(독거노인,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 없는 경우, 수급자의 긴급한 사정 등)와 서비스 제공사실 등을 보호자,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증명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급

※ 급여비용 소급 인정시 이용내역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 필요

[입소·이용 변경절차]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입소·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입소·이용신청서」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하되,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란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

  * 작성 예) 'OOO기관에서 △△△기관으로 입소·이용기관 변경'

  - 시·군·구는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변경된 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재가급여의 경우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 및 공단에도 동일하게 관련내용을 통지
  - 이전 이용기관에 대하여도 동 사실을 고지하여 서비스 중지를 요청

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등이 부적절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위반 등), 급여제공 부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장기요양기관을 변경
- 변경할 장기요양기관 또한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 고려하되,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등 적정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처리 절차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름

급여의 변경

가. 급여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예)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방문목욕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입소·이용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군·구는 이용여부와 기관을 결정하여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뢰하고, 수급자 및 공단에 관련사항을 통지
  -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에 급여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만을 장기요양기관에 추가로 송부

    예)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A기관에 방문목욕서비스를 추가로 의뢰하는 경우

나. 급여 내역을 변경(추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예) 당초 월 10회 방문요양(1회 4시간)서비스를 신청·의뢰하였으나, 방문요양의 횟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최소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시·군·구에 변경 신청(입소·이용신청서의 변경란에 체크)
- 시·군·구는 변경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본인 및 공단에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

참 고

❖ 재가급여의 경우 공단에서는 시·군·구에서 통보된 급여이용내역서 범위내에서만 급여비용을 지급하므로,

- 장기요양기관이 승인된 내역을 초과하여 수급자와 이용계약을 하거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삭감 또는 보류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 등이 급여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수급자의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시간 등 일부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승인된 내역내에서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지자체에서는 급여내역 변경시 변경신청의 번거로움을 사유로 수급자가 최초 이용신청부터 불필요하게 월한도액까지 이용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다. 급여를 중단하는 경우

- 수급자(보호자 또는 급여신청인)는 급여의 중단을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는 급여중단 신청이 있는 즉시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동 사항을 통지
- 수급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수급자의 사망, 자격변동 등 급여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는 수급자의 급여중지(취소) 신청과 관계없이 사유발생 즉시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급여중지를 요청(수급자에게도 동 사항 발생시 지자체에 급여해지를 요청토록 사전에 안내)

나. 일반 노인

1)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가.의 4)~6)과 동일

다. 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을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을 결정하여 해당 시설에 서비스이용을 의뢰

- 다만,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생활환경 등으로 즉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 또는 서비스이용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6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에 따름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비용수납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1) **설치신고**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각각 별도의 설치신고 또는 하나의 기관으로 설치신고 하였으나, 향후에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하는 것으로 통일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해당 사항을 복수 체크

- 특히,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2) **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3개월 전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법인 대표자

※ 서비스 추가의 경우 행정절차는 변경신고로 처리하되, 구비서류는 설치신고에 준하는 서류 제출

3)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신고서' 를 폐지 또는 휴지 3개월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이 예정된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자 전원조치 검토 또는 시행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관(행정처분 중이 아닌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전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 ○○재가노인센터 대표는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동생 명의로 동일 건물에 △△재가노인센터를 설립하여 수급자를 이전 후 계속 영업(→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 개정(' 15.12.29. 공포, ' 16.6.30. 시행)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서비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3)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동 시설의 평균 이용률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4) 주·야간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5)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임(노인복지법 제55조).

-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7890(2011.8.26)호 「질의회신(건축물 용도관련 질의)」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마. 신고수리

1)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2)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병설운영의 경우)에만 시설장 겸직 가능

※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동일인(법인 또는 개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상 상근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 되면 예외적으로 시설장 겸직이 가능

사.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시설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 하여야 함

아. 시설 명칭 표기

-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재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단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병기

예) 0 0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차.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및 준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하는 경우에는 "Ⅴ.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기타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18.7.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휴게시간 변경 금지)

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비 이용료 수납한도(월)

(단위 : 천원)

구 분	(구)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한도액	200	250	450

※ 지역 특성에 따라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증감하여 수납 가능하나, 수납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부터 이용하던 실비 이용자에게만 적용됨

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Ⅱ. 방문요양서비스

1 목 적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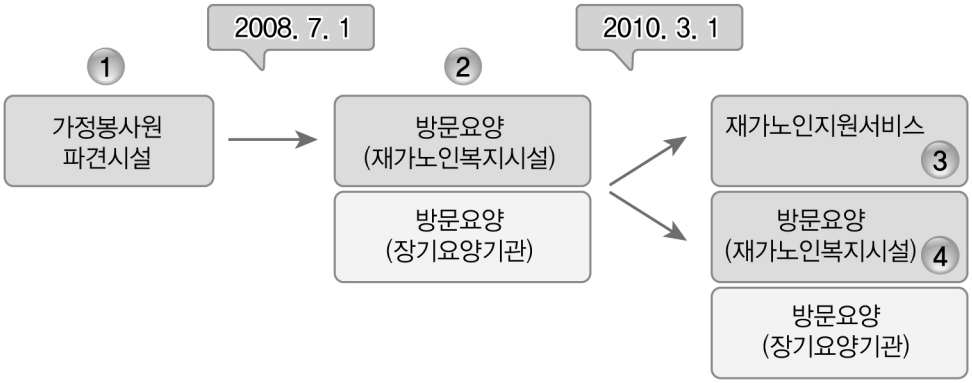

※2008.7.1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 서비스 대상 및 인력기준 변경, 서비스내용 유지

※2010.3.1 :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신설)로 분리 서비스 내용 분리, 인력기준 변경('10.2.24)

※2013.8.29 : 2010.2.24 개정된 인력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한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은 2015.8.28까지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2010.2.24개정 :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 15명(5명)이상, 상근 20%(3명) 이상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규모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	○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다.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라.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운전사)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

-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9조, 별표 2 등등 참조)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5 기타사항

-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Ⅲ. 주·야간보호서비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다. 이동서비스

라.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보호기간 : 1일

※ 08:00~22:00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됨)

5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1) 이용정원 : 5명 이상, 다만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1실당 이용정원은 25명 이하

- 동일일 및 동일시간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시설규모

-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사례) 이용정원이 9명일 경우 면적산정

* ① 기준면적(90㎡ 이상) + ② 추가면적(생활실):26.40㎡(4명×6.6㎡) 이상
* ③ 합계 : 116.40㎡(90㎡+26.40㎡) 이상

① (기준면적)90㎡ 이상 안에 5명에 대한 생활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경우 별도의 1인당 생활실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② (추가 생활실 면적) 5인을 초과한 4명에 대하여 1인당 6.6㎡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4명×6.6㎡=26.40㎡) 이상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 **국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 적용**
> (치매전담형 기관 설치 기준 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19.4월 시행되었으나,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 -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은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시설 및 설비기준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야간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나.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다. 인력기준

<table>
<tr><th></th><th>시설장</th><th>사회
복지사</th><th colspan="2">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th><th>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th><th>요양보호사</th><th>사무원</th><th>조리원</th><th>보조원
운전사</th></tr>
<tr><td>이용자
10명 이상</td><td>1명</td><td>1명 이상</td><td colspan="3">1명 이상</td><td rowspan="2">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
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td><td>1명
(이용자
25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td><td>1명</td><td>1명</td></tr>
<tr><td>이용자
10명 미만</td><td>1명</td><td>-</td><td colspan="3">1명 이상</td><td>-</td><td>1명</td><td>–</td></tr>
</table>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단,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 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음,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장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만 택하여 겸직할 수 있음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예시〉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20인)을 노인요양시설(이용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하 '병설한 기관'이라 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 (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계획에 따라 주·야간보호 대상자가 없는 일요일에도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함 (「식품위생법」제2조)

6 기타사항

-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Ⅳ. 단기보호서비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4 보호기간

-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단기보호 급여 기간 경과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월 15일 이내로 한다. 수급자가 기존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회 15일 이내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시설규모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1인당 침실면적 기준 6.6㎡ 이상).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인력기준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1명	-
이용자 10인미만	1명	-	1명	-		-	1명	-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4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사 기본 1명 배치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예시〉 단기보호시설(이용자 9인)을 노인요양시설(이용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기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하 '병설한 기관'이라 함)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단기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단기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 (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계획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없는 날에도 단기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 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6 기타사항

-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Ⅴ. 방문목욕서비스

1 목 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차명)에 "이동용목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나. 인력기준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	–

5 기타사항

-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목 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명 칭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위 명칭 사용 여부는 기관의 선택사항이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위 명칭 사용은 금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함

3 이용대상 및 선정

가. 이용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②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③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④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⑤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나. 이용대상 선정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②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대상자, 주민센터,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된 노인 중 초기 상담 후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노인

③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이전 서비스 지원 가능

4 정원 및 성과관리

가. 정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업은 정원 규정 없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제공하되, 관리대상자수 80명 이상과 관리대상자수의 50%이상을 정기적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

※ 정기적 사례관리대상자 : 위기상황 또는 건강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대상자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제공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함

나. 성과관리

- 서비스별 제공 실적산출 :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수치로 하여 연간 실적을 산출하되, 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자료를 통한 실적 산출
- 서비스 성과관리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대상자의 변화 정도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실시
- 서비스 평가 : 시군구청장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

다. 기타

- 시설장은 대상자의 개별상황에 맞게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대상자 일부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대상자에게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노인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내용을 균형있게 수행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모든(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3대 중점사업(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을 균형있게 수행하여야 함
  -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업

① 위기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 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②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③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 재가지원서비스 내용(예시)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자원봉사활동 등**)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위기관리 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 민/관 협치체계 구축, • 서비스 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 구축 등
	사례관리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초기상담 •사정 및 계획 •개입 •점검 및 모니터링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의체 구성 •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 위기관리	• 급식지원 • 주거안정지원 • 자원관리 • 후원/결연 등
	신체적 위기관리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 노인성질환 관리 및 연계 등
	정신적 위기관리	• 알코올의존, 우울, 학대 등의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 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등
	사회적 위기관리	• 대인관계 증진 •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 지원 • 지역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 노인인식개선 • 돌봄가족지원 등
	긴급지원	•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등
	기타	•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6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설치기준

- 전용면적 33㎡(연면적기준)이상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	○	○	○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 공용 불가
-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무실면적(33㎡)을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만 같은 공간 활용 가능하되, 각 시설(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의 용도에 맞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를 갖추고, 용도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전문요원
1명	1명 이상	1명	2명 이상

- 시설장 : 사회복지사자격증, 의료인면허증 소지자로 상근하는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가능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직 가능하나, 시설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겸직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야 함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사무원 : 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전문요원 :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재가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전문상담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소지자를 배치

7 경과규정

- 2010.3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봄

8 행정사항

-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전환
  -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의 '변경신고서' 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추가를 기재한 후 설치신고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 신고서' 를 제출하여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을 폐지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규 설치신고
-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공하지 않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규 설치신고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운영 및 지원, 관리에 관해 지침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및 노인복지관련법,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매뉴얼 등에 따라야 함
- 지자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권역별 기관 배치, 관리대상자 수 증대, 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 서비스의 즉각 지원을 도모

10 사업별 지원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및 대상자를 확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 관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보완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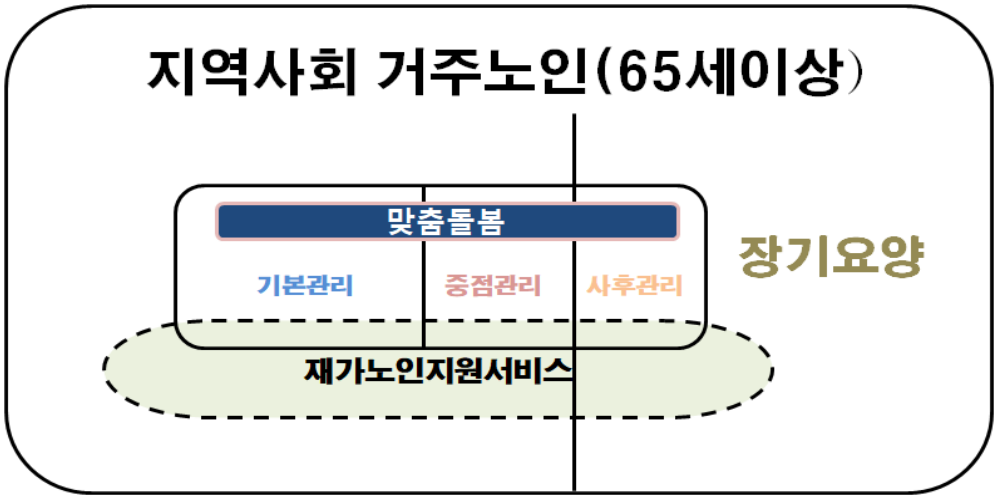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국고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으로는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려면 맞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할 필요가 있음

Ⅶ. 방문간호서비스

1 목적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2 이용대상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간호	○	○	○

※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설비·비품 등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 사용 가능

나. 인력기준

- 시설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간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대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함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70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대학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함

-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서식 7-1]

<table>
<tr><td colspan="8">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이내</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 colspan="2">성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d>시설이용자
와의 관계</td><td></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6">(전화번호)</td></tr>
<tr><td>희망
이용
서비스</td><td colspan="8">☐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td></tr>
<tr><td rowspan="4">시설
이용
인원</td><td rowspan="2">01</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희망입소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02</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희망입소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이용
사유</td><td colspan="8">※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td></tr>
<tr><td colspan="9">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00재가복지센터장 귀하</td></tr>
<tr><td>구비
서류</td><td colspan="8">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td></tr>
</table>

[서식 7-2]

<table>
<tr><td colspan="8">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td><td>처리기간
7일이내</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 colspan="2">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d>시설이용자
와의 관계</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td></tr>
<tr><td>희망
이용
서비스</td><td colspan="8">☐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td></tr>
<tr><td rowspan="4">시설
이용
인원</td><td rowspan="2">01</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희망입소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02</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희망입소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이용
사유</td><td colspan="8">※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td></tr>
<tr><td colspan="9">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관인)

00재가복지센터장 귀하</td></tr>
<tr><td>구비
서류</td><td colspan="8">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td></tr>
</table>

[서식 7-3호]

〈앞 면〉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

1. 기본 사항	①성 명		②성별		③연령		④주민등록번호		⑤학력		⑥종교	
	⑦현주소	(☎)										
2. 가족 사항	①관계	② 성명	③ 주 소				④생년월일	⑤ 학력	⑥직업	⑦월소득액	⑧ 비고	
3. 보호 형태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실비보호대상자 ☐ 기타										
	2) 동거실태	☐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 기타										
	3)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4. 건강 상태	1) 질환명	☐위십이지장궤양 ☐뇌졸중(중풍) ☐고혈압 ☐심부전증 ☐폐렴 ☐폐결핵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치매 ☐기타 ( )										
	2) 장애상태	☐ IADL일부제한 ☐ IADL모두제한 ☐ ADL일부제한 ☐ ADL모두제한										
		* (IADL 및 ADL 일부제한 능력항목 기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기 타										
5. 신청서비스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지원 등) ( )회 이용 ☐ 주·야간·단기보호 ( )일 보호										
6. 평가 결과	1) 서비스 제공여부	☐ 적격 ☐ 부적격		부적격사유		☐ 자조능력있음 ☐ 경제력있음 ☐ 노인의 요구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맞지 않음 ☐ 노인의 거부 ☐ 기타(사유기재 :)						
	2) 서비스사유	☐ 자조능력 없음 ☐ 수발자의 건강악화 ☐ 수발자 휴식 ☐ 수발자 없음 ☐ 기타										
	3) 제공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 개인활동 ☐ 우애서비스 ☐ ( )회이용 ☐ ( )일 보호										
7. 의 뢰 인	성 명		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8. 비고												

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성명 : (인)

〈뒷 면〉

조사표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조사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할 것

1) 4-2) 장애상태란에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아래와 같이 IADL과 ADL로 구분하여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것임.

1.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① 일상용품 사러가기
   ② 전화걸기
   ③ 버스·전철타기
   ④ 가벼운 집안일 하기

2.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일상생활 수행능력
   ① 목욕하기
   ② 옷 갈아입기
   ③ 식사하기
   ④ 앉기
   ⑤ 걷기
   ⑥ 화장실 이용하기

2) 5. 신청서비스내용란에는 신청인이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내용 기재
   예)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 주 몇회를 이용하기 바라는가 등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 이용하기를 원하는 기간 등 기재

3) 6. 3) 서비스 내용란에는 서비스대상 노인의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내용 기재

4) 8. 비고란에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대상 노인 평가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기재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08.1.28〉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설치일자	년 월 일	입소정원	
	시설규모	연면적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 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수납비용 (원/인, 월)	구분	비용수납액	보증금(분양금)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2.8〉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소	
시설개요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일자	이용정원(이용노인수) 명
	시설규모 연건평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명	
수납비용 (원/인, 일 또는 월)	* 단기보호시설은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으로 구분·기재할 것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목 적

-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또는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 국고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적정관리를 기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보조사업 수행자)
  - 일반형 시설 기능보강(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 **이용자·입소자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고려)**
> ○ 국가·지방자치단체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이상의 판정을 받은 시설
> ○ 이용자 안전을 위한 피난로, 대피공간 시설 등 화재 예방이 필요한 시설
> ○ 그 밖에 노후화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은 민간 개인시설은 지원 불가(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은 민간 개인시설 지원 가능)
** 증개축·개보수·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은 임차시설 지원 불가(장비보강비 지원은 임차시설 지원 가능)

  - 치매시설 전환 기능보강(증개축·개보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민간 개인시설 및 무상(임대) 건물 및 임차시설은 지원 불가〕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기능보강(신축)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공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 신축 : 국비80%, 지방비20%
- 흐름도

- 사업계획서 제출(전년 3월) → 가내시 통보(전년 9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당해연도) → 국고보조금 교부(당해연도) → 사업집행
  * 사업포기 등 예산 여력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할수 있음

4 지원방향

-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동 사업은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이용자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보장 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우선 고려함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자(시군구청장)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자(시군구청장)의 사업 계획의 변경 사유 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조사업 수행자(시군구청장)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하여야 함
-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은 지원횟수 등에 따라 자부담비율 의무화

◈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자부담비율 의무화**
- ○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적이 없는 법인 : 총 사업비의 3%이상 자부담
- ○ 최근 5년내 1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
- ○ 최근 5년내 2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7%이상 자부담
- ○ 최근 5년내 3회 이상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증개축·개보수)의 경우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

- 행정처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제외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부과) 을 받은 시설(법인에서 운영하는 동일 시·도내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의 법인에 대해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제외(단,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5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소어르신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안전분야 개보수 지원은 가능(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의견과 시도, 시군구 모두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함)

  * 관련증빙서류 포함 제출, 2017년 사업부터 적용

- 기능보강 사업 중도포기에 대한 지원 제외

- 기능보강 국비지원 대상 법인(으로 확정된 후 천재지변, 법인해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연도이후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에서 제외

5 사업내용

가. 정 의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
- 증(개)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거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개보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 :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및 이용노인의 의료·재활·안전을 위한 장비(물품)비 지원

나. 지원분야 및 대상시설

사업종류 / 시설유형	치매시설 증개축·개보수*	증원을 위한 증개축	안전을 위한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 창문설치
양로시설	×	×	○	×	○
노인요양시설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주야간보호	○	○	○	○	○
단기보호	×	○	○	○	○
종합재가시설**	×	×	×	○	×

*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증개축·개보수 지원

** 종합재가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또는 단기보호시설(서비스) 설치·운영(필수)하고 여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실시시설

다. 국비 지원단가 ('20년 기준)

1) 일반형 시설(치매시설 전환 포함) 기능보강

가) 지원목적 : 일반형 시설(치매시설 전환 포함) 입소 또는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개축 · 개보수 등 건축비 지원

나) 유형별 지원단가

유형 / 종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생포함)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종합재가 시설
치매시설 전환 증개축 · 개보수	-	(증개축) 지원단가(1,800천원/㎡)×지원면적* (최대360㎡)×국고보조율(80%) *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20년기준) (개보수) 지원단가(750천원/㎡)×지원면적* (최대180㎡)×국고보조율(80%) *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20년기준)		-	-

유형 / 종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생포함)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종합재가 시설
증원을 위한 증개축	-	지원단가(1,364천원/㎡)×지원면적(최대708㎡)×국고보조율(50%) *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20년기준)	지원단가(1,364천원/㎡)×지원면적(최대255㎡)×국고보조율(50%)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20년기준)		-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단가(682천원/㎡)×최대지원면적(330㎡)×국고보조율(50%)	지원단가(682천원/㎡)×지원면적(최대500㎡)×국고보조율(50%)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20년기준)	지원단가(682천원/㎡)×지원면적(최대255㎡)×국고보조율(50%)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20년기준)		-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	-	(30인이상) 100백만원×50% (30인미만) 60백만원×50%	(장비지원)30백만원×50% (송영차량)30백만원×50%		(장비지원) 50백만원×50% (송영차량) 30백만원×50%
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	10백만원×50%	10백만원×50%		10백만원×50%
화재안전 창문설치	(현원50인미만)15백만원×50% (현원50인이상~100인미만) 20백만원×50% (현원100인이상)25백만원×50%				

* 양로시설 신축은 민간투자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13.7.5)에 따라 노인양로·요양시설 신축사업이 BTL방식으로 전환 검토됨에 따라 2014년부터 일반회계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가) 지원목적: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신축비 지원

나) 지원대상:

-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기초 지자체(시군구) 우선
- 공립요양시설이 있으나 치매증가 등 지역수요로 등으로 신축이 필요한 광역(시도) 또는 기초(시군구) 지자체

다) 지원단가: 건축비* 1,800천원/㎡('20년 기준)

* 국고보조금(건축비)는 설계·용역·감리비 등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토지매입 등 자산취득비용 제외) 사용 가능

라) 지원조건: 동일 부지(또는 기존건물)내 노인요양시설(노인공생포함) 단독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공생포함)+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병행 설치

*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동법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마) 지원내용('20년 기준)

지원조건	국비 지원단가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치매전담실 2실 이상 설치)	1년차 (20년 신규 지원시설)	정원×법정 최소 면적*×단가×국고보조율(80%) × 연도별 국고보조비율(1년차 20%)
	2년차 (19년 2년차 지원시설)	· 요양시설 : 정원×법정 최소 면적×단가× 국고보조율(80%)×국고보조비율(2년차 50%) · 주야간보호시설 : 정원×법정 최소 면적×단가× 국고보조율(80%) ×국고보조비율(2년차 50%)

***** 법정 최소 면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 노인요양시설 : 1인당 23.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인당 20.5㎡
- 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 90㎡ + 6인이상의 경우 1인당 6.6㎡추가

※ 공립 신축의 경우 치매전담실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개정(2020. 2. 5.)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음

※ (신축) ⅰ) 민간시설 매입과 ⅱ) 기존 건물(지자체 보유) 리모델링에 신축비를 이용할 수 있음

※ (매입 및 리모델링) 신축비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라. 지원기간 : 2개년('20~'21) 또는 3개년('20~'22) 사업

마. '20년 예산(국비) : 86,007백만원

6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신청 및 통지

가. 예산 계상 신청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조(예산 계상 신청 등)

1) 신청목적 : 익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정부안) 편성 자료로 활용
2) 신청주체 : 시·도지사
3) 신청서류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자료 양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4) 신청기간 : 매년 2월말까지
5)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나. 보조금 예산의 가내시 통지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1) 통지목적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편성에 활용
2) 통지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3) (가내시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통지
   * 통보방법, 시기 등은 별도 통보

다.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1)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정의〉
*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 및 공립시설 증개축,개보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증개축,개보수 등은 민간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수행자로 함

〈관련서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서식10호~서식13호)

가) 선정주체 : 시·도지사(시도사업) 또는 시·군·구청장(시군구사업)

나) 선정기간 : 매년 10월중(보조금 예산신청전)

다) 선정절차 : 시·군·구 선정(1차) → 시·도 선정(최종)

라) 선정시 고려사항(공통)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보조사업 수행자가 제출한 수행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아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 (적정성) 시도(시군구)의 노인인구,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실태, 관내 전체 시설의 입소율, 지방비 부담 능력, 인접 지자체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수요 전망과 사업 규모 등

  * 이용자의 접근성, 주변으로 부터 소음피해 가능성, 민원발생 정도 등 설치 장소

- (가능성) 보조사업 수행자의 사업 수행능력,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등 (현장확인) 부지 확보 여부 및 적합성, 건축허가 가능지역 여부 등 현장확인 판단

  * 증축·개축 등은 입소자의 전원계획 등 보호대책, 사전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정원초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여부 등

- (형평성)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효과성, 예산지원의 형평성(최근 5년내 신축, 증축) 등

  * 기능보강 자체 지원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으로 시설물 형평성 등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기타 적절성 등) 기타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등 사업(신청)금액의 적절성 등

  ☞ 기술직공무원 및 건축관련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철저

마) 우선 고려사항

(1) 시설여건 및 재난응급,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의 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시 확인 등), 입소 및 이용인원 증가여부 등 시설기능 변화 정도 등

○ 지진 등 자연재해 및 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 예방(안전) 및 피해복구 등 응급상황 여부 등

(2) 기타 시설 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노인복지법 등 사회 복지관련 법 등)의 충분한 요건 확보여부 등

바)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지원목적	검토사항
증개축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높고 수요증가로 인해 증원이 필요한 시설 증개축비 지원	○ 현재 시설의 설치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환경 개선노력, 입소 및 이용인원의 증가추이 등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참여로 공정성 확보 ○ 시설 증·개축시 입소노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향후 증(개)축부문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등 기대효과 검토 - (증축)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증개축의 경우 건축 관련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개축 개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개보수	시설 노후화 및 입소 및 이용 노인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시설 개보수비 지원	○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 비용절감 등 효과성 검토 ○ 시설안전진단 결과 전기,승강기,시설구조 등 보수 필요 등 시급성(응급상황 여부) 및 타당성 등 검토 * 점검결과 등 관련(증빙)자료 확인 등
장비보강	①신축 또는 증개축 등 증원 ②입소자·이용자 안전에 따른 장비보강이 필요한 시설 지원	○ 장비명,소요량,사업비 및 사용용도,배치공간 확보여부 등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 ○ 지원후 기대되는 효과성 등 검토 ※ 유의사항 ① 신축 또는 증개축 등 증원 – 신축, 증개축 등으로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 한해 1회 지원 – 의료·재활(물리치료 장비, 간호장비 등), 사무, 주방 장비 등이 품목이며, 조달청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소모품성 물품 구매는 금지 ② 입소자·이용자 안전 * 입소자·이용자 안전에 따른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CCTV설치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이 품목이며, 조달청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소모품성 물품 구매는 금지 – 장비비로 지원(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관리

구분	지원목적	검토사항
화재안전창문설치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 지원	○ 화재 등 입소 및 이용노인 안전에 상당한 위험 노출 등 설치 시급성 검토 ○ 지원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건축법 시행령제51조 개정('15.9.22)에 따라 화재안전창문 의무화 대상시설은 지원 제외 ※ 유의사항 -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줌으로써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패하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사용 - 예산신청이 많은 경우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동일 취약지역 내에서서는 현원이 많은 시설 우선 지원(권고)

〈참고〉화재안전창문 설치 세부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개정('15.9.22)에 따라 화재안전창문 의무화 대상의 경우 미지원, 단 같은 법 시행령 부칙조항에 따라 의무화 제외 대상은 지원가능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전('15.9.2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후('15.9.22)
화재안전창 설치의무 대상	6층 이상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층수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설치 (다만, 해당 건축물이 '15.9.22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일반건축물대장(갑)) 제출시 지원가능)

○ 시설의 창문 형태에 따라 개폐방식 선택하여 설치하되, 상부개폐형 방식으로 외부와 접하는 창문 윗부분 설치하는 것을 권장 (단, 하부개폐형 방식은 제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조

- (설치기준) 화재 시 창문 자동개폐로 자연공기 유입 및 연기배출
- (설치크기) 건축법상 기준 1㎡이상
- (작동방식) 예비전원 작동,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개방 및 수동개폐 병행 장착

사) 선정절차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시·도지사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시설이 없거나 필요한 지자체 등에 대해 추진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개최 여부결정 가능

- 시·군·구청장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가능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름

아) 지원대상 제외(패널티)

(1) 사업 추진과정이나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선정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이상 받은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보조사업 수행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 성폭력·성희롱, 노인학대 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개인 포함)은 처분일로부터 5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제외

- 업무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5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일 시·도 내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

(3)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연도 이후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에서 제외

☞ 다만, 지진, 태풍, 대형산불 등 재난,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및 입소 및 이용노인 보호(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안전분야 개보수 지원은 지원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이 경우 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확인 및 시도 및 시군구 모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2) 보조금 예산 신청

〈**제출서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서식 9호~ 서식9-5호)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시도 선정심사위원회 자료(별첨)

가) 신청목적 : 익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나) 신청주체 : 시도지사

다) 신청서류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예산신청서(서식9호~서식9-4호)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상기 제출서류 참조)

라) 신청기간 : 매년 10월말까지(필요한 경우 수시)

마)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바) 신청시 유의사항

(1) 보조사업 수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내시통지에 근거하여 신청서(서식9호~서식9-4호)와 기타 증빙(첨부)서류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시·군·구청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동일 사업에 대해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거나 받았는지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 중복 신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중복 부분)의 취소 등 조치

(3)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상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서, 의견서 등의 제출자나 수령자 명의는 민간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과정마다 각각의 관계자로 수정 제출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승인한 수정사업계획이어야 함

○ 시도 승인사항의 경우는 복지부에 최종 결과보고한 수정수행계획이어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는 기 신청 수행계획서를 첨부함

☞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 강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e-호조 시스템에 사전 내시등록 완료 후 교부신청, 내시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dbrain을 통한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함에 유의

라. 보조금 예산의 확정 통지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1) 통지목적: 국고보조사업 예산규모 및 보조사업 수행자 확정 등

2) 통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3) (확정내시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내시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 심의·확정된 후 확정된 금액 및 내역(보조사업 수행자 확정)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확정 통보 된 사업별 내역과 금액을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7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교부신청)

〈관련서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 8호): 제출 불요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4호)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서(서식16호)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서식15호)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별첨)

1) 신청주체 : 시·도지사

2) 신청서류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신청기간 : 매년 3월중(필요한 경우 수시)

4)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 8호)에 따라 점검하고 누락사항이 없는 지 확인(점검일은 시도에서 최종 점검한 날짜로 기재)

* 기타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나)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상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이 있을 경우 전년도에 예산계상 신청시 자부담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재원확보내용 등 확인(부지매입비 제외 등)

- 국고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이 있을 경우 전년도에 예산계상 신청시 자부담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재원확보내용 등 확인(부지매입비 제외 등)

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보조금 교부 결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9조(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다. 국고보조금 변경 신청 및 승인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련서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계획서(서식 17호)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신청서(서식 18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검토 의견(서식 19호)

1) 신청주체 : 시·도지사
2) 신청서류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신청기간: 수시(발생시)
4)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수행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기 관련서류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승인된 수행계획과 직접 연관없는 내용으로의 변경 승인신청은 접수 불가

나)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시도 및 시군구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계획변경 신청서(서식18호)를 접수받아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결과만을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장비보강 목록 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낙찰 차액 활용 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발생된 이자와 함께 반납(유의)**

○ 동일 시도 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 시군구의 사업지 변경 시 해당 시군구의 의견 검토 필요

○ 공사기간 연장(시군구의 승인사항)

○ 사업 량 변경 없는 자부담 증가(시군구의 승인사항)

다) 시·도지사(시 · 군 · 구청장)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사업 완료이전에 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인수할 보조사업 수행자를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공모하고, 자체 별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계 승인을 요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사업 완료 이전에 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인수할 보조사업자는 시군구에서 공모하고 지자체 별도 심의를 거쳐 복지부로 인계 승인을 요청

라. 국고보조금 반환 등

〈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동법제31조(보조금의 반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바)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사)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사업자 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1) 일반사항

가)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범 정부적으로 상반기 중 예산 조기집행계획 추진(75% 이상)계획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

◈ **일반형 시설(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포함)기능보강 사업**
- 매 회계연도 6월전에 공사 착수하여 회계연도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연내 집행완료)
- 사업수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이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신속히 지급

*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은 상반기내 조기 집행 완료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
-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 회계연도내에 설계·용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회계연도내 설계·용역비 등 건축관련 제반비용 집행 조치)

나)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수시(분기 1회이상) 점검(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하고, 점검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2) 사업별 관리 및 집행

가) 시설 기능보강(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
- ○ 모든 사업별 보조금은 가능한 한 금년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철저
- ○ 사업수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은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시설 신축·증개축·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설계시 중증 수급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간배치를 최우선 고려해야 함
  * 예시 : 침실 등 생활공간은 저층, 사무실 등 기타공간을 상위층 배정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여 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사업은 공사 설계 및 시공 감리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장비보강사업

○ 의료·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하되,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 소모품에 해당하는 구매는 금지함

○ 장비보강은 시설내에서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보증된 KS(기술표준원) 인증 및 단체표준(한국표준 협회에 등록된 단체) 인증 제품이나 장비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함

○ 장비구입 물품의 적정가격은 조달청의 총액계약을 통한 납품 실적 또는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납품실적을 비교 견적토록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제한토록 함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전용 차량 구입 시 등록에 소요되는 차량 등록비, 취득세 등 비용으로 보조금 집행을 금지함

다)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지원

- 신축 예산은 2~3년에 나누어 지원되며, 1년차 보조금은 가능한 한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3) 국고보조금 이월 승인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므로, 매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서식 22호) 및 이월 세부명세(서식 23호) 참조

9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관련서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　분기) 보고 : 서식 20호
* (　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총괄표) : 서식 21호

1) 보조사업 수행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가) 보조사업 수행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나)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3) 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보고

가) 시·도지사는 분기별 집행현황 보고서(서식 20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분기별 집행현황 보고는 3, 6, 9,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사업 정산보고서(서식21호)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국고보조금 예산을 2회계연도 이월한 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과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토록 함.

○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반납해야 함

다) 시·도지사는 사업 폐지시 회계연도 완료시 실적보고서식 및 절차를 준용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기타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 예산 회계관계법, 국고 보조금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에 따름

10 행정사항

1)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2)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시설 신축 부지의 미확정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

3)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2~3개년도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

4)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신축부지로 매입한 급경사 임야지역 또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인해 사업 중단 우려, 산업단지조성 등 도시계획으로 부지 이전, 주택재개발지구 등은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5)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노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 수립함

6)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함

11 주의사항(시설기능보강 및 운영 등)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 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 지명경쟁의 경우

- 추정가격이 3억원이하(종합공사) 또는 1억원이하인 공사(전문공사)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재산 매각 또는 매입 등

○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이하(종합공사) 또는 1억원이하인 공사(전문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등

2) 일반경쟁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금지

3) 시설공사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분리 발주하여야 함

- 장비 구입은 적정한 가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 계약을 권장하며,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교 견적을 통해 단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노인복지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로 부터 계약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납품시에도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을 검수토록 함.

※ 감사원의 2012년 노인복지정책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장비구입 예산집행 사항을 보완함.

※ 장비구입비 부적정 집행 사례

- 후원 물품이나 사용 중인 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
- 물품 거래 시 계약한 물품 목록과 실제 납품 목록을 다르게 허위로 작성

나.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1) 경쟁입찰에 있어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업체 제한 금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참가자격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안됨
- 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계약을 포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또는 적격심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 상태 및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다.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금지

○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 공사 누락)

라.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하여야 함

○ 하자검사 철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3년)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지연배상금 징수 및 대금지급의 부적정

- 준공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징수
  ·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선급금 지급의 적정 및 사후관리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선금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 의무지급율에 따른 선금과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선금 의무지급율

공사 금액	선금 의무지급율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 ~ 20억원	40%
20억원 미만	50%

- 또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목적에 따라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 후 사용처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

마.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제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행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민법 등에서 정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와 시·도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함. 특히 장기차입금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차입이후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 전망, 차입금의 원활한 상환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함.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인인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지원 동일유형 시설에 한함)간 전환은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시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프라 현황, 각 시설의 수급실태, 시설폐지 이후 대책 등을 감안하여, 시설전환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함.

[서식 8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업명 : 점검일 : .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시·군·구)	• 국고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시·군·구)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 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등	법 인 (대표이사)	•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유무 •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 소요비용 •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 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 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 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장비유형 구분 (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서식 9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시도 및 시군구용)

(신축 년차)

<table>
<tr><td>시도</td><td></td><td>시군구</td><td></td><td>연번[1]</td><td></td></tr>
<tr><td rowspan="6">사업
신청
시설</td><td>시설유형</td><td colspan="4">☐ 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단독)
☐ 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병행)
☐ 공립(치매전담형)노인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시설(병행)
☐ 공립(치매전담형)노인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병행)
☐ 공립(치매전담형)노인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병행)</td></tr>
<tr><td>시설명</td><td colspan="4">(가칭) ○○○○원(센터)</td></tr>
<tr><td rowspan="2">사업량</td><td>신청
사업량(식)</td><td>㎡</td><td>규모</td><td>부지 ㎡(평)
건물 ㎡(평)</td></tr>
<tr><td>세부사업
주요 내용</td><td>-(예시)공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 신축</td><td>정원</td><td>(예시) 요양00명,주야간00명</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4">20 . . 부터 ~ 20 . . 까지</td></tr>
<tr><td>설치예정지
주소</td><td colspan="2">시도, 시군구, 읍면동</td><td>농어촌 여부</td><td>※ “농어촌” 기재</td></tr>
<tr><td colspan="2" rowspan="4">사업비
(단위: 천원)</td><td rowspan="2">계</td><td rowspan="2">국비</td><td colspan="2">지방비</td></tr>
<tr><td>시도</td><td>시군구</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 사업비(국비만) 산출 내역 기재 :
(예시, 노인종합요양1년차, 지방) 건축면적(㎡)x건축단가(국비)천원x국고보조율(80%)= 천원
(예시, 노인종합요양2년차, 지방) 건축면적(㎡)x건축단가(국비)천원x국고보조율(80%)= 천원</td></tr>
<tr><td colspan="4">*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td></tr>
<tr><td>보조
사업자</td><td>지자체</td><td colspan="4">지자체명(시도, 시군구)</td></tr>
</table>

1)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 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 각 항목의 현황은 시설유형별(요양, 재가기관 등)로 실정에 맞게 예시 외에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신축 예정 시설 현황

- 시 설 명 : (가칭) ○○○요양원
- 정원(예정) : 00명(치매전담실 0실(총 치매어르신0명))
- 시설 연면적 : ㎡(평) / 0층
- 소 재 지 :

○ 사업추진내용 및 시설운영 방향

〈사업 추진 내용〉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마련하여 · · · · · · · · 예정임.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에 따라 공립요양시설시설을 마련하여 · · · · · · · · 예정임.

〈시설운영 방향〉

- 입소 정원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
-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채용계획, 후생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20. 월	○
	2021. 월	○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21. 0.0~2021.0.0	○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21. 0.0~2021.0.0	○
설계용역	2021. 0.0~2021.0.0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실시설계	2021. 0.0~2021.0.0	
공사입찰	2022. 0.0~2022.0.0	ㅇ
	2022. 0.0~2022.0.0	ㅇ
착공 및 공사 기간	2022. 0.0~2023.0.0	ㅇ
준공 검사	2023. 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23. 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ㅇ

-

ㅇ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시·군·구 의견] * 시·도에서 신축시 공란

ㅇ

-

[시·도 의견]

ㅇ

-

[서식 9-1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수행기관용)

(치매전담형 전환 증개축·개보수)

<table>
<tr><td>시도</td><td colspan="2"></td><td>시군구</td><td colspan="2"></td><td>연번[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사업
신청
시설</td><td>시설유형</td><td colspan="7">☐요양시설(3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td></tr>
<tr><td>시설명</td><td colspan="3">ㅇㅇㅇㅇ원(센터)</td><td>사업종류</td><td colspan="2">☐증개축 ☐개보수</td></tr>
<tr><td rowspan="2">사업량</td><td>신청
사업량(식)</td><td colspan="2">㎡</td><td>규모</td><td colspan="2">부지 ㎡(평)
건물 ㎡(평)</td></tr>
<tr><td>세부사업
주요 내용</td><td colspan="2">-(예시)치매전담실 개보수</td><td>정원</td><td colspan="2"></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 . . 부터 ~ 20 . . 까지</td></tr>
<tr><td>설치예정지
주소</td><td colspan="3"></td><td>농어촌 여부</td><td colspan="2">※ “농어촌” 기재</td></tr>
<tr><td colspan="2" rowspan="4">사업비
(단위: 천원)</td><td rowspan="2">계</td><td rowspan="2">국비</td><td colspan="2">지방비</td><td colspan="2" rowspan="2">자부담*
(법인 등)</td></tr>
<tr><td>시도</td><td>시군구</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설계·감리비를 제외한 자부담의무 금액 작성</td></tr>
<tr><td colspan="6">* 사업비(국비만) 산출 내역 기재 : (예시) 360㎡x1,325천원x80%=381,600천원</td></tr>
<tr><td colspan="6">*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td></tr>
<tr><td rowspan="6">보조
사업자</td><td>지자체</td><td colspan="6">※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td></tr>
<tr><td rowspan="5">법인</td><td>법인명</td><td colspan="5">※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td></tr>
<tr><td>설립일자</td><td colspan="5"></td></tr>
<tr><td>대표자</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운 영
시설명</td><td colspan="5">※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td></tr>
</table>

2)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 법인 · 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요양, 주야간보호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 ·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 · · · · ·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요양원(시설장:)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 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치매전담실 설계변경 내용

○ (설계도면 별도첨부 가능)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7. 월	○법인이사회 의결
	2017. 월	○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7. 0.0~2017.0.0	○
공사입찰	2017. 0.0~2017.0.0	○
	2017. 0.0~2017.0.0	○
준공 검사	2017. 월	○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7. 월~	○ 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검토의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서식 9-2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수행기관용)

(증개축)

<table>
<tr><td>시도</td><td colspan="2"></td><td>시군구</td><td colspan="2"></td><td>연번3)</td><td></td></tr>
<tr><td rowspan="8">사업
신청
시설</td><td>시설유형</td><td colspan="6">□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종합재가시설 □주야간보호시설</td></tr>
<tr><td>시설명</td><td colspan="6">○○○○원(센터)</td></tr>
<tr><td rowspan="2">사업량</td><td>신청
사업량(식)</td><td>㎡</td><td>규모</td><td colspan="3">부지 ㎡(평)
건물 ㎡(평)</td></tr>
<tr><td>세부사업
주요 내용</td><td>- 정원증가(30명)에 따른 증개축</td><td>정원</td><td colspan="3">※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 . . 부터 ~ 20 . . 까지</td></tr>
<tr><td>설치예정지
주소</td><td colspan="3"></td><td>농어촌 여부</td><td colspan="2">※ “농어촌” 기재</td></tr>
<tr><td>중점사업</td><td colspan="6">□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치매전문시설</td></tr>
<tr><td colspan="2" rowspan="4">사업비
(단위: 천원)</td><td rowspan="2">계</td><td rowspan="2">국비</td><td col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
(법인 등)</td></tr>
<tr><td>시도</td><td>시군구</td></tr>
<tr><td></td><td></td><td></td><td></td><td>설계·감리비를 제외한 자부담의무 금액 작성</td></tr>
<tr><td colspan="5">* 사업비(국비만) 산출 내역 기재 :(예시) 708㎡x1,325천원x50%=469,050천원</td></tr>
<tr><td colspan="5">*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td></tr>
<tr><td rowspan="6">보조
사업자</td><td>지자체</td><td colspan="5">※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td></tr>
<tr><td rowspan="5">법인</td><td>법인명</td><td colspan="4">※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td></tr>
<tr><td>설립일자</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운 영
시설명</td><td colspan="4">※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td></tr>
</table>

3)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 법인 · 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기재)

· 설계 ·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 · · ·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기능보강 시설의 현황 설명, 특이사항을 기재)

- 시 설 명 : ○○○요양원(시설장:)

: 당초 ○○법인 ○○재단이 '0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증축/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00년 0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인수(양도)받아 ' 00년 0월 부터 ○○시설을 운영중임.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법인의 사업추진 여건(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

○ 부지 확보 여부

- 시설 부지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무상기부 · 매입등에 따른 기본재산취득 완료 (시도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 등), 토지사용 승락 여부, 소유권 이전 사항 등 그 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기재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안전진단 현황(안전진단 결과는 모두 기재)

구분		진단 결과	조치사항
1차	'01.10.11~ 10.12		
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 시설설치 이후 현재 까지 안전진단 실시 횟수를 기재하고, 진단 결과를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의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결과를 포함하여 모두를 기재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개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 · · · · ·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개소)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0	0	0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건축허가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가능성 : 고도제한, 그린벨트 등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 사항 여부 등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
- 기타 내용 추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	독거 노인(명) (C)	(C/B)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 전년도 분기별 입소자 현황

계	전전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설치 주체별 현황(개소)

계	계	%	지자체	%	법인 시설	%	개인 시설	%	기타	%
전년 1분기										
전년 2분기										
전년 3분기										
전년 4분기										

* 누계기준으로 분기별 증가율(%) 기재, 4분기는 전전년도 4분기말 대비 증가율 기재
* 법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시설 / 기타: 주식회사, 유료시설 등

□ 사업 내용

※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건물의 노후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또는 부지를 확장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기재

○

-

○ 기능보강 완료에 따른 시설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사업 추진방향 및 예상 문제점

○ 추진 방향(예시)

- 기능보강 사유(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 97.10.26 시설 설치이후 그간 ○○○ 문제로 인하여 · · · · 발생하는 등 · · · · 위해 기능보강 필요함.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마련하여 · · · · · · · · 계획임.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주야간보호시설을 마련하여 · · · · · · · · 계획임.

○ 입소자 전원조치에 관한 사항(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

○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예상)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채용관련 사항을 기재

○ 입소 정원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7. 월	○법인이사회 의결
	2017. 월	○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17. 0.0~2017.0.0	○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7. 0.0~2017.0.0	○
공사입찰	2017. 0.0~2017.0.0	○
	2017. 0.0~2017.0.0	○
착공 및 공사 기간	2017. 0.0~2017.0.0	○
준공 검사	2017. 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7. 월~	○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서식 9-3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수행기관용)
(개보수)

<table>
<tr><td>시도</td><td colspan="2"></td><td>시군구</td><td colspan="2"></td><td>연번[4]</td><td></td></tr>
<tr><td rowspan="6">사업
신청
시설</td><td>시설유형</td><td colspan="6">□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양로시설</td></tr>
<tr><td>시설명</td><td colspan="6">ㅇㅇㅇㅇ원(센터)</td></tr>
<tr><td rowspan="2">사업량</td><td>신청
사업량(식)</td><td>㎡</td><td>규모</td><td colspan="3">부지 ㎡(평)
건물 ㎡(평)</td></tr>
<tr><td>세부사업
주요 내용</td><td>-(예시) 시설 안전을 위한 개보수</td><td>정원</td><td colspan="3">※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 . . 부터 ~ 20 . . 까지</td></tr>
<tr><td>설치예정지
주소</td><td colspan="3"></td><td>농어촌 여부</td><td colspan="2">※ “농어촌” 기재</td></tr>
<tr><td colspan="2" rowspan="4">사업비
(단위: 천원)</td><td rowspan="2">계</td><td rowspan="2">국비</td><td col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
(법인 등)</td></tr>
<tr><td>시도</td><td>시군구</td></tr>
<tr><td></td><td></td><td></td><td></td><td>설계감리비를 제외한 자부담의무 금액 작성</td></tr>
<tr><td colspan="5">* (예시) 사업비(국비만) 산출 내역 기재 : 330㎡x662천원x50%=109,230천원</td></tr>
<tr><td colspan="5">*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td></tr>
<tr><td rowspan="6">보조
사업자</td><td>지자체</td><td colspan="5">※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td></tr>
<tr><td rowspan="5">법인</td><td>법인명</td><td colspan="4">※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td></tr>
<tr><td>설립일자</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운 영
시설명</td><td colspan="4">※ 동일 법인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td></tr>
</table>

4)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 법인 · 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 ·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 · · · · ·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요양원(시설장:)

: 당초 ○○법인 ○○재단이 '0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증축/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00년 0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인수(양도)받아 '00년 0월 부터 ○○시설을 운영중임.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 자체예산, 보조금 등으로 개보수 사업을 완료한 실적이 있을 경우세부내용을 기재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법인의 사업추진 여건(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

※ 개보수 사업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축시설에 준하여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재

○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

- 건물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무상기부 · 매입등에 따른 기본재산취득 완료 (시도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 등), 토지사용 승락 여부, 소유권 이전 사항 등 그 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기재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안전진단 현황(안전진단 결과는 모두 기재)

구분		진단 결과	조치사항
1차	'01.10.11~10.12		
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 시설설치 이후 현재 까지 안전진단 실시 횟수를 기재하고, 진단 결과를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의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결과를 포함하여 모두를 기재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여부 등

기간	조사기관(업체)	조사 결과	조치계획
	* 인증기관·업체 여부 등 포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 · · · ·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개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 · · · ·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건축허가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가능성 : 고도제한, 그린벨트 등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 사항 여부 등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
- 기타 내용 추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	독거 노인(명) (C)	(C/B)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 전년도 분기별 입소자 현황

계	전전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설치 주체별 현황(개소)

계	계	%	지자체	%	법인 시설	%	개인 시설	%	기타	%
전년 1분기										
전년 2분기										
전년 3분기										
전년 4분기										

* 분기별 증가율(%)을 기재하며, 4분기는 전전년 4분기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법인시설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시설 / 기타: 주식회사, 유료시설 등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내용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고, 유해환경개선 또는 석면철거 등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누수 방지, 단열 창호·난방개선, 기타 등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

○ 기능보강 완료에 따른 시설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사업 추진방향 및 예상 문제점

○ 추진 방향(예시)

- 기능보강 사유(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 97.10.26 시설 설치이후 그간 ○○○ 문제로 인하여 · · · · 발생하는 등 · · · · 위해 기능보강 필요함.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마련하여 · · · · · · · · 계획임.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주야간보호시설을 마련하여 · · · · · · · · 계획임.

○ 입소자 전원조치에 관한 사항(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

○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예상)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채용관련 사항을 기재

○ 입소 정원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3.10.5	○법인이사회 의결
	2014.2월	○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15. 0.0~2016.0.0	○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
공사입찰	2015. 0.0~2016.0.0	○
	2015. 0.0~2016.0.0	○
개원(예정)	2016. 10월~	○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서식 9-4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수행기관용)
(장비보강)

시도			시군구		연번[5]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양로시설				
	지원유형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증원 인원수 : 0명) ☐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시설명 연락처	○○○요양원(양로원, 센터) (☎)				
	사업량	규모	부지 ㎡(평) 건물 ㎡(평)	정원 (현원)	※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의료기기, 주방기기 등			
	사업기간	20 . . 부터 ~ 20 . . 까지				
	소재지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자부담의무 금액 작성
		* 사업비(국비만) 산출 내역 기재 : (예시) 50,000천원x50%=25,000천원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5) [서식 1] 시설별사업신청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 법인 · 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 ·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 · · · · ·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요양원(시설장:)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 · · · ·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0개소가 늘어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 · · · ·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개소)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0	0	0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	독거 노인(명) (C)	(C/B)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4) 00.0% → (‘15) 00.0% → (‘16)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법인의 기능보강 사업추진 현황(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하되, 추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신축 2차년도,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

- 공정률 등 진행 상황, 부지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기능보강사업 부진 사유: 문제점, 대응방향, 조치한 사항 등 기재

○ 이미 완료 또는 추진예정에 따른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장비보강 사업내용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 장비구입 물품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장비구입 등록시스템의 가격정보를 참고하고, 적정 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된 물품을 선정하여 구입

○ 장비보강 필요성(발생 사유)

- '17년 보조금 증축으로 정원 00명 증가, 자부담으로 침실 00인실 증가 등

○ 구입 장비 개요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8. 월	○법인이사회 의결
	2018. 월	○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18. 0.0~2018.0.0	○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8. 0.0~2018.0.0	○
공사입찰	2018. 0.0~2018.0.0	○
	2018. 0.0~2018.0.0	○
착공 및 공사 기간	2018. 0.0~2018.0.0	○
준공 검사	2018. 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8. 월~	○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서식 9-5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수행기관용)
(화재안전창)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 : ○○ 시·도지사 (대표 ○○○)

○ 소재지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시설명 : (대표자 : ○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 현황(20 . .현재) : 정원 명, 현원 명 (입소율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 목적 :

○ 사업 종류 : 화재안전창문

○ 사업량 :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총액)	국고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보조사업 수행자 법인대표 ㊞ ㊞

[서식 10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시도 및 시군구용)

(신 축)

1. 보조사업 시설현황

○ 법인명(시설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 : 정원 명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

[서식 11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시군구 및 보조사업 수행자용)

(증·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입소율 %(. . . 현재)
○ 건물현황(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군·구청장(법인대표) ㊞ ㊞

[서식 12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시군구 및 보조사업 수행자용)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 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군·구청장(법인대표) ㊞ ㊞

[서식 13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시군구 및 보조사업 수행자용)

(화재안전창)

1. 법인 및 시설 현황

○ 사업자 구분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개인 □기타( )

○ 시설의 종류 :

○ 법 인 명 : ㅇ ㅇ ㅇ 법인 (대표자 : ㅇ ㅇ ㅇ)

○ 시 설 명 : ㅇ ㅇ ㅇ 노인요양원 (대표자 : ㅇ ㅇ ㅇ)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 현황(20 . .현재) : 정원 명, 현원 명 (입소율 %)

2. 사업 수행계획

○ 사업 필요성 :

○ 사업 효과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사업종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화재안전창				

– 사업비(천원)

총 예산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자부담은 자부담 의무 비율 포함, 국비, 지방비 외 추가로 부담한 비용 기재

-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
- 사업추진 일정 :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비 고

4 자치단체 검토의견(시군구에서 검토하여 설치 필요성,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 기재)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

[서식 14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 ○ 사업자 명칭 :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 시설종류 :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 ○ 사 업 명 :
   - ○ 사업목적 :
   - ○ 사 업 량 :
   - ○ 사업장소 :
   - ○ 사업기간 : . . . ~ . . .(년 개월)
   - ○ 사 업 비 : 천원(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 서류

[서식 15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

[서식 16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 목적

○ 필요성 및 지원 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 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 경위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 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4. 사업 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5. 사업수행 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17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변경)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 목적

○ 필요성 및 지원 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 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 경위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 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4. 사업변경 추진사유

○ 변경 추진 경위

5. 사업(변경) 내용

○ 변경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변경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6. 사업수행 주체

7.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8. 사업의 효과

9. 변경시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18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 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서식 19호]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검토 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민간보조사업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 형평성

○ 사업추진 적절성

○ 사업 효과

○ 기타 사항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

[서식 20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　분기) 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 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별 구분은 신축, 증개축, 대수선, 개보수, 장비구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사업효과 분석 보조금 집해 현황

○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 전, 공사진행, 완공 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필증 관계서류 첨부

[서식 21호]

( )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총괄표)

(단위 : 원, 국비 기준)

시도	교부액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액)	실집행액	이월액		국고 집행잔액 (교부액 -집행액)	발생이자	반납고지 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명시	사고			

( )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세부집행실적 현황)

(단위 : 원)

시도	시·군·구	사업 종류	법인명	시설명	국비 교부액	지자체 집행현황 기준					비고 (이불용 상세 사유)
						실 집행액	사고 이월액	명시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이자	

[서식 22호]

( )회계연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 보조사업 개요

회계·기금	일반회계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유형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사업명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내용	*사업 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재		
사업기간	20 . .~. .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도지사	
	주 소 (연락처)		

2. 보조사업 추진 현황 (201 . 월 말 기준)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	이월* 요청액

* 이월 :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

○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

○ 집행상 애로사항 (문제점)

- 애로사항

- 그간 조치결과

3. 이월 요청 사항

○ **이월예산 집행 및 사업 종료시한 :**

○ **이월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세부명세는 별도 첨부)

[서식 23호]

(　)회계연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

○ 보조사업명 :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명		사업내용	추진경과 (공정률 %)	이월액			
				이월액		재이월액	
보조 사업자	간접보조 사업자			이월액	이월사유	이월액	이월사유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 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5)'를 운영하여 브릿지 플랜 2020(2016.12)을 발표함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와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최초 마련함(2006.5)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개정(2015. 12)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노인학대 시설의 위반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시설내의 노인학대 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명시함, 또한 제39조의5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인권정책 개발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종사자·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2018.4)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입소 전 단계

①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 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입소 계약단계

①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

②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며, 인지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여야 함

3. 생활단계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③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⑦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 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 ·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⑩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노인의 이성교재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
-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시설에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⑪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 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 제한 등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2015.12, 시행)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 경찰(112)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구체적 지표와 행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상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를 참조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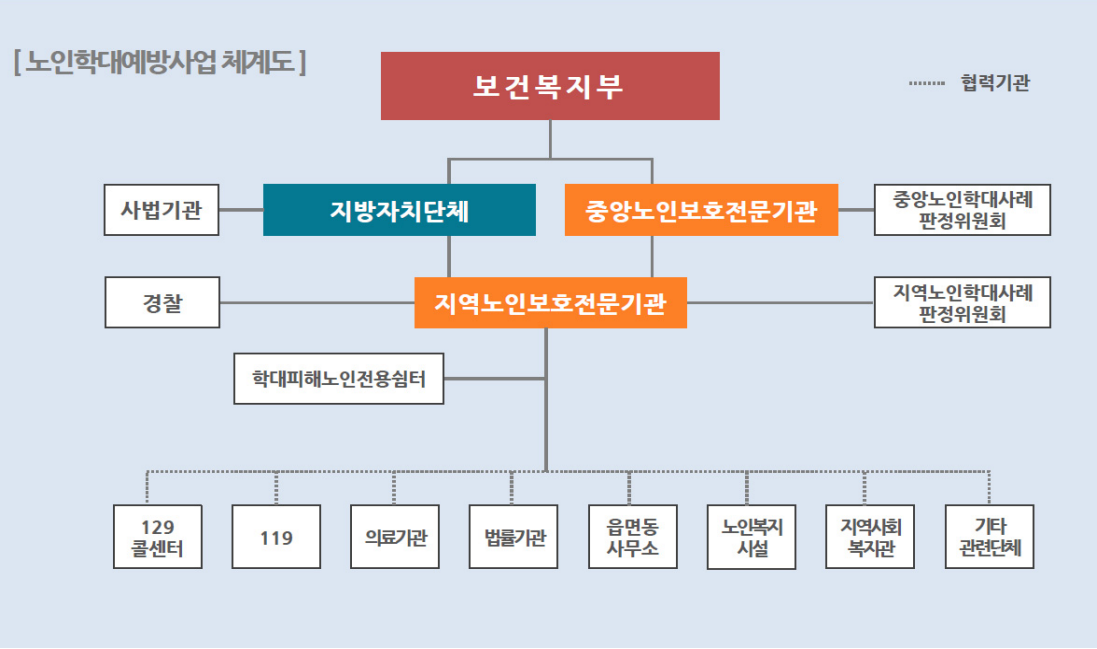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교육·홍보와 지원 등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광역시·도 → 보건복지부)

3) 시·군·구

- 담당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통보(시·군·구 → 광역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 시·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17제3항)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노인복지법 55조의 3에 따라 현장조사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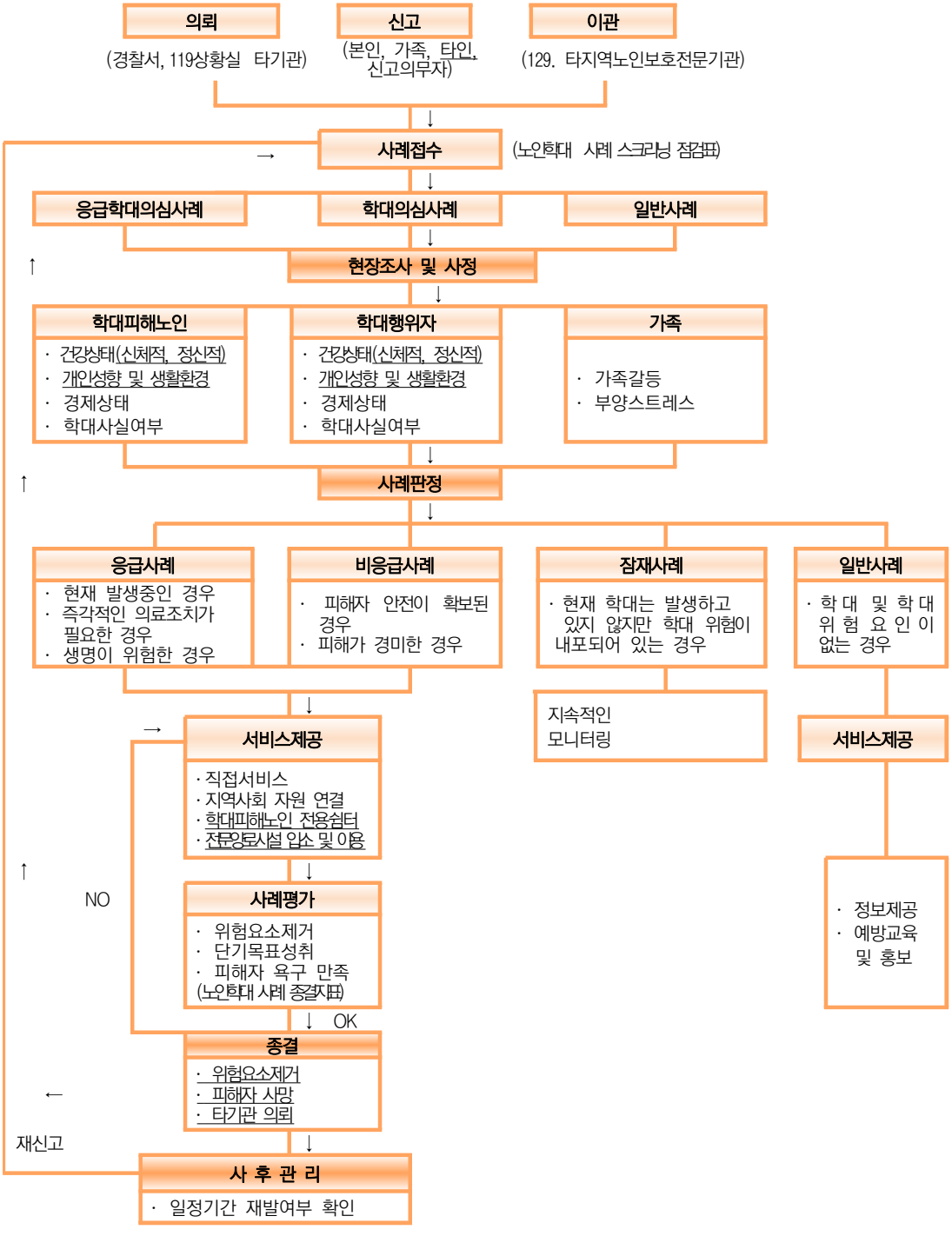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 : 전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의해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노인의 영양상태 및 급식 위생상태(유통기한 지난 음식 등)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

-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고된 노인학대 학대 사례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를 받은 시·군·구는 조치결과를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시·도는 즉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1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시설 내에 생활하는 어르신 중 보행, 인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치매 등)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귀원을 돕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출·외박 절차

<table>
<tr><th>자립외출이 가능한 어르신</th><th colspan="3">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th></tr>
<tr><td>● 자립으로 보행 가능
(보장구사용하여 자립 보행 가능)
● 인지기능상 외출에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td><td colspan="3">● 안전하게 자립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td></tr>
<tr><td>본인·가족의 의사</td><td colspan="3">본인·가족의 의사</td></tr>
<tr><td>직원에게 알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행선지 파악</td><td colspan="3">직원과의 상담
가능한 행선지, 용무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법을 모색</td></tr>
<tr><td></td><td>단순외출</td><td>가족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td><td>가족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td></tr>
<tr><td>직원의 명함, 신상정보 지참 확인</td><td>정기외출 프로그램 활용
/ 시장보기 등</td><td>가족상담/어르신상담
- 일정, 차량 등 조정</td><td>자원봉사자·직원연결
- 일정, 차량 등 조정</td></tr>
<tr><td>필요시 대중교통편 안내
인근지역 차량 지원</td><td>❶ 1:1 or 다수로
이동 동행 → 완료
❷ 용무 대행</td><td>외출준비 안내
❶ 의복, 약 등 준비
❷ 처치 방법 설명
❸ 유의사항 안내</td><td>외출준비, 봉사자 교육
❶ 의복, 약 등 준비
❷ 처치 방법 설명
❸ 유의사항 안내</td></tr>
<tr><td>외 출</td><td>구입 · 전달, 업무처리
- 영수증 지참</td><td>외 출</td><td>외 출</td></tr>
<tr><td>귀 원
-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td><td>결과확인 및 교환
- 대장에 기록</td><td>귀 원
-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td><td>귀 원
-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td></tr>
</table>

1. 어르신 이탈 발견

→ 어르신 담당직원에게 비상연락
→ 직원간 역할 분담 (3개조)
(위급시 곧바로 신고)

❶ 원내를 다시 샅샅이 살펴본다.
- 장롱, 창고, 계단아래, 욕실, 기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

❷ 마당,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어르신을 찾는다.

❸ 주변어르신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
- 어르신이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 최근 어디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 (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 확인

❹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

2. 신 고

❶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 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❷ 지역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수집
- EX) 콜택시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비상시 무전을 쳐서 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보고, 직원 비상연락

→ 원장에게 보고

❶ 낮에 발생시
-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의 지시 하에 대처

❷ 야간에 발생시
-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 함
-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어르신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함
- 인근 지역 거주 직원의 협조를 구함

※평상시 정확한 연락망을 구비하고, 실제 상황을 예상하여 연습이 필요함

4. 보호자 연락

❶ 어르신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함
- 어르신이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함
- 집으로 도착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어르신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

❷ 평소 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직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 함

5. 어르신 찾기 재신고 및 확인

❶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4~5팀 구성
-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핌
- 어르신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
- 바깥으로 출동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❷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함
- 콜택시에도 연락하여 무전을 요청 함

❸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

2) 실종시 처리 절차(예시)

6. 전단배포 유관기관 협조, 신고

➡ ❶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
-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동조에 전달
-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

➡ ❷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어르신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 구함

➡ 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게시

결 과

찾았을 경우

❶ 각 신고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해야 함
❷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
❸ 어르신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
-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
-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거나,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

찾지 못했을 경우

❶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 발송
❷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발송, 전단배포
❸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실종신고
- 파출소(지구대)

2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과의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생활노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시설 생활노인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음으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령자의 경우 뼈가 약함으로 수발 시 이를 유념하여야 하며, 넘어짐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동시에는 가급적 골절 부위를 고정 후 이동하도록 한다.

응급환자 발생시 처리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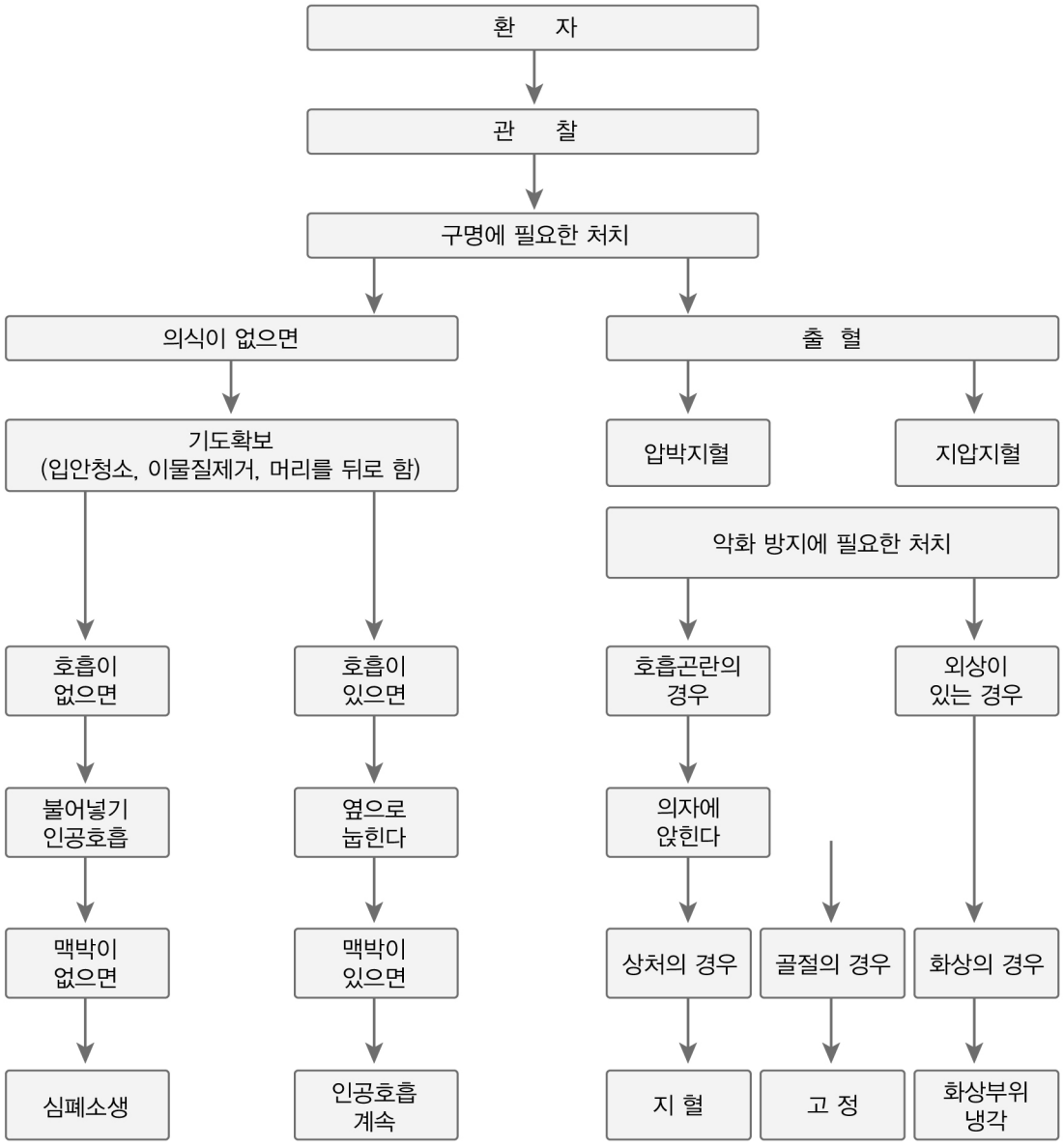

3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 시설장은 시설 생활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장례사유 발생 시 시설의 조치
  ① 장례 사유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해당 시·군·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는 해당시설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장례절차는 생활노인의 유지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생활노인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활노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 내에 지정된 장소 또는 장례식장(영안실)에서 시설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생활노인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내의 국공립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산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인 생활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유류금품 처리(노인복지법 제48조)

-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생활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 참조)

-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 및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적용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106호(2017.8.3.)

- 각 시·도는 민법 및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에 따라 매년 12월말기준 시설(요양시설, 양로시설)내 무연고 사망자 및 유류금품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퇴소 처리

- 시설은 생활노인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

처리주체	처리내용
①노인복지시설 또는 ②복지실시기관	□ 무연고자 사망 ○ 복지실시기관*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①노인복지시설 또는 ②복지실시기관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8조) * 장례처리 비용은 유언에 명시한 사항,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에 사용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한 비용집행(2020 장사업무안내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75만원)이 가능

	i)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ii)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
①노인복지시설 또는 ② 친족, 검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친족, 기타이해관계인(노인복지 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민법 제1053조)	□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
가정법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고(3개월)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월 이상)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승인한 경우 ○ 상속인에게 지급(민법 제1055조) 및 종료
(청구)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 가정법원	□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 2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	
(청구) 노인복지시설 (특별연고자) ↓ (재산분여) 가정법원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 ○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가정법원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민법 제1058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서 식, 엑셀〉

시설내 무연고자 사망자 수 및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

시도	시군구	구 분 (개인, 법인)	시설종류(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시설명	조사결과 ('19.1월~'19.12월말)	조치사항	비고
00시	00군	법인 (개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요양원 (00공동생활가정)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기 선임	-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없이 시설이 보관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0년 0월까지 시정조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정조치는 조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토록 조치
					- 0명의 유류금품에 대해 장례비용 처리 후 남은 유류금품(0원)을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임의사용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수사의뢰, 고발	
00시	00군	개인 (법인)	양로시설	00양로원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기 선임	-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없이 시설이 보관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0년 0월까지 시정조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정조치는 조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토록 조치
					- 0명의 유류금품에 대해 장례비용 처리 후 남은 유류금품(0원)을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임의사용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수사의뢰, 고발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은 엑셀의 시트를 달리하여 작성

〈예시〉

현 장 점 검 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기관명	
대표자	
시설 소재지 (연락처)	
사망한 무연고자수	

상기 시설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양로·노인요양시설·공생)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점검 결과**

○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등으로 장례비용 충당 시, 사용용도가 적정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위 1번 확인사항에 따라 사용용도가 적정할 경우) 장례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확실한 경우, 유류금품을 상속인에게 지급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위 4번 사항을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미청구한 경우) 유류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 개인목적으로 사용 ☐ 시설운영비에 사용
☐ 기타 용도로 사용( )
☐ 시설이 보관

○ 기타 특이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

2020 . . .

지자체 : 소속 성명 (인)

지자체 : 소속 성명 (인)

시설 : 소속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예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현장점검 설명자료

1. 확인사항 :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등으로 장례비용 충당 시, 사용용도가 적정했는지 여부	
적정	①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2018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또는 ②유언에 명시한 사항에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
부적정	유언에 명시사항이 없음에도 위 ①의 사항 외의 용도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

2. 확인사항 : (위 1번 확인사항에 따라 사용용도가 적정할 경우) 장례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적정	장례비용에 대해 영수증 처리
부적정	장례비용에 대해 영수증 미처리

3. 확인사항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확실한 경우, 유류금품을 상속인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적정	상속인에게 지급
부적정	상속인에게 미지급(시설에서 보관, 개인 또는 타 용도로 사용)

4. 확인사항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했는지 여부	
적정	민법(제6절, 제1053조~1059조) 및 노인보건복지지침(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부적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미청구

5. 확인사항 : (위 4번 사항을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미청구한 경우) 유류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부적정	□개인목적으로 사용 □시설운영비에 사용 □기타 용도로 사용( ) □시설이 보관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2)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관리를 위한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 종합계획)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이상 비상구문의 열림 및 잠금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후 매일 비상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문 열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게 비상구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겸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 : 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 : 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 : 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5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 반하여 통장 등 개인금품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할 것

6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책임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안전 책임성 강화
  - 안전업무 실무자 관리,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담당자) 시설 내 종사자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관을 보조 및 지원

※ 시설은 안전관리책임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지정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7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대처 강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대해 당일 야간 근무 준비상태를 제3자가 확인 후 근무토록 함
  - 당일의 입소현황·최단 대피경로 사전답사·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야간근무자의 초동대처 촉진

  * 당직자가 아닌 야간 교대근무자(2~3교대)에게도 비상대응 임무를 명시하고, 제3자 (시설장 또는 차선임자)에게 사전보고토록 의무화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고용노동부, 「감사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기준은 감사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근로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을 규정, 실제 업무를 수행 –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 –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 인정 • 업무수행의 책임을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화재발생 등)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제재나 감시·감속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 •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가능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하는 경우 –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가능 시간 –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참고〉 야간근무 지침

▣ **야간 근무지침 표준** ▣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2) 기관범위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3) 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 : 당직자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미세먼지 관련 조치사항(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 : 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 보고방법
  - 담당자 연락처 : 시설장은 반기 1회(3월, 9월)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소관과)
  - 조치결과 : 경보발생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경보 발생 후 1주일이내 취합후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발생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자)에 대한 별도 관리,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조치 후 결과보고
- 시설 미세먼지 담당자는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_{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_{10} 81이상 또는 $PM_{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_{10} 150이상 또는 $PM_{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_{10} 300이상 또는 $PM_{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19년 추경예산으로 설치한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시설은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및 유지관리점검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시·군·구는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등을 수시점검
  - 시설이 폐업할 경우 해당 공기청정기는 내용 연수(사용가능 햇수) 9년을 기준으로 보조금 현금 반납

* 내용 연수(사용가능 햇수) 9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서식(예시)〉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요양원

관리번호	유형	형식	청정방식	제조회사	모 델 명 (표준사용면적)	설치일자	설치장소	비고
1	공기청정기			○○	○ ○ (33㎡/10평형)	2019.09.10	○○○호	1대

〈서식(예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점검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점검표

점검관리자 :

관리번호	유형	장착된 필터	관리방법	필터관리내용		
				점검일자	세정일자	교체일자
제 품 명	공기청정기		4회 세정 후 교체			
제조회사	00		추천 교체 시 교체			
모 델 명	00		추천 교체 시 교체			
설치일자	00		램프세정, 교체			
설치장소	00		먼지 제거 청소			
※ 특이사항						

* 점검 및 관리주기는 분기 1회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생활노인의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전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시군구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및 전염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 소각, 교육, 소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 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한다.
  - 시설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관리대책수립 및 이행. 옴 등 발생 상황 표본조사, 지침 작성 및 배포, 홍보 등
- 시설에서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한다.
  - 집단적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요청

-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 개인위생
  -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 용변 후 반드시 씻기
  -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기
- 오염예방
  - 화장실, 쓰레기통 등 오염원의 시설개선 및 청결유지
  -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구제
  - 취사, 식사도구 등은 끓는 물에 소독실시
- 감염경로 차단
  - 날음식, 찬음식의 생식금지
  - 물수건 등의 공동사용금지
  - 오염구역의 소독
- 조리사 등의 위생관리
  - 개인위생관리 철저
  -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급식 금식
  - 조리기구(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각각 구분).시설의 청결유지

- 음식물의 장기보관 금지
- 위생교육 철저

● 환자발생시 대처방안

-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응급조치 및 격리수용 조치

3 옴 관리 수칙

정 의	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에 의한 피부 감염증
매개체	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매개체의 특징	• 사람을 숙주로 하는 절대기생체로 암컷이 숙주 피내 1~2mm 깊이에 알을 낳고, 4~5일안에 부화 • 유충이 자라 10~12일에 성충이 되어 산란함
전파경로	감염환자와의 직 · 간접 접촉으로 충체가 감염을 일으킴
호발시기	연중 발생가능
호발대상	10세 이하 어린이와, 최근엔 60대 이후 연령층에서 호발
호발장소	위생상태 열악한 집단시설(요양원, 장기보호시설, 감옥, 육아시설
임상증상	• 야간 소양감, 구진, 긁힌 상처, 농가진 • 손가락 사이, 손목의 굴측, 겨드랑이, 허리,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남성의 성기 주변 등에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음
진단 기준	피부 긁어내서 검사를 시행하여 현미경으로 피부 안으로 굴을 파는 0.2~0.4mm 길이의 암컷 성충 발견 가능 또는 현미경으로 알, 배설물 관찰
감별 진단	포진성 피부염, 약제 발진, 습진, 몸니, 편평 태선, 장미색 비강진
치료	• 도포용 약제(린단 로션, 크로타미톤 크림, 퍼메트린 크림)를 온몸에 도포하여 씻어냄 • 가족 및 접촉자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 • 1주 후에 재도포
합병증	긁은 부위 2차 감염, 찰과상, 습진화, 태선화, 농가진화 가능
예방	• 감염된 환자와 접촉 금지 • 환자의 의복과 침구를 60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세탁한 후 건조

*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옷이나 침구류를 통해서도 감염

● 관리방법

- 요양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 환자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환자 접촉, 분비물 및 의료물품이나 병실 환경 접촉시 손위생
  • 접촉 또는 케어행위시 장갑·마스크·가운 등 착용
  • 정기적으로 오염 확인시 청소와 소독

- 보호자 및 접촉자
  • 환자, 사용한 물품, 환자 주변 환경 접촉 최소화
  • 접촉 전·후 손위생 철저. 필요시 장갑, 가운 등 착용

● 증상 및 치료

- 일반옴 : 특징적인 증상은 야간에 악화되는 가려움과 발진
-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환자와 접촉, 오염된 의복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하여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 또는 공기를 통한 간접 전파
  • 처방된 치료제를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시설내 동거인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및 추적 치료

● 예방 및 위생처리

- 개인위생, 보건교육, 집단위생 등 환경개선
  • 환자와 접촉을 피하며, 시설내 입소자 등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해야함
    ※ (잠복기) 4-6주로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전염가능
  •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 실내를 철저하게 진공청소기로 청소
  • 속옷, 침구 등 50~60℃물로 10~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말 것
  • 세탁이 어려운 것은 2일간 햇볕에 말리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
  • 세탁할 수 없는 의류는 3일 이상 보관한 후에 재사용

● 발생시 조치 사항

- (요양시설) 옴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옴 발생 사실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 부록「2018년도 옴 예방 및 관리지침」안내서 준수
  • 노인요양시설에서 옴 전염 위험성이 높은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건강관리에 철저
- (건보공단) 시설 청결유지, 전염병 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 소각 등) 시행 및 발생 현황 복지부 보고
  • 옴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 시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처리
  • 시설에 옴 발생 위험 전파 및 관리 안내 철저
  * 옴의 발생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 배포
  • "옴발생 실태조사" 실시 : 최근 발생 시설, 옴 다발 발생 시설 방문조사
- (시군구·보건소) 시설 소독, 방역 등 조치
  • 집단 옴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 옴 발생 시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
  • 옴 환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요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 (보고 정례화) 각 시도는 시설에서의 생활노인 및 종사자의 전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발병현황 및 밀접접촉자(돌봄입소자) 감염예방 조치실적(진료포함)을 아래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 보고

환자 발생일자	환자 인적사항				환자 조치사항 등		밀접접촉자 조치사항	비고
	병명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조치사항	완치 여부		
'19.0월0일	옴	입소자	홍길동	'00.0월 0일 (00세)	병·의원 진료 및 처방, 격리치료 등	완치	입소자 0명 병·의원 진료 또는 진료·처방등, 종사자 0명 병·의원 진료 또는 진료·처방등	
〃	결핵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류)	심청	〃	〃	치료중	〃	
합계			입소자 0명, 종사자 0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류)			완치 0명, 치료중 0명	입소자 0명, 종사자 0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류)	

4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재가)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검진

-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은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 또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부록]

2018년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

01 정 의

- 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에 의한 피부감염증
  - 옴진드기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조직에 침입해 일으키는 피부병[6)]
  - 암컷이 사람이나 동물의 피하조직에 침입해 하루 2~3 mm씩, 대략 수 cm에 이르는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

그림 1. 수컷 옴[2)]

02 매개체[7)]

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 거미아강 (Subclass Arachnida), 무기문목(Order Astigmata), 옴진드기과(Family Sarcoptidae)에 속함
- 옴진드기는 인간을 1차 숙주로 점차 가축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까지 전파되어 사람 외에 40여 종의 동물을 숙주로 기생
- 사람에 기생하는 종과 가축 등 다른 동물에 기생하는 종이 다름
  * 사람 옴진드기는 흔히 옴진드기(*S. scabiei*)로 표기
- 한국에서 보고된 종은 3종
  - 사람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 개옴진드기(*S. scabiei* var. *canis*)
  - 돼지옴진드기(*S. scabiei* var. *suis*)

6) Baik Kee Cho, Reemerging skin disease caused by arthropods I: scabies, J Korean Med Assoc 2011 May; 54(5): 511~520

4)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군자출판사 2007(1판) p. 1015~1020

가 형태

- 옴진드기는 난원형이며 회백색이고 다리와 악체부는 갈색을 띰
- 암컷은 길이 0.30~0.45mm, 넓이 0.25~0.35mm, 수컷은 그 크기의 절반 정도임[8)]
- 악체부(gnathosoma)와 분절되지 않은 동체 부(idiosoma)로 구분
- 약충과 성충은 8개의 다리가 있고 짧고 뭉툭하여 원판 모양
  * 유충은 3쌍의 다리
- 눈과 호흡기가 관찰되지 않으며 세 번째 다리에 긴 강모가 존재

나 생활사

- 알, 유충(larva), 약충(nymph), 성충의 단계
  - 암컷은 4~6주간 생존하며 평균 35~50개의 알을 낳음 (암컷은 매일 4~5개씩 산란)
  - 알은 4~5일 후 유충으로 부화되며 약충시기를 거쳐 10~14일 후 성충이 됨
    - 암컷은 피부표면에서 수컷과 1회 교미한 후 곧 각질층 내에 굴(burrow)을 만들며 수컷은 교미 후 2일 이내에 죽음
    - 암컷이 굴에서 알을 낳고, 이 알들이 부화하여 유충(larva)이 되고, 허물을 벗게 되면 약충(nymph)으로 탈피 함
- 옴진드기는 정상체온의 피부표면에서 1분에 약 2.5 cm 이동하며 평상의 실내 온도와 습도에서 24~36시간 생존
- 옴진드기는 20℃ 이상의 기온에서 활동성이 활발해 더운 여름철 옴 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환자 수가 감소

8) https://www.cdc.gov/parasites/scabies/biolog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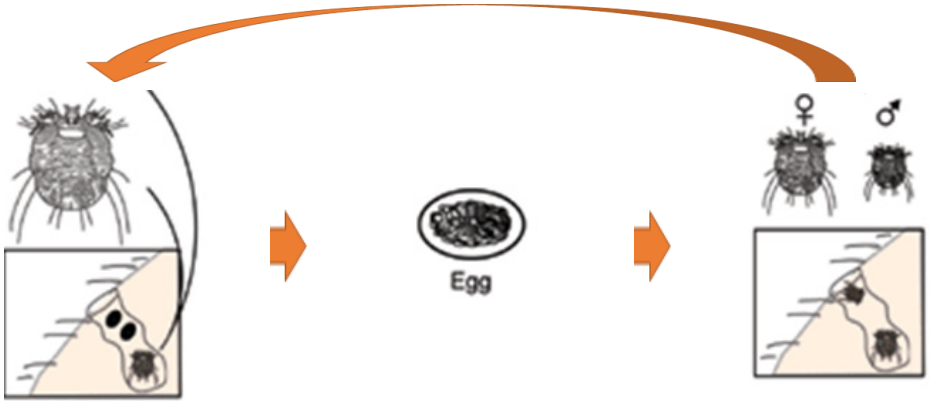

1. 암컷 산란 2. 3. 알 4. (4~5일 후 5. 유충으로 부화) 6. 7. 성충 8. (암컷은 피부표면에서 교미 후 각질층 내 굴을 파고 산란)

그림 2. 옴의 생활사

9. 출처 : http://www.cdc.gov/dpdx/scabies/index.html

03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가 세계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
- 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 높은 유병율

나 우리나라 현황

1) 우리나라 옴 유병률[9)]

9) Lee WK, Cho BK. Taxonomical approach to scabies mites of human and animals and their prevalence in Korea. Korean J Parasitol 1995;33:85-94.

- 1960년대 외래환자의 2% 내외
- 1970년대에는 외래환자의 3~7%
- 1980년대 초에는 외래환자의 10%
- 1990년대에는 외래환자의 1%

2) 옴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07~'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7년 73,533명이던 환자는 2009년 90,668명, 2010년 101,109명, 2011년 103,813명을 정점으로 2012년 95,592명, 2014년 91,018명, 2015년 84,431명, 2016년 86,55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16년 연령대별 환자 수는 50대 15,792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2,221명(14.1%), 80대 11,812명(13.6%), 40대 10,957명(12.7%), 70대 10,139명(11.7%), 30대 7,875명(9.1%), 20대 7,518명(8.7%), 10대 5,789명(6.7%), 10대 미만 4,474명(5.2%) 순으로 발생
- 성별로는 86,577명중 여자가 47,784명(55.2%)으로 남자 38,793명(44.8%) 보다 8,991명(10.4%) 많이 발생함

다 옴 발생의 증가 요인

- 노인요양시설의 증가
- 치료약물에 대한 내성 증가[10)]
- 청결한 환경에서의 옴이나 잠행 옴 등으로 인한 진단의 어려움
- 유행지역 여행객 증가[11)]

10) Cho BK, Reemerging skin disease caused by arthropods I: scabies. J Korean MED Assoc 2011 May; 54(5): 511-520
Samar Khalil, Ossama Abbas, Abdul Ghani Kibbi, Mazen Kurban,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 https://doi.org/10.1371/journal.pntd.0005920 November30, 2017

11) Hong ST,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national and emerging parasitic diseases;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in korea. 2017. 241-247.

라 국내 토착 가능성

-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 년 4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옴의 집단 감염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04 임상양상

- 첫 감염 후 가려움증이 나오기까지 잠복기는 4~6주로 알려져 있으나 재감염의 경우 하루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옴진드기 보다 옴진드기의 침, 알 또는 배설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 옴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면, 노출되고 나서 1~4일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옴진드기에 감염된 후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후 최대 2개월(2~6주) 동안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감염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이 시간동안 옴을 퍼뜨릴 수 있음
- 환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며 딱지옴의 경우 일반옴에 비하여 전파력이 강함
- 침구, 의류, 가구 등에서 진드기 개체가 3일 이상 생존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 접촉 외에 환경에 의한 전파도 가능
- 진드기의 종에 따라 임상 양상 및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딱지옴의 경우 50%는 소양증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가 증 상

1) 일반옴

가) 특징적인 증상은 야간에 악화되는 가려움과 발진임

· 야간에 각질층 내에 굴을 만들고 이때 분비되는 소화액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여 가려움증 및 피부병변이 발생
· 감염 부위를 계속 긁으면 감염된 상처가 생김

나) 병소의 분포는 굴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음

· 손가락 사이, 손목의 접히는 부위, 남성의 성기 주변,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겨드랑이, 허리 등
· 유아나 소아는 종종 머리, 얼굴, 목, 발바닥, 손바닥에서도 발견
· 구진, 소포, 습진반, 결절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발생

다) 호발연령층은 최근 노인 연령층으로,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순가려움증, 건성습진 등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

라) 합병증으로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2) 딱지옴(Crusted scabies), 혹은 노르웨이옴(Norwegian scabies))

가) 특징

· 많은 다량의 알을 산란하고 두꺼운 피부를 형성하며 전염성이 강함
· 보이는 건선모양 병변이 특징적이며, 성기 및 볼기에 심한 인설 및 균열 병변이 보임
· 딱지옴 환자 중 50%는 가려움증이 전혀 없으며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를 잘 관찰하면 25%에서 산란 굴을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나) 전파 양상

· 간접전파 :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옴진드기 전파

다) 동반되는 질환

· 다운증후군, 나병, 정신장애, 신경장애, 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국소스테로이드제 과다 사용 등
  – 이런 질환들에서는 대개 가려움증의 유발이 억제됨

라) 치료

· 다른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격리와 적극적인 치료 필요

3) 잠행옴(Scabies incognito)

• 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국소도포하게 되면 가려움은 완화되지만 옴진드기가 증가하여 주위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옴진드기를 전파하는 잠행옴으로 이행됨

4) 결절옴(Nodular scabies)

• 보통 옴의 임상적 변형으로 나타나며 소양증이 심한 홍반성 또는 적갈색의 구진이나 결절이 생김
• 옴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결절이 지속되며, 이러한 병소는 음낭, 남자 성기, 겨드랑이에 호발
•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몸통과 사지에 잘 발생 됨

05 진단(실험실검사)

가 임상적으로 진단

• **야간의 가려움증**
• 옴진드기 굴을 확인

- 가족력
- 옴 환자 노출력
- 요양병원 입원이나 방문력
- Dermoscopy 생체 내 surface microscopy으로 검경

나 현미경 진단

- 옴진드기의 충체, 알, 혹은 배설물(scybala)을 확인하면 확진
- 옴진드기 굴이 의심되는 부위 또는 손톱 밑 등에 광유(mineral oil)를 떨어뜨린 후 외과용 칼로 6~7회 긁어서 각질세포가 포함된 광유를 긁어모아, 유리슬라이드 위에 놓고 현미경으로 옴 진드기 유충이나 알을 확인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옴진드기 진단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제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6 치료

가 치료 원칙

1) 옴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

2)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유아나 노인에서는 머리나 얼굴도 포함하며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마비로 인하여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않아야 함
- 옴진드기들이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바르고 그 약은 다음날 아침에 씻어냄

3) 한집안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

–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여 감염전파를 조절하고 필요시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여 치료

4) 1주 후에 재도포

5) 현미경검사를 통한 완치여부 확인을 위해 2주 후 병원 재방문

• 치료 후 2~4주 이상 계속 가렵거나 새로운 굴이나 발진이 계속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

* 80%의 환자에서 3개월 정도 후 치유되나 수개월까지 지속 되는 경우도 있음

6) 일정한 양만 처방하여 과도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 예방

7) 약물사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인쇄물로 상세히 설명

8) 내복과 침구는 항옴진드기 제제를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50~60℃)로 10~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음

–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 가능

9) 시설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팀(patient care staff)과 세탁실(support staff) 등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모두 치료받아야 함

10) 도포량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충분히 도포해야 함

11) 대량 집단에서는 치료관리 권장되며, 모든 환자는 증상에 관계없이 치료[12)]

나 치료제

• 옴진드기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scabicides라고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

12) C.M.Salavastru, O.Chosidow,M.J.Boffa, M.Janier, G.S.Tiplica. European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scabies. 2017 European Academy of Dematology of Dematology and Venereology 2017; 1-4.

1) 5% 퍼메트린 크림(Permethrin)

- 전신 흡수가 좋고 신속히 배설되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우수
- 생후 2개월 이후 유아에게 사용 가능
-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 후에 물로 씻어냄
- 2세 미만의 영유아, 임부, 수유부는 사용할 수 없음. 살아 있는 옴진드기 암컷 성충 보이거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7~10일 후에 재치료

2) 린단(Lindane)

- 약을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어야 하며, 1주일 후 한번 더 사용함
-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등과 같이 공범위한 염증성 피부질환이 있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아나 소아, 임산부(또는 수유부)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를 요함

3) 크로타미톤 로션(Crotamiton) 10%

-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린덴, 퍼메트린에 비하여 저조
- 결절옴이나 소아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결절이 있는 부위에는 장기간 도포

4) 유황(5%~10%) 연고

- 2세 이하 유아에서도 사용 가능, 냄새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07 예방

가 예방

1) 개인위생

- 환자와 접촉을 피함
- 같이 사는 가족이나 구성원 등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가 4~6주로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옴을 옮길 수 있기 때문

2) 보건교육 강화

3)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4)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확인 필요

5)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6)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하거나, 사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옴 감염여부 점검 필요

나 관리

- 감염환자의 내복 등을 포함한 모든 옷, 침구, 수건은 항옴진드기 제제를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50~60℃ 이상)로 10~20분간 세탁하고 난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음

  * 옴진드기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72시간 동안 살 수 있음

- 세탁할 수 없는 의류는 3일 ~ 7일 동안 보관한 후에 재사용
- 어린이와 성인은 대개 치료 후 다음 날 보육원, 학교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필요 시 치료확인 후 복귀하도록 함13)
- 딱지옴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청소한 진공청소기 내부는 소독제(살충제)로 닦아내고 사용한 솜 등은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
- 옴 환자가 퇴실하거나 전실(동)한 경우 적절한 환경(살충) 소독 실시

다 관리매뉴얼

구 분	옴
1. 초기 대응 요령	1) 조사대상 선정 - 옴은 국내 토착 절지동물로, 매년 옴 진료환자가 4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음 - 옴진드기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 및 이들과 접촉한 사람 2) 검사방법 설정 - 밤에 특징적인 가려움증과 옴진드기 굴의 발견, 가족력 등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현미경하에서 옴진드기를 확인함으로써 확진 3) 설문조사 내용 - 최근 다녀온 곳, 접촉한 사람, 임상증상
2. 초기 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	1) 양성자에 대한 처치 요령 - 도포용 약제(린단 로션, 크로타미톤 크림, 퍼메트린 크림)등을 온몸에 도포한 후 12시간 경과 후 씻어냄 - 가족 및 접촉자도 함께 치료 하는 것이 중요 - 1주후 재도포 - 대량 집단 발생 시 집단으로 치료관리 권장하고 모든 환자는 증상에 관계없이 치료

13) https://www.cdc.gov/parasites/scabies/prevention&Contral..html

구 분	옴
	2) 처치 후 판정에 대한 필요성 - 투약 후 증상의 호전 및 충체 미검출 3) 추가 조치 필요성 - 불필요
3. 추가 조사 내용	1) 대상 - 옴진드기 분포 및 감염률 조사 2) 내용 및 방법 - 옴진드기 채집 3) 조사 후 후속 조치 - 옴 진드기에 대한 살충 작업
4.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 대상 - 유행지역 주민 2) 내용 - 보건교육 강화 : 옴진드기 살충 및 감염 방지 방안
5. 종결 요건	1) 종결 기준은? - 감염자의 임상적 완치 2) 종결 후 감시 필요성은? - 불필요 ※신규 전입자 감염여부 점검

08 Q & A

옴이란 무엇인가요?

해답 - 옴 진드기라는 아주 작은 벌레처럼 생긴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감염을 말합니다.

- 암컷 옴진드기는 피부 표면 바로 아래에 알을 낳습니다. 4~5일 후에 알이 부화 되면 유충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고 성장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교미하고 성충으로 자라서 피부에 굴을 파서 산란하며 생활사를 되풀이하면서 감염을 확산 시킵니다.

옴은 어떻게 감염되고 확산이 되나요?

해답 - 옴은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이나 옷 또는 침구, 수건 등과 접촉할 때도 옮습니다.
- 옴은 보통 감염된 사람과 포괄적, 친밀한 개인적 접촉을 통해 확산됩니다. 군대나 요양소 등과 같이 공동주거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 병원에서 잘 발생하며,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감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옴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 있나요?

해답 - 붉은 발진이 생기고, 보통 극심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더 심해집니다.
- 발진은 손가락 사이, 손목과 팔꿈치 안쪽, 가슴, 남성의 성기, 벨트 라인,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유아에게는 머리, 목, 손바닥 또는 발 바닥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긁게 되면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옴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해답 -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고, 긁어서 피부에 손상이 생기면 이차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차 감염이 된 경우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옴진드기에 감염이 공동주거지에서 생긴 경우 모두 함께 처치를 해야 합니다.

옴이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되나요?

해답 - 동물은 동물의 특이적인 옴진드기가 있습니다. 드물게 동물의 감염이 보고되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사람은 사람 옴진드기에 주로 감염됩니다

옴에 걸린 사람과 가벼운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나요?

해답 악수, 일시적인 포옹은 일반적으로 옴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옴진드기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해답 옴진드기는 1~2개월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보통 48~72시간 이상 생존하지 못합니다, 옴진드기는 50°C(122°F)의 온도에 10분 동안 노출되면 죽습니다.

공공 수영장에서 옮을 수 있나요?

해답 옴은 옴이 있는 사람과 피부접촉에 의해 감염됩니다. 옴은 때로는 겉옷, 침구 등 물건을 통해서도 퍼질 수도 있지만 수영장에서 감염은 거의 없으나, 샤워시설에서 로션이나 수건의 공동사용으로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카펫이나 옷에 있는 진드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답 옴진드기의 약을 바른 후 2~3일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옷이나 침구, 의복, 수건 같은 물품은 뜨거운 물(50~60℃)로 10~20분간 세탁하고 건조시키고, 최소한 72시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펫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세심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옴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치료해야 합니까?

해답 예. 옴이 있다고 생각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서 검사하고 진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옴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인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해답 예.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 잠복기 동안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병인은 옴의 추가 감염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옴이 있는 환자가 사용한 방은 소독을 해야 합니까?

해답 예. 딱지옴 환자가 사용한 방은 진공청소기 등으로 철저히 청소하고 살충소독합니다. 또한 청소한 진공청소기는 살충제로 닦아내고 사용한 솜 등은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나.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마.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 시·군·구청장의 지정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바.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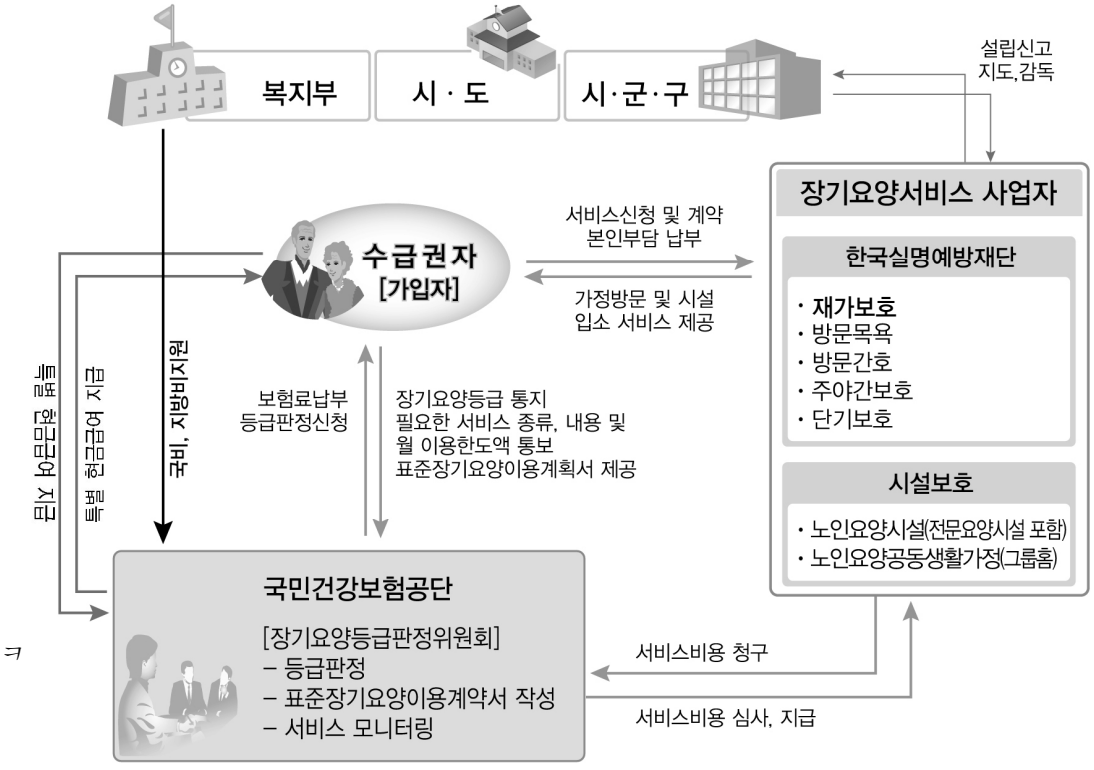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국가, 지방자치단체)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정보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 조회
  - 장기요양인정자(1~5 등급자,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외자 정보를 행복e음 통해 연계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등급내·외자 정보 조회
-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관리
  - 장기요양인정자가 아닌 등급외자 등에 대해 시·군·구에서 제공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는 행복e음을 통해 건보공단과 즉시 공유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1. 장기요양기관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급여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주요 변경사항

- (목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심사 기준) 기존 시설·인력 기준 外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처분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종사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 (급여 제공이력) 설치·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 등
  -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심사 절차) 시군구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

	종전	변경 ('19.12.12~)
처리 기간	7일	30일
심사 기준	시설·인력 기준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심사 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나. 업무 절차(처리기한 30일 이내)

-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page 328,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page 342 이하를 참조

지정신청 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서류 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현 지 확 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전 산 입 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금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 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등기우송/FAX)
사 후 관 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 사전 상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목적으로 시설 설치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 관련 법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상담 요청할 수 있음
- 지정 신청 접수
  - 행복e음 기관 등록 화면에서 "지정심사" 항목으로 등록 필수
    - '지정여부' 입력 값
      (기존) 지정, 미지정 → (변경) 지정, 지정심사, 지정거부
- 지정 심사 자료 요청(→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
  - 급여제공 이력, 현지조사 이력, 평가 이력,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등 건강보험공단이 제공 가능한 심사 자료 문서 회신 요청(공문 발송)*
    * 지정 심사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등을 공문에 명시하여 회신 요청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서 조회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다. 서류 심사

- (시설 및 인력 기준) 기존 시설 · 인력 기준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
- (급여제공 이력) 지정 신청자의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 고려
  - 급여제공 이력은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가능
  - 현지조사 이력*을 통해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휴폐업 반복이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인지 판단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현지조사 이력 전국조회' 기능 및 건보공단 지정 심사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양도·양수를 통해 행정처분이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인에게는 처분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지조사 이력' 확인을 통해 양도인의 행정제재 회피 여부 판단 및 양수인의 소명 기회 제공 등 필요

- 평가 이력(건보공단 지정 심사자료)을 통해 평가 거부 목적의 휴폐업 여부 판단

● (행정처분 내용)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 가능성 심사

- (기관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행정처분 전국조회' 기능을 통해 지정 신청자의 기관 처분 이력 확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정 신청자의 이전 운영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전국조회 및 처분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종사자 행정처분) 요양보호사 자격취소(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장기요양요원의 급여 제공제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 등 종사자 행정처분은 건보공단 '지정 심사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연도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서」도 반드시 확인*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여부, 상환계획의 적절성(시설회계 납부 불가) 등 확인

● (지자체별 심사 기준) 그 외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라. 현지실사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

마.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지정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 임기, 위원장 선출, 제척 · 회피 사유, 심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게 운영규칙 마련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지정등록 관련 업무

장기요양기관 지정등록 시설 전산 입력항목

① 민원등록 화면 신설 : 신청서류 접수시 먼저 민원으로 입력해야 함

※사통망 4단계로 전산업무 처리(민원조회 → 신청서등록 → 현장확인내역 입력 → 지정서 출력)

② 재가서비스유형별로 급여제공(휴업) 시작·종료일을 각각 입력관리

※새올시스템에서는 기관기호별 서비스 변경처리 일자만 관리

③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새올시스템 화면을 불러와 입력

④ 인력현황 직종유형에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직원(코드 21)」 추가

⑤ 시설현황에 「요양보호사실」 추가, 용어변경(거실 → 생활실, 작업 및 일상 동작훈련실 → 물리(작업)치료실)

⑥ 근무형태 종류에서 "계약직" 삭제

공단 장기요양센터와 자료 전산연계로 업무편의 제고

-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산 조회 가능
- 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시·군·구의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관리 내역을 전산조회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등록 등의 입력 및 관리화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매뉴얼」 참조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 ·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에서 전환한 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의 설치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별도의 지정행위를 거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

●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시설 설치신고 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필요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붙임2〉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3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나. 지정요건 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지정제 강화에 따른 대표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결정(상세한 내용은 이전 목차 중 '지정제 주요 변경사항' 참조)

가) 시설기준

구분 /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공용가능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화장실 등 공동거실내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1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에는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및 수납공간을 갖출 것

구분 / 시설별	침실	공동거실						옥외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 주방	식사 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 전담실	○	○	○	○	○	○	○	△

(○: 필수, △: 권장)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 설치도 가능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1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외부 활동이 가능한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갖출 것

나)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 시설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계약)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5명당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5.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6.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7.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8. 간호(조무)사 및 조리원은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 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9.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2.5 = 6.8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2.5 = 6.4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10.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대표자(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다만,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 기관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

- 증빙방법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당해 기관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라)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상담제 운영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17.10~)
- 내용 : 신고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붙임1]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청서 수리

- 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류 수리 또는 반려

라.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전체 11자리로 구성되며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 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제 호' 는 지정서 발급된 순서 기재

마. 전산입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바.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붙임1〉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시설) 차입금 사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시설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 상환년도, 금액, 재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시설 설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또는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차입한 사항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2. 차입금 상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2〉

1.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시설

OOO센터(고용주)와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__년 _월 _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작성함.
   [예] 근로계약기간: 20__년 _월 _일부터 20__년 _월 _일까지 _년으로 한다.
2. 근무장소 : _____
3. 업무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에 명시된 범위로 정한다.
4.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⑴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형태
   ⑵ 근무시간 : 주5일,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① 주간근무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② 야간근무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③ 3교대
   · 1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 2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 3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④ 기타 복합형태
   · ___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 ___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5. 근무일 및 휴일 : 매주 __일 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노동절(5/1)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명절,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함.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개시일은 다음과 같음.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2년 1월 1일

6. 임금

(1) 월급 : _____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_____원 (□ 주휴 별도지급 여부 □ 주휴 포함)

② 기타급여 : □ 있음 □ 없음

· ____수당 _____원, ____수당 _____원, ____수당 _____원

③ 초과/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3) 임금지급일 : 매월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4) 임금지급방법 : □ 직접지급 □ 계좌이체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

(1)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이에 따른다.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임의 가입대상임.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함.

(2)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며, 그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3) 고용주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9. 퇴직금

(1)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3)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권리와 의무

(1)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 오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거절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노동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고용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법령에 명시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노동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⑷ 노동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고용주의 요구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과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편성한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다만, 사전 요청에 의해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⑸ 노동자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 그 가족의 학대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한다.

⑹ 고용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라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⑺ 고용주와 노동자는 월1회 회의 또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⑻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두기 1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한다. 후임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⑼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⑽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한다.

11.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노동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12.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재가(단시간)

OOO센터(고용주)와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__년 _월 _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작성함.
   [예] 근로계약기간: 20__년 _월 _일부터 20__년 _월 _일까지 _년으로 한다.
2. 근무장소 : _____
3. 업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에 명시된 급여 범위로 정한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외 행위는 부당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 급여 외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예: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 명절음식 장만, 반려동물 산책 등)

4.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구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무시간	__시간	__시간	__시간	__시간	__시간
시업	__시 __분	__시 __분	__시 __분	__시 __분	__시 __분
종업	__시 __분	__시 __분	__시 __분	__시 __분	__시 __분

5. 휴일 : 주휴일 매주 __요일, 노동절(5/1)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명절,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함.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개시일은 다음과 같음.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022년 1월 1일

6. 임금

⑴ 월급 : _____원

⑵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시급 : _____원

② 주휴수당 : _____원

③ 기타급여 : □ 있음 □ 없음

· ____수당 _____원, ____수당 _____원, ____수당 _____원

④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⑶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⑷ 임금지급방법 : □ 직접지급 □ 계좌이체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

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이에 따른다.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임의 가입대상임.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함.

⑵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며, 그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9. 퇴직금

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⑶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권리와 의무

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 오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거절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⑵ 노동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고용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법령에 명시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⑶ 노동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⑷ 노동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고용주의 요구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과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편성한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다만, 사전 요청에 의해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⑸ 노동자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 그 가족의 학대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한다.

⑹ 고용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라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⑺ 고용주와 노동자는 월1회 회의 또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⑻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두기 15일 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한다. 후임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⑼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⑽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한다.

11.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노동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12.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2. 표준급여명세서

[예시] 급여명세서 양식 -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포함

2020년 O월분 급여명세서

사번 이름

부서 직위

근무시간	63	가산수당 반영시간(H)	야간	휴일	목욕	가족요양
시급기준	9,500		-	-	-	-

지 급 내 역	지 급 액	공 제 내 역	공 제 액
기본급여	474,390	국민연금	22,500
주휴수당	79,065	건강보험	22,730
연차수당	22,807	장기요양	830
식대보조	22,238	고용보험	4,730
포괄수당	-	소득세	-
		주민세	-
야간수당	-	배상보험	-
휴일수당	-		
목욕수당	-	기관부담(근속)	-
가족요양수당	-	기타정산(2)	-
특별장려금	120,960		
장기근속수당	-		
업무촉진수당	31,500		
포상/격려금	-		
기타 정산금	-		
지급총액	750,960	공제총액	50,790
과세급여	728,722	실지급액	700,170

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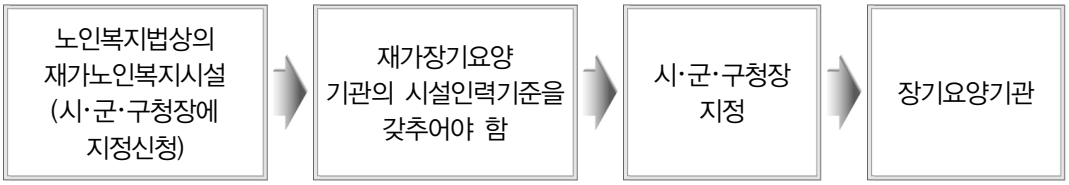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5」에 따라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구비하여야 함('12.2.5일부터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구 분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시 경보장비
**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 장비

1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공통 (일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또한,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전 페이지 〈붙임2〉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고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설치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의 장,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사항 확인 준수

-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 시설 명칭 표기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재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단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병기

예) ○ ○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임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

- 사회복지법인 시설 또는 의료기관(방문간호의 경우)에 병설하여 시설 및 설비를 공용하는 경우 별도로 건축물 용도를 심사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방문간호사업소를 병설하고 사무실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함

나) 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

〔방문요양〕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	○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명	1명 (수급자15명이상)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배치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 요양보호사 상근인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 모든 종사자의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시 인력기준 심사요령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단, 초과인력수가 방문요양의 최소배치인력(농어촌 5명, 그 외 지역 15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수만큼 추가 채용하여야 하며, 추가 채용하는 인력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평균초과인력 산정방법

1) 산정기준
① 설치하고자 하는 달의 전전전월말, 전전월말, 전월말의 현원과 요양보호사 인력수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② 3개월치 초과인력 산정
{(전전전월 요양보호사수+전전월 요양보호사수+전월 요양보호사수)
- (전전전월 현원+전전월 현원+전월 현원)÷법정배치기준}÷3한 값을 반올림
2) 예시 : {(23+25+25)-(56+58+58)÷2.5}÷3 = 1.4
→ 1명 인정(14명 추가 채용, 농어촌의 경우 4명 추가 채용)

〔방문목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 이동목욕차량은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함
- 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을 구비하여도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이동용목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	–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간호	○	○	○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 병용 가능,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 이상(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관리책임자가 됨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주·야간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시설기준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 이용정원 5인 기준의 생활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사례) 이용정원이 9명일 경우 면적산정

*① 기준면적(90㎡ 이상) + ② 추가면적(생활실):26.40㎡(4명×6.6㎡) 이상
*③ 합계 : 116.40㎡(90㎡+26.40㎡) 이상
① (기준면적)90㎡안에 5명에 대한 생활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경우 별도의 1인당 생활실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② (추가 생활실 면적) 5인을 초과한 4명에 대하여 1인당 6.6㎡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4명×6.6㎡=26.40㎡) 이상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야간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동서비스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법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 인력기준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수급자 10인미만	1명	-	1명 이상			-	1명	–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각각 겸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이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하며,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시설기준

- 연면적 90㎡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이상의 침실 공간 추가확보)
-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은 6.6㎡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 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4명당 1명 배치하여야 함
-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	-	1명	-
수급자 10인미만	1명	-	1명	-		-	1명	-

1. 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사 기본 1명 배치
2.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 ÷ 4"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다) 병용, 겸직규정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 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겸직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단,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항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 요양보호사 상호 겸직 가능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 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수급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 (조무)사는 수급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 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병용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생활실, 침실 제외)
●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생활실, 침실 제외)

3) 신고서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신고서류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 신고서류 반려

4)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
- 송부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2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대표자

●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 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 기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가.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신고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 조회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2)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서비스 유형별 시설·인력 기준

- 위 "1.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

나)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8.7.1 이전 자격유예자는 자격유예기간('10.6.30)이 종료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요양보호사로 근무 불가

3)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방법

□ - □□□□□ - □□□□□
기관종류(1) 시·군·구코드(5) 접수일련번호(5)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 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제 호' 는 지정서 발급된 순서 기재
- 전산입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 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5)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송부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

3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 법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5호
  - 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③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④ 장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증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

나.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 신청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요건 심사

①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②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1) 시설의 규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득·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 다음 ①부터 ③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세정 및 소독(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제외)등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 56.2㎡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③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배수시설 및 소독·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④ 복지용구 보관·관리·대여 공간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사무실을 포함한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사무실 공동활용 불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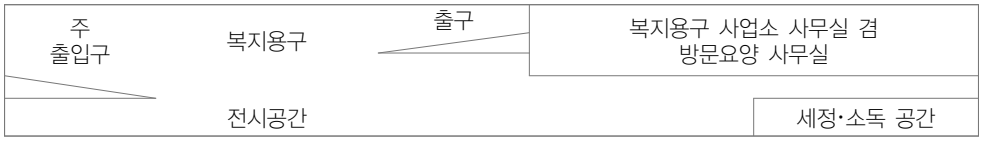

* 시설·설비 공동활용 가능한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 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는 운영 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업이고 그 운영 형태도 다르며,
    - 필요한 설비·비품·집기의 차별성 및 요양보호사를 위한 탈의공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방문요양 및 복지용구 사업을 위한 사무공간은 반드시 별도로 확보해야 할 것

    * 방문요양 사무실의 분리는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홀딩도어(일명 자바라)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함
  - 각 사무실의 주출입구를 반드시 분리하여 확보할 필요는 없음

    * 사업소 전체의 주 출입구를 두고, 내부에 복지용구 사무실과 방문요양 사무실의 출구를 두는 것으로 족하며,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직접 외부와 통하는 주출입구를 확보할 필요는 없음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사업과 운영 가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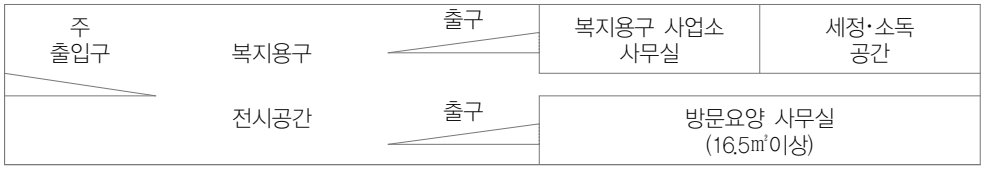

3)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관리책임자	사무원
1명	필요한 인원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라. 사업소 지정시 판단기준 등

1) 전시 공간 면적

-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서 23.1㎡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복지용구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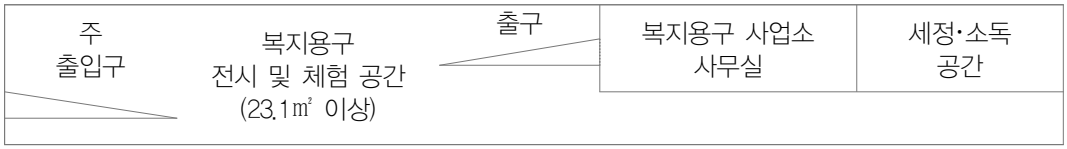

-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예 : 건강보조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 보호 밴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복지용구와 뒤섞여 전시되는 등 같은 공간에 진열 금지
  다만, 체험공간은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과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사용 공간면적도 전시공간 기준면적(23.1㎡)에 포함됨

【복지용구 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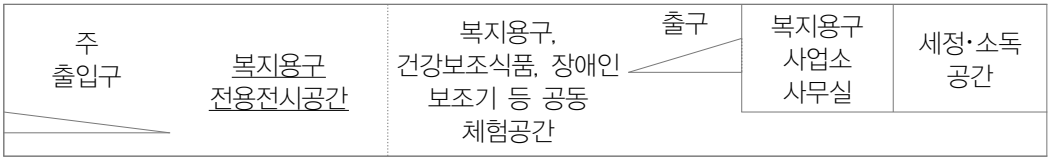

※ 다만,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공간과 기타 물품 전시 공간이 상기 점선과 같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배회감지기(GPS)는 소독형태와 관계없이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 처리 인정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자체소독은 사업소내에서 세정·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의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세정·소독의 위탁에 관한 고려사항

- 복지용구 사업소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으로 추진
- 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세정·소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를 증빙할 의무는 복지용구 사업소에 있음(시·군·구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1)소독 수탁업체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배송 등의 문제가 우려되거나 2)실질적인 소독 수탁이 어려울 정도로 설비를 확충하지 못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반면 소독 수탁업체가
  1) 복지용구 제조업체로서 생산공장에서 효과적인 소독 수행이 가능한 경우,
  2) 소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예 : 서비스업(업태), 소독업(종목))을 필하고 적정 규모의 소독 공간·설비를 확보하는 등 소독을 대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에 준하는 수준의 공동 소독 설비를 마련하여 복수의 복지용구 사업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서 소독 수탁 설비가 완비되고 배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 수탁업체가 복지용구 사업소와 원거리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2곳 이상의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복지용구 소독관리지침' 에 따라 소독실시대장과 소독필증을 갖추어 소독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할 것

마. 건축물의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의료기기 판매업에 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부분 기존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소의 건축물 용도에 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지정 가능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

4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20.2월 기준)

1) 구입 품목(10종)

품목명(고시제품 수)	사용 가능 햇수
① 이동변기 (25)	5년
② 목욕의자 (14)	5년
③ 성인용보행기 (47)	5년
④ 안전손잡이 (71)	-
⑤ 미끄럼방지용품 (85)	-
⑥ 간이변기 (9)	-
⑦ 지팡이 (46)	2년
⑧ 욕창예방방석 (14)	3년
⑨ 자세변환용구 (15)	-
⑩ 요실금팬티 (28)	-

2) 대여 품목(7종)

품목명(고시제품 수)	사용 가능 햇수
① 수동휠체어 (67)	5년
② 전동침대 (78)	10년
③ 수동침대 (13)	10년
④ 이동욕조 (5)	5년
⑤ 목욕리프트 (1)	3년
⑥ 경사로 (6)	8년
⑦ 배회감지기 (9)	5년

3) 구입 또는 대여 품목(1종)

품목명(고시제품 수)	사용 가능 햇수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36)	3년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다. 복지용구 제품 : 564개 제품('20.2월 기준)

라. 복지용구 제품 선정 절차

①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연1회 이상)
- 신청자격
  - 신청 제품에 대한 해당규격을 충족한 제품
  -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 제품
- 공고내용 : 제출서류(시험성적서 및 발급기관),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② 신청 제품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 산정 및 협의 진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제품 및 가격 결정(120일 이내)

③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고시(보건복지부장관

부 록 복지용구 소독 매뉴얼

부록 1.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부록 2. 소독 일반적 원칙
부록 3. 복지용구 품목별, 재료별 소독 매뉴얼
부록 4. 세척 용구 관리

부록 1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목 적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여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 시행 가능한 세정*·소독**방법을 정하고 소독실시사항을 기록·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함

* 세정이란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 소독이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형태인 복지용구 대여물품을 대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감염성 병원체를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 이하로 제거하고(안전성), 쾌적하고 청결한 내·외관 상태를 유지하기 (청결성) 위한 일련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소독실시 형태

※ 신규 개설자의 경우는 소독시설기준 등 미충족시 가급적 위탁으로 추진

- 복지용구사업소
  - 자체소독
    - 복지용구사업소 내에서 사업소 소유의 대여제품을 세정·소독하고,
    -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독위탁자와 소독수탁자가
      ①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 ②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 ③ 하나의 세정·소독공간을 공동 활용
  - 소독대행
    - 복지용구사업소 내에서 타사업소 소유의 대여제품을 세정·소독하는 경우
- 소독전문업체 위탁
  - 타 복지용구사업소 소유의 대여제품을 세정·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아닌 업체

소독실시 형태별 요건

<table>
<tr><th rowspan="2">소독실시 형태</th><th colspan="2">복지용구사업소</th><th rowspan="2">소독전문업체에 위탁</th></tr>
<tr><th>자체소독</th><th>소독대행</th></tr>
<tr><td rowspan="2">비치서류</td><td>• 소독일지(별지 1호 서식)
• 소독필증 … 2매 교수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 (월 1회이상 기록)</td><td>•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 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 … 3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위탁요청 사업소 1부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 (월 1회이상 기록)</td><td rowspan="2">•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 (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 … 3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위탁의뢰 사업소 1부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월 1회이상 기록)</td></tr>
<tr><td colspan="2">• 자체소독 및 소독대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함</td></tr>
<tr><td>요건</td><td colspan="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설비기준 충족
– 세정·소독이 가능한 소독설비 및 공간을 갖출 것
–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등</td><t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td></tr>
<tr><td>근거법령</td><td colspan="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td><t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td></tr>
<tr><td>공통사항</td><td colspan="3">• 각종 서식(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기록지 3년 보관
• 소독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야 함(제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 가능)
• 간단한 소독제품(경사로, 배회감지기 등)일지라도 반드시 소독필증을 구비하고 사용자에게 제공
• 관계공무원 또는 공단의 요구 시 해당 서류 제시</td></tr>
<tr><td>주의사항</td><td colspan="3">•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자사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소독일지' 에 기록·보관(3년)</td></tr>
</table>

소독대상 복지용구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경사로
⑧ 배회감지기

소독관리

1) 작업장 관리 및 면적 기준

① 소독 공간은 최소면적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으로 구분 되어야 하며, 소독처리된 용구의 보관실은 청정구역으로 관리하고 미 처리 용구의 보관실은 오염구역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소독공간이 구비되지 않거나 소독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출장소독은 복지용구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소독 작업장은 소독 실시 전 환경소독제를 이용한 청소를 실시한다.

③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한 방향이 되도록 하며,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사이에는 칸막이나 벽을 설치하여 소독 전·후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칸막이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닿아있어야 하며, 구역 구분이 명확해야 함

④ 소독 시 발생하는 유해 오·폐수 및 폐기물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세정, 소독, 건조,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은 56.2m^2이상이여야 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세정, 소독공정 : 24.80m^2, 살균 및 건조 : 8.26m^2, 조립 및 수리, 포장 : 11.57m^2, 보관실 : 11.57m^2)

※ 배회감지기(GPS형)는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처리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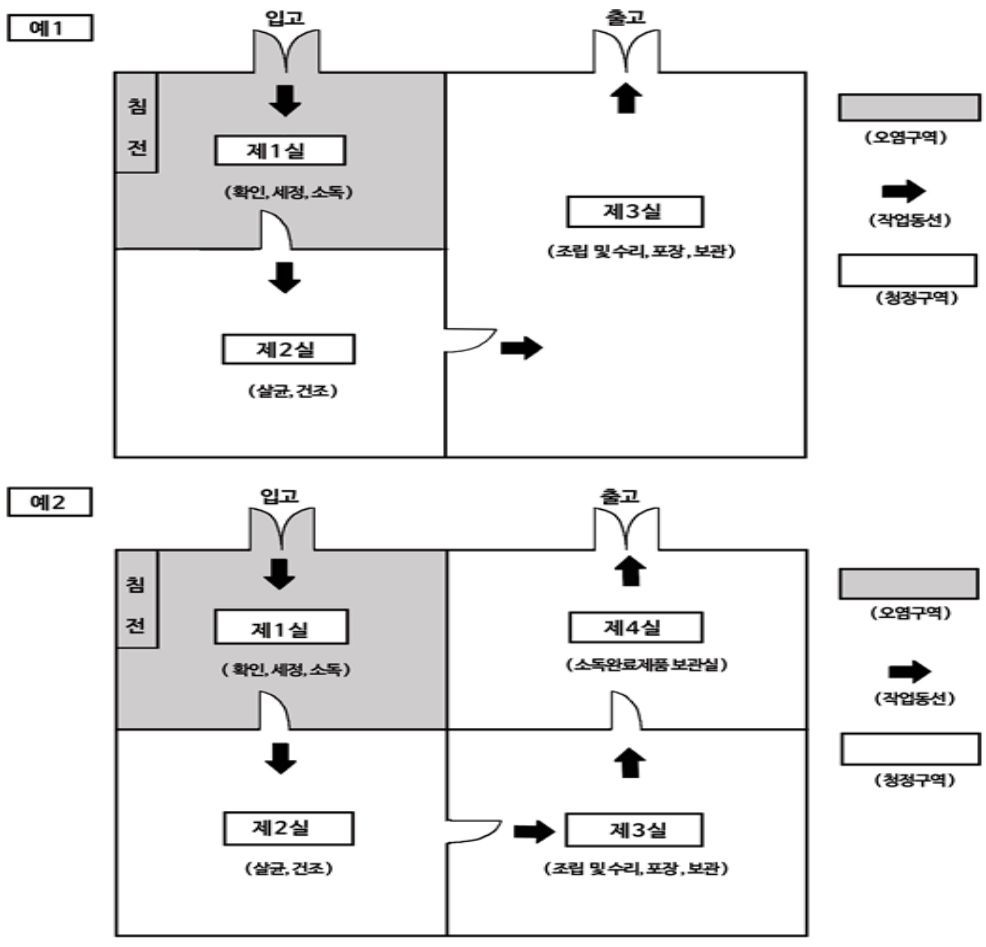

구분	복지용구 소독시설 및 공간 기준
기준 1	복지용구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별된 별도의 소독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 2	세정, 소독, 건조 등을 위한 수도시설을 포함한 관련설비, 장비 및 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 3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입고실).
기준 4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보관실). (※단, 세정 및 소독 후의 보관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하다.)
기준 5	소독작업은 항상 정해진 작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소독 전의 물품 취급하는 구역인 오염구역과 소독 후의 물품을 취급하는 구역인 청정구역으로 구별한다.
기준 6	복지용구 소독을 위한 최소 소독공간 면적은 총 17평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 예1	작업장 예2	세부항목	면적	소계
제1실	제1실	입고대기(침대1 외)	4.96㎡	24.79㎡ 이상
		세척(세정)	4.96㎡	
		침전조	3.31㎡	
		소독(소독 및 수작업)	8.26㎡	
		공정대기(작업자 동선)	3.31㎡	
제2실	제2실	건조실	4.96㎡	8.26㎡ 이상
		공정대기(작업자 동선)	3.31㎡	
제3실	제3실	유지보수 및 포장	6.61㎡	11.57㎡이상
		부품보관대	1.65㎡	
		공정대기(작업자 동선)	3.31㎡	
	제4실	보관(침대2 외)	8.26㎡	11.57㎡ 이상
		공정대기(작업자 동선)	3.31㎡	
합 계		–	–	56.2㎡이상

2) 소독업무 관리

① 소독업무 전반에 대해 복지용구 소독지침 및 소독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사업소 실정에 적합하도록 표준화작업서 등 매뉴얼을 정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정과 소독작업에서 제품을 분리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품목별 제품 분리부분

품목		제품 분리 부분
전동·수동침대		①몸체 ②매트리스(커버, 내용물) ③기타부품(사이드레일, 식판, 머리&발판 외)
수동휠체어		①몸체 ②시트류 ③바퀴(전용세척기 사용 시 미분리)
욕창예방매트리스		①매트 ②펌프
이동욕조		①매트 ②펌프 ③기타품목
목욕리프트		①본체 ②배터리 ③기타품목
경사로		①본체
배회 감지기	매트형	①매트 ②수신부
	GPS형	①밴드(목걸이 줄) ②단말기 본체

③ 세정, 소독이 완료된 제품은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건조단계를 거쳐야 한다.

④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는 건조과정을 거친 후 비닐시트 등으로 전체를 밀폐하여 재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⑤ 세정 및 소독이 완료된 제품은 적절한 수리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소독제 관리

① 제품의 확인

- 상품명
- 성분의 분류
-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 화학적 구성 비율에 의한 성분

② 적절한 허가가 이루어진 약제인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특성을 확인한다.

- 희석방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 설명서에 있는 대로 희석하였을 때 황색포도상구균 및 일반 미생물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 다음과 같은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최소 효과 농도
  ⓑ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종류와 양
  ⓒ 사용 방법
  ⓓ 소독제의 유효기간(밀봉시/개봉시)
- 기구에 사용하였을 때 부식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④ 실제 사용 조건에서 살균력과 농도

- 단백질 물질에 의한 불활성화 되는지를 확인한다.
- 기타 비누, 세척제, 화학제등에 의해 불활성화 되는지를 확인한다.

⑤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⑥ 소독제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희석한 소독제의 경우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⑧ 소독제의 관리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기록(월 1회 이상)하여야 한다.

4) 직원 관리

① 소독을 실시하는 직원은 마스크, 보안경, 장갑, 앞치마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소독을 실시하는 직원은 소독 전 후 입과 손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③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업무 담당자를 두어 작업을 실시한다. 각 구역의 전업 직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구역이나 청정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소독 실시 직원의 마스크, 보안경, 장갑, 앞치마 등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④ 복지용구 소독업무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소독장비 관리

① 소독 시 사용하는 도구는 소독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독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지를 작성한다.

6) 운반관리

① 반환용구 회수 시 분명하게 혈액이나 고름 등이 남아있는 경우는 비닐시트 등으로 전체를 가리거나 밀폐하여 다른 용구와 구별하여 수송 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복지용구와 납품할 미사용 복지용구를 함께 수송 할 경우 반드시 두 용구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하여 서로를 구별한 후에 수송해야 한다.

③ 운반차량은 복지용구를 수송하는 날은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독된 복지용구의 택배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되 밀폐 포장 등 재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구별 소독 지침

1) 품목별 소독구분

① 복지용구 품목은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② 품목별 소독구분

소독구분	정 의	해당품목	해당소독제의 효능
높은 수준	• 노출시간이 충분하면 세균 아포까지 줄일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소독능력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석탄산수 • 크레졸 • 승홍수
중간 수준	• 결핵균, 진균을 불활성화 시키지만, 세균 아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없음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알코올 • 염소제 • 요오드계
낮은 수준	• 세균, 바이러스, 일부 진균을 죽이지만, 결핵균이나 세균 아포 등과 같이 내성이 있는 미생물을 죽이지 못함	• 경사로 • 배회감지기	• 양성계면활성제

2) 소독방법

① 회수된 복지용구는 구성 부분별로 분리 후 물과 비누 등을 이용하여 세정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 방법	작용 조건 및 사용법	
고온 살균법	100℃에서 30분 120℃에서 20분	
열탕 소독법	끓는 물 100℃이상에서 2분 이상	
증기 소독법	80℃이상에서 10분	
약품 소독 (세정, 분무/ ULV)	양성계면 활성제	10% 혹은 15%용액을 1%로 희석된 것에 10분 이상 침적 시키거나 탈지면, 거즈에 묻혀 닦아냄
	알코올	75~80%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탈지면, 거즈에 묻혀 닦아냄
	염소제	0.5% 이하 수용액에서 10분 이상 침적
	요오드계 약품 (기구소독제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유효 요오드량 44-175ppm 의 수용액에서 10분 이상 침적
	석탄산수(페놀)	3% 수용액에 10분 이상 침적
	크레졸 비누액	3% 크레졸 비누액에 10분 이상 침적
	승홍수(수은)	0.1~0.5% 수용액 사용
가스 소독	이온가스, 포르말린 등	
오존수 소독	오존수에 침전, 세정	

※ 제시된 방법에 따른 소독은 제조사의 용법에 따르되, 그 밖의 소독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시된 소독방법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소독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독실시여부 점검

1) 점검시기 : 정기점검(연 1회), 수시점검

① 정기점검 시기 및 방법 : 연중 1회 실시(붙임 : 점검표 및 보고서식)

② 보고 : 점검 완료 후 복지부에 보고

2) 점검자 : 합동점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의 복지용구 사업담당자(필요시 소독관리 담당자)는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실시 및 행정조치(경고 또는 시정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점검대상 : 자체소독사업소,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전문업체

4) 점검내용 : 세정·소독 과정 및 비치 약품, 소독일지 및 대장, 간이기구 검사(표면오염도 측정), 시료검사

① 현장점검 : 소독과정 점검 및 소독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복지용구사업소(자체소독, 소독대행) : 세정·소독공간, 구비서류, 사용중인 약제 등
- 전문소독업체 : 세정·소독공간, 구비서류, 사용중인 약제 등

② 1차 검사(공통) : 소독이 완료된 복지용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간이기구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오염도를 확인함

③ 2차 검사 : 1차 검사 결과 미생물이 일정 수 이상 검출되는 경우 시료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최소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 점검은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필요시 병행 실시

- 자체소독사업소,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간이기구 및 시료검사 시 최소 안전기준

1) 본 지침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료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다음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일반세균 : 10CFU이하/25㎠

② 황색포도상구균 : 미검출

※ 간이기구 측정치 : 400RLU이하/100㎠ 〈시료검사 의뢰 가능〉

※ 기준치 초과시 행정처분 등 세부판단은 감염관리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 시료검사 및 간이기구 측정은 소독이 완료된 제품중 가장 최근의 제품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측정한다.

[간이기구 측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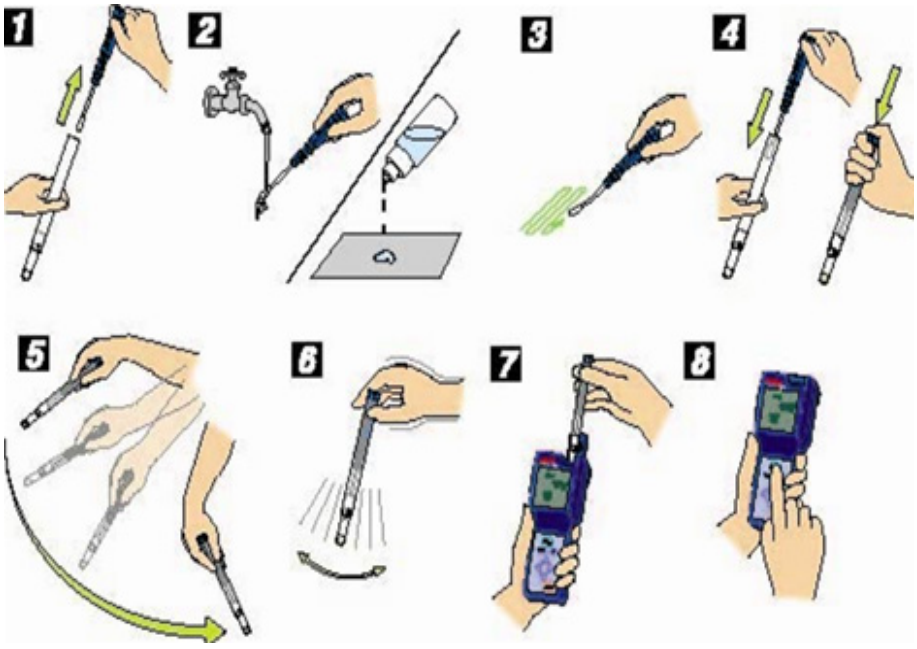

복지용구사업소 교육

1) 대상 : 복지용구사업소(자체소독, 소독대행) 및 소독전문업체

* 복지용구사업소는 위탁소독사업소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신규 복지용구사업소는 반드시 참석

2) 시기 : 연 1회 이상

3) 내용

① 계약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② 지침 안내 및 고시·제도 개선 및 제도 변경사항 등

③ 소독시설 및 소독방법·소독효과 검증법

[별지 1호 서식]

소 독 일 지 (예시)

일련번호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바코드	소독일자	소독내용(자체소독)				위탁내용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소독작업원 성명	소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1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1. 4	ULV	에탄올 (75%)	10L	이영순 박영희			
2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2. 4					○○ 환경	1238200001	'10-123
3										
4										
5										
6										
7										
:										

소독원 기록	작업일자	작업시간	성명		전화번호	서명
	2011.1.4	09:00~10:30	이영순		000-000-0000	이영순
	2011.1.9	09:00~10:30	박영희		000-000-0000	박영희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내용까지 기록하고 위탁소독인 경우 위탁내역만 기록함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원 기록(위탁소독은 해당없음)

[별지 2호 서식]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예시)

소독업체명 :

일련번호	소독일자	소독대상		소독실시 내용			위탁요청 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1	2010. 6. 4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분무	4급암모니움 화합물	70~90% 희석액 10L	○○의료기	30100001111	'11-123
2									
3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대여제품 소독 시에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별지 3호 서식]

제 호		소독필증 (소독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인)				

---------- ✂ ---------

제 호		소독필증 (수급자)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인)				

---------- ✂ ---------

제 호		소독필증 (위탁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소 독 일 지 (예시)

일련번호	소독일자	차량번호	차량소속	소독실시 내용			소독작업자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성명	전화번호
1	2011. 1.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L		
2	2011. 2.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L		
3								
:								

【첨부】

복지용구 소독사업소 점검표

○ 소독사업소명(소독전문업체) :
○ 장기요양기관 기호(복지용구사업소)/사업자 등록번호(소독전문업체) :
○ 주소 :
○ 소독유형 : □ 자체소독 □ 자체+위탁소독 □ 소독전문업체

구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소독 관련 점검	위탁 계약서	1) 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유무	□ 유 □ 무 □ 해당없음
	면적	2) 소독공간 면적 확보 여부(56.2㎡이상) 및 세정·소독시설	□ 적합 □ 부적합
	작업장 관리 (A)	3) 청정구역 및 오염 구역의 칸막이나 벽으로 구분 여부 4)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인지?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기록 점검 (B)	5) 소독일지〈자체소독, 소독대행사업소〉 6)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소독대행사업소, 소독전문업체〉 7) 차량소독일지〈공통〉 8) 소독필증〈공통〉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소독 과정 점검 (C)	9) 소독전·후의 물품이 섞이거나 교차되지 않는지? 10) 제품 분리 후 소독 11) 적정 소독액 및 희석비율, 유효기간 준수 12) 오염제품과 소독제품 구분 13) 소독제품 밀폐 상태 유지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직원 관리 (D)	14) 소독 시 보호장구 착용 준수	□ 적합 □ 부적합
	표면 오염도 측정 (E)	15)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치 준수	□ 적합 □ 부적합
	시료 검사 (F)	16) 지적사항 미 수용 등으로 별도 일정으로 간이검사(ATP) 또는 시료검사 필요	□ 간이검사(ATP) 필요 □ 시료검사 필요
건의사항 등			

붙임) 부적합내역서 1부.

년 월 일

점검자 시·군·구 직위 : 성명 : (인)
공 단 직위 : 성명 : (인)

【붙임】

복지용구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부적합 내역

○ 소독사업소명(자체소독, 소독대행, 소독전문업체) :

번호	확인사항	부적합 내역	비고

복지용구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보고

(　　시·군·구)

(　월　일)

총 사업소	점검 사업소	점검결과		미점검 사업소수
		조치내용 (경고, 영업정지 기관수 등)	애로사항 등 의견	

부록 2 소독 일반적 원칙

복지용구 소독과정 및 절차

○ 소독절차 순서는 크게 ①입고 및 점검, ②제품 분류, ③세정 및 소독, ④유지보수, ⑤포장 및 정리, ⑥출하로 구분된다. 제품의 특성과 소독업체의 환경이 고려된 방법을 채택하여 소독품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운반차량 소독은 소독처리된 복지용구를 운반하는 날에 실시하며, 택배이용 시에는 폴리백과 에어캡으로 포장 후 깨끗한 박스를 사용하여 발송한다.

구 분		비 고
제품 입고 및 점검	입고실	제품을 수거하거나 입고시 차량내부를 소독한다. * 소독의뢰자와 소독회사는 제품 소독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부가서비스를 협의 후 진행한다. * 소독의뢰관리표(붙임)를 작성하여 각각 1부식 나누어 가진다.
제품 분류	입고·세정실	먼지제거 및 품목별로 지침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세정 및 소독	세정실	세정 : 중성세제로 세척 및 알코올을 사용하여 닦는다. * 품목에 따라 모터 및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는 부위는 물 사용을 금지한다. * 세정을 위한 복장을 구비한다.
	소독실	소독 : 품목별로 소독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 재료별로 적정한 소독시약을 선택한다.
	건조실	건조 : 품목별로 소독 지침에 따라 건조를 실시한다. * 에어건 및 에어블로어 등을 사용하여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 환기팬이 있는 건조실에서 완전히 건조한다.
유지보수	수리실	녹 발생, 부품의 파손여부, 작동시험 등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 유지보수 시 완료 후 유지보수 부분을 다시 알코올로 닦는다.
포장 및 보관	포장실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관·출고실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하한다. * 소독필증 외 서류작성을 한다.
출하	–	출하 시 운반차량은 필히 소독을 한다. * 차량소독일지를 작성한다(의무사항).

붙 임

확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소독의뢰 관리표(예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의뢰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품명/제품명		바코드	

[제품상태 확인]

외관상태	□양호 □훰 □기타	[제품 사진]
도색상태	□양호 □찍힘 □스크래치	
부품파손	□양호 □기타	
작동여부	□양호 □모터 □기타	
특기사항		

[소독 의뢰내역]

구 분	작 업 내 용	비고
예비 세정	□먼지제거 □알코올 □기타	
세 정	□중성세제 □증기세정 □휠체어세정 □매트리스세정	
소 독	□알코올 □증기소독 □락스 □기타	
오존 소독	□오존가스	
부품 교체	□모터 □컨트롤러 □바퀴 □식판 □사이드레일 □기타	
기타 사항		

복지용구 소독 기기 및 장비

○ 복지용구 소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소독 기기 및 장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 명		용 도
	매트리스 세척 및 소독기	– 세척 – 탈수 – 건조 – 스팀 살균
	매트리스 세정기	– 세척 – 탈수
	휠체어 세정기	– 휠체어 자동 세척
	크린키퍼	– 매트리스 건조 – 스팀 살균
	오존소독기	– O_3 가스 발생 – 오존소독

품 명		용 도
	고압세척기	– 침대 부속품 – 휠체어 프레임, 바퀴 – 고온·고압 세척
	에어 블로어	– 침대 부속품 – 휠체어 프레임, 바퀴 – 에어 분사, 물기 제거
	세탁기	– 매트리스 커버 세척 – 휠체어 방석 탈수
	비닐포장기	– 소독완료품 밀폐 포장
	침전조	– 폴리에스테르 매트리스 – 락스 희석액 침전, 소독
	오존수 발생기	– 침대부속품 – 오존수 소독

품 명		용 도
	알코올 분무기	– 소독용 알코올 광범위 분사용 (알코올 소독시 사용)
	건조실	– 열풍기 + 환기팬 – 침대 부속품 – 휠체어 본체 건조

소독제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

구분	내용
소독제의 제품 설명서 확인	• 최우선적으로 소독제의 제품 설명서를 확인한다. • 상품명, 성분계통,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주요 성분의 구성 비율과 같은 제품 내용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독제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 최적의 사용농도, 살균제로 사용할 때의 적정 희석농도, 사용기간, 부식성 유무와 같은 사용 방법을 확인한다. • 임상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중성세제나 단백질에 의한 저해 작용 정도,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품목별, 재료별 소독제의 올바른 선택	• 소독제의 제품 설명서대로 올바른 적용 대상에 적용하도록 하고 이때 대상뿐만 아니라, 농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만 원하는 소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소독 전에 철저한 세척을 통해 소독의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하며, 소독 후에는 철저한 헹굼을 통해 소독제 성분을 제거하여 남은 소독제로 인한 인체조직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방지한다. • 소독된 기구가 다음 사용 시까지 재오염되지 않도록 건조 및 보관을 주의한다.
한번 사용한 소독액 재사용 금지	• 일반적으로 한번 사용한 소독액은 유기물로 비활성화 되어 소독효과가 떨어지므로 재사용은 하지 않도록 한다. • 희석 후 유효기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1주일 후에는 폐기한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독력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이 필요하다.
소독약병 및 용기의 오염 유의	• 특히 소독제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용기의 오염으로 인해 유행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독제와 용기와의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제품 세척시 일반적 주의사항

- 사용한 기구나 물품은 세정 및 소독하기에 앞서 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 기구에 묻은 오물은 미생물의 성장 배지가 되며, 기구의 상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세척한다.

- 사용한 기구를 즉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젖은 수건으로 덮고 플라스틱 백 안에 넣어 건조되지 않게 한다.

- 생리식염수는 기구를 부식시키므로 물이나 효소용액을 사용한다.

- 수돗물은 무기질로 인해 기계에 얼룩이나 흔적을 남기므로 좋지 않다.

- 일반적으로 열은 세제와 오염물질간의 반응을 증가시켜 오염의 분리를 가속화 시킨다. 지방질이나 무기물에 오염된 기구는 온수로, 단백질이나 당에 오염된 기구는 냉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세척기가 없는 경우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 후 소독한다.
  이때 직원들은 방수처리된 앞치마와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부록 3 복지용구 품목별, 재료별 소독 매뉴얼

품목별 소독처리과정 절차

○ 전동·수동 침대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몸체 ②매트리스(커버 및 내용물) ③기타부품(사이드레일, 식판. 머리 & 발판 외)

↓

2-1. 몸체 세척 및 소독
   1) 세정 또는 세척공정 : 세척실에서 세척기로 고온 세척한다.
   2) 1차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2-2. 매트리스 세척 및 소독
   1) 1차 세척 : 세척실에서 세척기로 고온 세척한다.
   2) 1차 소독 : 고온, 스팀, 침전, 자외선, 오존 외 소독공정 하나를 거친다.
   3)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4) 커버의 경우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건조실에서 건조한다.

↓

2-3. 기타부품 세척 및 소독
   1) 1차 세척 : 물,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2차 세척 : 고온세척기 등으로 세척한다.
   3)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4) 식판, 머리&발판이 목재 또는 중간밀도섬유판(MDF) 재질의 경우 물세척 보다는 메디락스 약품을 이용하여 닦는다.

↓

3. 유지보수
   1) 제품의 녹 발생이나 부품의 파손 등을 유지 및 보수한다.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수동휠체어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몸체 ②시트류 ③바퀴(전용세척기 사용 시 미분리)

↓

2. 몸체 세척 및 소독
   1)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고압세척기 등으로 전체를 세척한다.

↓

3. 건조
   1) 몸체 및 바퀴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2) 시트류 : 세탁기에서 탈수 후 건조한다.

↓

4. 소독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5. 유지보수
   1) 제품의 녹 발생이나 부품의 파손 등을 유지 및 보수한다.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6.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7.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매트 ②펌프 ③기타품목

↓

2. 매트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펌프 및 기타품목 소독 :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

4. 유지보수

1) 셀 부분 누수 시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펌프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5.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6.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목욕리프트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본체 ②배터리 ③기타품목

↓

2. 본체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기타품목 소독 :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

4. 유지보수

1) 배터리 결합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배터리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5.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6.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경사로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경사로

↓

2. 경사로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유지보수

   1) 경사면에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배회감지기(매트형)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2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매트 ②수신부

↓

2. 매트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유지보수

1)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수신부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배회감지기(GPS형)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2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밴드(목걸이 줄) ②단말기 본체

↓

2-1. 밴드(목걸이 줄)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재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건조기기 및 건조실에서 건조한다.

2-2. 단발기 본체 소독

1) 소독 :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3. 유지보수

1)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수신부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재질별 소독방법

○ 복지용구 소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독시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독시약	설명
알콜 (Alcohol)	• 구강 및 직장 체온계의 소독, 알콜솜의 경우 약병의 고무마개부위 와 같은 작은 표면의 소독, 청진기 , 인공호흡기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된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 양성계면활성제, 세척 및 낮은 수준의 소독에 이용된다. • 기구, 벽, 마루 등의 소독에 주로 이용되며, 수술복, 환자의류, 주사기, 고무제품, 거즈, 금속성 기구류 등은 0.5~1% 희석액에 15~20분간 침적시키고, 식기, 수저, 행주 ,수건 등 조리기구 소독은 0.5~1% 희석액에 약 5분 이상 침적 또는 세정한다.
염소&염소계 화합물 (Chlorine and chorine compunds)	• 치아염소산나트륨,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의 소독에는 500ppm으로 10분간 소독, 세탁물, 치과기기, 욕조 소독에 사용한다.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 중탄산염으로 중화시켜 pH 7.5~8.5까지 희석시킨 2% 액상 글루타알데하이드의 경우 오염정도에 따라 침적하여 소독을 한다. • 소독 후 완전 건조 필수(플라스틱) 사항이다.
락스 1:100	• 침대 매트리스 물 100 락스 1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측면 난간	스틸, 스테인리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측면 프레임	스틸, 스테인리스		
매트리스 지지판	스틸, 스테인리스		
매트리스	나일론 캔버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 소독용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매트리스 커버	나일론, 폴리우레탄		
바퀴	생고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조작 손잡이 (조작버튼)	플라스틱		
머리판, 발판	플라스틱, 목재		

❍ 수동휠체어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핸드림	알루미늄, 스틸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손잡이	플라스틱		
등받이	나일론 캔버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 소독용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좌석(시트)	나일론 캔버스		
팔걸이	우레탄, 나일론, 캔버스로 싼 것		
대차륜	생고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자재륜	생고무		
브레이크	플라스틱		
다리받침	플라스틱		
발받침	플라스틱, 스틸,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리스		

❍ 욕창예방매트리스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셀	나일론 폴리우레탄 2중층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매트리스 커버	나일론 폴리우레탄		
모터부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이동욕조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튜브형	나일론, 폴리우레탄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프레임형	플라스틱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모터부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목욕리프트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프레임	스틸, 스테인리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벨트, 시트	나일론 폴리우레탄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모터부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경사로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경사로	스틸, 스테인리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알콜(Alcohol)

○ 배회감지기(매트형)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센서커버	나일론 폴리우레탄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고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알콜(Alcohol)
송수신기 매트리스 지지판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배회감지기(GPS형)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밴드 (목걸이 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중성세재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은 후, 깨끗한 물로 씻는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단말기 본체	플라스틱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알콜(Alcohol)

부록 4 세척 용구 관리

작업 중 세척 용구 관리

○ 복지용구의 확실한 세정·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세탁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용 후에 확실한 세정·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오염정도와 사용약제마다 사용구분이 필요하다.

구분	작업방법		사용약제
스펀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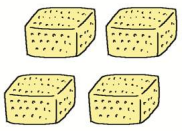 ① 사용약제가 다를 경우 전용 스펀지를 각각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 염소계소독약 • 타노르와 계면활성소와의 혼합소독약
	침전	② 계면활성소계 소독약 100배 희석액의 물통에 스폰지를 수시 투입해 잘 담그어 둔다.	•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천걸레 (타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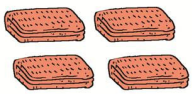 ① 사용약제가 다를 경우 각 약제마다 전용 천을 사용한다.	•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 염소계소독약 • 타노르와 계면활성소와의 혼합소독약
	침전	② 음이온계면활성제계 사용이 끝난 천을 깊게 담그어 둔다.	• 음이온계면활성제 • 선정제

작업 종료 후 세척 용구 관리

○ 스펀지

작업방법			사용용품 · 약제
세정		① 스펀지를 물에 적신다. ※주의사항 : 여기서 충분히 세정을 하지 않으면, 살균효과를 얻을 수 없다.	중성세제
		② 흐르는 물에 잘 헹군다.	
소독 · 건조		③ 100~200ppm의 염소계소독제에 약 10분간 침체한다.	활성계소독약
		④ 흐르는 물에 잘 헹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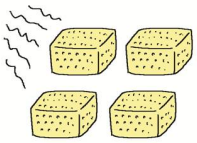	⑤ 완전히 건조시킨다.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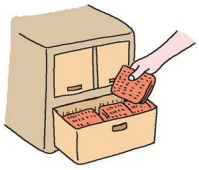	⑥ 위생적인 장소에 잘 보관한다.	

○ 천걸레(타올)

작업방법		사용용품 · 약제
세정 · 소독 · 건조	① 세탁기조용량에 세정제와 함께 세탁기에 투입한다.	세탁기
	② 세탁기조용량에 염소계소독약을 적정한 양을 넣는다. ※주의사항 : 색무늬 있는 수건의 경우에도 염소계소독약이 아닌, 감표계 표백제를 사용한다.	
	③ 통상 세탁을 한다.	
	④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보관	⑤ 위생적인 장소에 잘 보관한다.	

○ 마루걸레

작업방법			사용용품 · 약제
세정 · 소독 · 건조		① 계면활성세제 소독약 110배 희석제 안에서 자주 세탁한다.	물통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② 흐르는 물로 잘 헹군다.	
		③ 100~200ppm의 염소계소독제에 약 10분간 침제한다.	염소계 소독약
		④ 잘 헹구고 물기를 짜내고 건조시킨다.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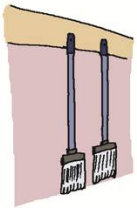	⑤ 위생적인 장소에 잘 보관한다.	

Ⅱ. 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행정처분 등

Ⅱ-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2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사항

가. 변경지정 사항

-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나. 변경신고 사항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3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절차

가. 변경지정 신청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19호의2)

※ 인력변경 신고는 제외하며, 절차는 하단 참조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인력(변경)현황(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2 인력(변경)현황 서식

※ 신규인력이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인력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자격증명서 및 자격유예 증빙서류 첨부

• 시설(변경)현황(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 시설(변경)현황 서식

●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청대상 : 입사, 퇴사, 휴직, 복직, 근무자격 변경 등 인력변경 사항

-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청

- 신청절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로 접속하여 시스템 사용 등록

※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및 동영상 참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상에서 인력변경사항 입력

※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필요 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거나 시·군·구 팩스로 전달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의료면허증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시·군·구에서는 신청 내역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나. 변경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구비서류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입소·이용 정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시) →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다. 시·군·구 행정사항

● 변경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변경내역 처리요령
-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다. 변경기준의 항목에 따라 변경처리하거나 지정취소처리 후 신규 지정

●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서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변경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는 수리
-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의 변경지정 신청 또는 신고서류는 반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재사항의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지정서를 회수하고 신규 지정서를 재출력하여 신고인에게 송부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처리 내용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입력하면 매일 저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송부
  •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등)와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다. 변경기준

구 분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
기관설립주체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대표자변경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변경신고로 처리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
	• 지자체 설치·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위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로 처리	
법인등록번호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 변경신고 처리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종류, 급여종류 및 형태, 인력현황, 시설현황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변경신고와 병행하여야 함 • 재가서비스의 경우 급여 종류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지정(급여의 종류)로 처리(기관 전체를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	
입소정원	•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의 행정절차	• 변경신고로 처리 - 공동명의로 설치신고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동명의자 일부만 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신규로 설치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요양보험운영과-332, 2010.1.29. 회신문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은 법인대표자로 체크하고 변경내역에는 공동명의 변경으로 표기, '변경전' 및 '변경후'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	

Ⅱ-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2 신고 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위 시설이 휴지·폐지될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반드시 병행 처리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설치신고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폐업일과 설치신고수리일을 동일일로 처리

  - 사망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대표자 부재 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폐업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행정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인 등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하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대표자 사망에도 상속인이 폐업신고 등을 해태하거나 시설·인력 등 변경에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3 신고절차

가. 신고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 구비서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사본
    -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나. 시·군·구 행정사항

- 신고접수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폐업·휴업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노인복지법 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휴지·폐업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고접수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접수가능
- 폐업·휴업 처리요령
  -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다. 처리방법의 항목에 따라 폐업·휴업처리
- 신고서 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 자료이관, 수급자 보호조치 등 휴폐업전 조치할 사항이 완료되면 휴·폐업 예정일 이전에도 신고수리 가능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 장기요양 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가 없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다. 처리방법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시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전원조치 등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분석하여 입소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
- 시·군·구 담당자는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이 예정된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자 전원조치 검토 또는 시행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관(행정처분 중이 아닌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 ○○재가노인센터 대표는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동생 명의로 동일 건물에 △△재가노인센터를 설립하여 수급자를 이전 후 계속 영업(→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해당 시설의 장)이 제출한 수급자 조치계획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고인이 제출한 수급자 조치 계획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제2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과 송부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송부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고서, 구비서류 등)

- 장기요양 제공자료 이관계획서 검토
  - 신고인이 제출한 제공자료 이관계획서에 이관예정일자를 확인하여 미이관시 과태료 부과됨과 서류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함을 안내
- 접수증 확인
  - 공단으로 제공자료 이관 후 수령한 접수증을 제출할 경우 폐업·휴업 처리

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철회 권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수급자 조치계획서와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철회 권고 사유를 자세히 첨부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송부)
- 폐업·휴업 철회 권고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권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함
-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 신고인이 철회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장은 신고서 구비서류인 수급자 조치 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서비스 이용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급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Ⅱ-3.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자료이관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8조의2

2 이관 대상 및 절차

가. 이관 대상 기관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 단,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 직접 보관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은 자료이관 대상
- 이관 제외기관
  - 폐업사유가 "기관기호 통합"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이 아님
    - 양도양수 계약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경우(체납포함)
    - 동일부지, 동일대표자가 동일조건으로 기관기호 통합인 경우
    - 기관종류가 동일한 경우(1→1, 2→2, 3→3)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관
  - 일부 급여종별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구 분	자료이관 대상기관	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
이관사유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기관 •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기관	• 장기요양기관 자진휴업

나. 이관 대상 자료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③ 방문간호지시서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
⑤ ②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다. 이관 시기 :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라.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이관 절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휴폐업시 보존기간 중인 이관하여야 할 자료를 휴업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의 공단이관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이관
  * 이관하여야 할 자료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간호 지시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부본(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휴업신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관련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 (공단) 기관의 자료이관 신청 → 접수증 교부, 기관의 자체보관 신청 → 자체보관 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
  * 공단으로 이관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 불가

3 기타 사항

- 휴·폐업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자료이관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6조제1항·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4호	50	100	200

- 관할 시·군·구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시 동 지침의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이관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Ⅱ-4.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2 행정처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9. 6. 12.〉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 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 제1항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법 제37조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의5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6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 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8호	지정취소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 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 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원

3 행정처분절차

가. 처분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의 권한임

나. 시·군·구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여 입소자 등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
- 행정처분 결과는 행정처분 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1. 장기요양기관

연번	문서 번호	통보 일자	장기요양 기관기호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청문 일자	처분 일자	처분내용				행정 처분 기간	처분 근거 법률
						성명	주민번호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금액	과징금 부과금액	위반사실 등 공표		

작성 요령

1. 대 표 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처분내용 : 행정처분란에는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중 하나를 적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란에는 해당 부과 금액을 원단위로 적으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한 경우에는 'ㅇ'으로 적습니다.
3. 처분근거 : 처분의 근거 법률을 적습니다.

● 결과 송부

-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탭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통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번	문서 번호	통보 일자	장기요양 기관기호	기관명	소재지	처분대상 종사자		위반 사항	청문일 자	처분일자	처분내용		행정처분 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제한 기간)	처분근거 법률
						성명	주민등록 번호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금액		

작성 요령

1.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속한 장기요양기관기호(기관명)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처분대상 종사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행정처분 통보서

연번	기관명 (급여종류①)	기관 기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위반내용②	행정처분 내용③	처분기간④	조사주체⑤ (지방자치제, 보건복지부)

〈작성요령〉

○ 급여종류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제공하는 급여 모두 기재

○ 위반내용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해당 조항) 기재
– 예: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행정처분내용③: 경고, 업무정지 0일 또는 0개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 예: 업무정지 15일

○ 처분기간④: 업무정지의 경우 기재
– 예: (2018.1.1.~2018.11.15.)

○ 조사주체⑤: 보건복지부, 시·군·구(조사명령서 발급주체를 기준)
시·군·구(단독): 지자체 단독(공단배제)으로 현지 지도·점검 등을 한 경우
시·군·구(공단의뢰): 공단이 시·군·구에 의뢰하여 시·군·구에서 조사한 경우

※ (협조사항)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확정된 행정처분 내용은 행복e음 전산에 반드시 입력하여 향후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① 기관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입력*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산등록 매뉴얼」 참조(사회보장정보원)
②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입력
③ 장기요양요원 급여제공제한 : 시군구 → 시도 취합 →건보공단 통보

Ⅱ-5.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항

2 재지정 금지기간 기준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금지

Ⅱ-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 개요

-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유효기간) 6년*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갱신 절차

> ① 기관 안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서류심사 → ④ 현장실사 → ⑤ 종합심사 → ⑥ 결과 통보 → ⑦ 구제 절차 안내

① (기관 안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안내

② (신청서류 접수)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③ (서류심사)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④ (현장실사) 평가하위,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발생기관 선별 실사

⑤ (종합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하여 최종 심사

⑥ (결과 통보)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⑦ (구제절차)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 지정취소 대상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

□ 갱신 심사

- (심사 기준)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
  - (지정 요건)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
  - (평가 결과) 지정 유효기간(6년) 동안 실시된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 (재무회계 규칙) 예결산서 보고 · 승인, 인건비 지출비율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확인

□ 사후 관리

- 갱신 미신청 기관 처리 방안
  - 휴폐업 시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및 공단자료이관 등 절차 진행

별첨-1 |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1. 목적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 및 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

2. 회계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

3. 세입처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입처리기준은 별첨-2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감산이 발생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처리 한다.
  -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은 전년도에 수령한 후원금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처리 하여 후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은 전년도에 수령한 식재료비수입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처리 하여 식재료비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직원식재료비수입"은 직원들이 시설에서 식사하는 경우 수령하여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년 전체 세입내역은 세입결산서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입소자(이용자)부담금수입	11	입소(이용)비용수입	112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13	식재료비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과목						명세
관		항		목		
				115	이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이용·미용비
				116	기타비급여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612	가산금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813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과목						명세
관		항		목		
				814	기타전입금(후원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4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과목						명세
관		항		목		
11	적립금 및 준비금(특별회계)	11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	11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112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4. 세출처리 및 정산방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출처리 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비율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지출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지출은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에 비지정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의거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출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정산보고 한다.
- 1년 전체 세출내역은 세출결산서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	각종 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과목						명세
관		항		목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및 각 종 세금공과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 경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4	의료비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施藥代)
				315	장의비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
		33	○○사업비	331	프로그램 사업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12	기타전출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과목						명세
관		항		목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및 준비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911	운영충당 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과목						명세
관		항		목		
10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101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및 환경개선준비금 지출	1011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1111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10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1112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 장기요양기관 차량유지비 사용관련 준수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운영
-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가능,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불가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1번, 2번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 재가장기요양기관(3번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

- 차량유지비는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지출가능

- 치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관

<서식예시>

차 량 운 행 일지(예시)

※ 동 서식은 참고서식으로 반드시 이 서식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님

해당연도	년도(1월 ~ 12월)	담당	검토	결재
차 량 명	(년식)			
차량번호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험가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보험사:)			
전년도 말 주행총거리: km				

날짜 (월/일)	차량 운행자	운행시간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목적	주행거리기록(KM)			확인/ 서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출발시	도착시	이동거리	

● 장기요양기관 퇴직금의 관리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퇴직급여관리규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마련해야함

〈참고〉

(1) 퇴직금 제도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함
– 대표자 또는 대표자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님

(2)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대표 또는 시설장은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근거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 후원금 운영관리(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전용계좌: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 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전용 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출금지항목 엄수: 자산취득비중 토지 건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업무추진비중 후원금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출범위: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되,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범위에서 지급가능
- 비지정 후원금 직/간접비 사용범위 엄수 :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 기준으로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의 50%)
- 잉여금이월 방식: 해당연도 후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연도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항목으로 수입처리.
- 결과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결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 하여야 함.(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공지한다.)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원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각종수당 ○ 일용잡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타 운영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의료비 ○ 장의비		
	○○사업비	○ 프로그램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 기타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6.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관리

-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시설 설치·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안됨)
- 금융기관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차입금은 금융기관외에서 차입한 것을 말한다.
- 원금상환금은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상환금으로 지출 할 수 없다.
- 이자상환금은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하는 이자를 지출할 수 있다.
-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하여야 함.
-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사무비' 및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만 해당)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액 및 이자,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1〉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시설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차입금액 및 연간이자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 상환년도, 금액, 재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 목적을 위해 차입한 사항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입관련 증빙 서류(대출계약서 등) 사본 1부 2. 차입금 상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7.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

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사회복지법인)전출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 잉여금의 법인 전출
  -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 회계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

8. 기타 전출금 관리

가. 적용 대상

- 장기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외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

나.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 기타전출금 지출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다.

9.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

※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운영충당금의 적립

- ‘운영충당적립금’의 정의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
-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
  -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 예)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 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하여 적립
-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 운영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

나.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정의
  -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
  -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립
  -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

다.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

- 세출처리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시 반드시 확인
-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함
  * 지침 개정 이전에 적립금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보험상품'으로 기 운용한 경우에는 환경개선준비금 등의 사유 발생 시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 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명으로 변경하여야 함
  * 다만, 상품의 특성상 예금주(수익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할 경우, 예금주(수익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또는 설치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모두 시설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하고자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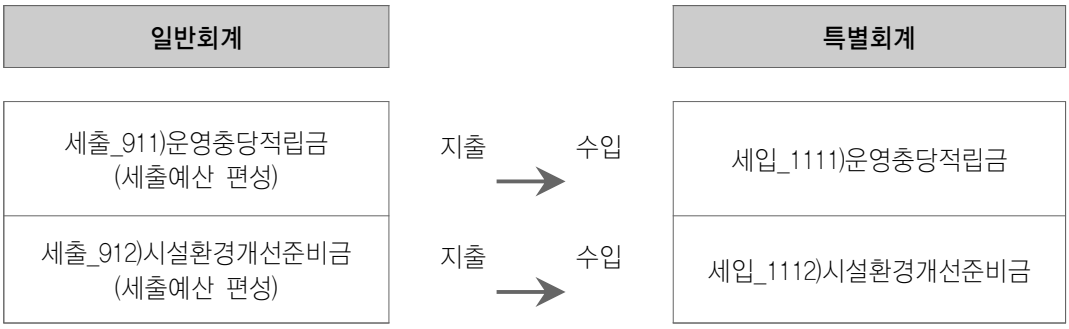

☞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한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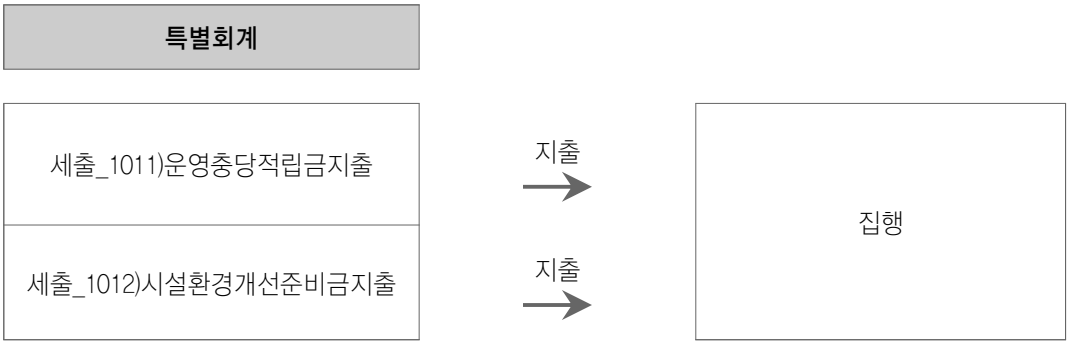

10. 예산서 제출 관리

가. 세입예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예상되는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서에 계상 되어 있어야 한다.
- 세입예산서의 합계금액과 세출예산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세입예산서에는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액과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 수입등 1년간 세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세입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에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결산후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세입예산서에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등으로 구분하여 세입 처리 되어야 한다.

나. 세출예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예상되는 모든 지출은 세출결산서에 계상 되어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서의 합계금액은 세입예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서에서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비율 이상으로 편성 되어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에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서에서 세출예산과목구분 관/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다. 예산서 제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총칙과 임직원보수일람표,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과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이 나면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결산서 제출 관리

가. 세입결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수입은 세입결산서에 세입처리 되어있어야 한다.
- 세입결산서에서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급여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세입결산서에서의 본인부담금수입과 1년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수입이 일치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결산서 자동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상의 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하여야 함

- 세입결산서에서의 식재료비수입과 1년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식재료비 수입액이 일치 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결산후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전년도이월금으로 세입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1년간 수입된 모든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결산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세출결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지출은 세출결산서에 세출처리 되어있어야 한다.
- 세출결산서에서의 1년간 지출한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 세출결산서에서의 인건비지출은 직접인건비과 간접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직원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세출결산서에서 결산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1년간 지출된 모든 금액과 세출결산서의 결산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 결산서 제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이 나면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2. 인건비 지출 관리

가. 인건비 지출

- 1년간의 인건비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지출할 때 적정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4.9
주야간보호		48.1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 인건비 지출비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		

나. 인건비 인정 범위

-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등 제수당과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한 세전 (공제전) 금액
- 퇴직금: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의 1/12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적립한 퇴직적립금과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포함한다.
  - 퇴직연금가입시 1년미만 퇴사자로 인한 환급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금 비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보험부담금 :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3.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 관리

- 병설기관 운영등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공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세입예산기준에 따른 비율별로 각 병설기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예) 요양원과 병설기관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세입예산이 요양원이 8억이고 병설기관이 2억일 경우 공동사용 운영경비는 요양원이 80%, 병설기관이 20%로 분배하여야 한다.

별첨 -2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1. 목적

-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처리를 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성격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비용, 가산금 수입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수입(목 611), 가산금 수입(목 612)에 세목을 신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세목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수입, 가산금 수입 정보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을 참조

〈세목 신설 예시〉

관		항		목		세목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6111	A
						6112	B
				612	가산금 수입	6122	C
						6123	D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 구성 및 회계입력 값 예시〉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②+③+④)		②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③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비율 미반영 금액		④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가산금	급여비용	가산금	급여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 금
		A입력	C입력	B 입력	D입력		

3. 주의 사항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가산금 포함) 정보는 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비용(가산금 포함) 변동사항을 반영함
- 장기요양기관은 착오청구로 인해 급여비용 또는 가산금 수입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보고 시 반드시 회계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급여비용 변동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직전 회계연도 기간의 급여비용 변동사항은 익년 2월말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

별첨 - 3 |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가.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나.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상급침실 이용료

가)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

예) 일반실 이용 비용이 월 150만원(수가+기타 비급여 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비용이 월 170만원인 경우 그 차액(20만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함

나)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함

*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함

3)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나. 세부 항목별 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수급자의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 부담)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6) 기타 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나)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음

3. 기타사항

-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함

별첨-4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관련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12.3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신규신청 [ ]갱신 [ ] 변경 [ ]해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구분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송부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table>
<tr><td rowspan="2">수급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장기요양
등급</td><td colspan="2"></td><td>장기요양
인정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9">급여
이용
내용</td><td colspan="2">급여종류</td><td colspan="2">재가급여</td><td>이용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서비스
종류</td><td rowspan="2">서비스
내용</td><td rowspan="2">수가</td><td rowspan="2">횟수/월</td><td rowspan="2">금액/월</td><td colspan="2">이용희망기관</td></tr>
<tr><td>장기요양
기관명</td><td>장기요양
기관기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3">(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복지
용구
이용
내용</td><td rowspan="2">품목명</td><td rowspan="2">제품
코드</td><td colspan="2">급여방식</td><td rowspan="2">대여기간</td><td rowspan="2">금 액</td><td colspan="2">이용희망기관</td></tr>
<tr><td>구입</td><td>대여</td><td>장기요양
기관명</td><td>장기요양
기관기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4">(원)</td><td colspan="2"></td></tr>
</table>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 시·군·구 담당자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이용내용

- 이용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이용기간(이용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받고자하는 내용(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이용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용희망기관 : 서비스를 희망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이용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 장기요양기관 명칭:
- ○ 장기요양기관 기호:
- ○ 장기요양기관 주소:
-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28.〉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② 계약 당시지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계 약 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③ 급여 계약 내용	급여 종류								
	월	일	이용시간	급여 비용	횟수/월	금액/월	요양보호사/간호사		
							성명	자격/면허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	~						
		~	~						
	합계		(원)						

④ 급여 제공 계획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 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자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				

⑤ 복지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 코드	급여방식		계약일(또는 기간)	금액
			구입	대여		
	합계	(원)				

⑥ 비 급 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급여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지급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를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월: 전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적습니다.
- 일: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을 적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줄에 기록합니다.
-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적습니다(예 : 18:00 ~ 20:00).
- 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급여비용으로 적습니다.
- 횟수/월: 해당 급여비용의 월 제공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월: 급여비용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요양보호사/간호사: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사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습니다. 2명이 방문한 경우에는 2명을 모두 적습니다.("수급자와의 관계"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수급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관계를 적습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④ 급여제공계획

- 급여제공계획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목표: 장기요양급여 제공으로 얻고자 하는 종합적인 효과를 적습니다.
- 장기요양 필요영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영역과 급여제공에 필요한 영역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 세부목표: 세부 제공내용으로 얻고자 하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향상 또는 욕구해결 등의 효과를 적습니다.
- 장기요양 필요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필요내용 또는 제공할 급여내용을 적습니다.
- 세부 제공내용: 급여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옷 갈아입기 도움 → 옷 준비와 상의 단추 채우기 도움)
- 횟수/시간: 세부 제공내용의 일간(주간, 월간, 수시 등) 제공 횟수와 급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적습니다.
- 작성자: 급여제공계획 작성자의 직종과 성명을 적습니다.
-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해당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⑤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 제품 코드: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 코드를 적습니다.
- 급여방식: 해당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적습니다.
- 계약일(또는 기간): 구입인 경우 계약일(또는 기간)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금액: 품목별 계약일(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합계: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2. 같은 월에 다른 급여비용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에서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8.〉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사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②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계 약 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③ 급여 계약 내용	급여 종류				
	월	서비스 분류	급여비용	횟수/월	금액/월
	합계		(원)		

④ 급여 제공 계획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 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자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				

⑤ 비 급 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급여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지급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를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월: 전체 계약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서비스 분류: 서비스 제공내용(시간 등)별 급여비용 분류를 적습니다.
-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급여비용으로 적습니다.
- 횟수/월: 급여비용별 월 총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월: 급여비용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④ 급여제공계획(주·야간보호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급여제공계획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목표: 장기요양급여 제공으로 얻고자 하는 종합적인 효과를 적습니다.
- 장기요양 필요영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급어제공에 필요한 영역 및 프로그램 등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 세부목표: 세부 제공내용으로 얻고자 하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향상 또는 욕구해결 등의 효과를 적습니다
- 장기요양 필요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필요내용 또는 제공할 급여내용을 적습니다.
- 세부 제공내용 : 급여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옷 갈아입기 도움 → 옷 준비와 상의 단추 채우기 도움)
- 횟수/시간: 세부 제공내용의 일간(주간, 월간, 수시 등) 제공 횟수와 급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적습니다.
- 작성자: 급여제공계획 작성자의 직종과 성명을 적습니다.
-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해당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⑤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계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2. 같은 월에 다른 급여비용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에서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 · 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첫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table>
<tr><td>① 기관명</td><td colspan="3"></td><td rowspan="6">④ 입소(이용)
정원</td><td colspan="3">급여 종류</td><td colspan="3">정 원</td></tr>
<tr><td rowspan="2">② 장기요양
기관기호</td><td colspan="3" rowspan="2"></td><td colspan="3">총 원</td><td colspan="3">명</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③ 설치신고
날짜</td><td colspan="3" rowspan="2"></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⑤ 직원현황</td><td>총
원</td><td>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td><td colspan="9">자격(면허) 보유자</td><td>기
타</td></tr>
<tr><td>명</td><td></td><td>소계</td><td>사회
복지사</td><td>의사</td><td>간호사</td><td>간호
조무사</td><td>치과
위생사</td><td>요양
보호사</td><td>물리
(작업)
치료사</td><td>영양사</td><td></td></tr>
<tr><td>⑥ 기관규모</td><td>대지
면적</td><td colspan="3">㎡</td><td>건물
면적</td><td colspan="2">㎡</td><td>소유
형태</td><td colspan="5">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td></tr>
<tr><td>⑦ 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12"></td></tr>
</table>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분간호선담 외의 간호사, 7. 방분간호선담 간호조무사, 8. 방분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시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⑩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 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옥외공간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구 분 /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개실 수와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개실	
치매전담실( )	개실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12.〉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시설현황	[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폐업·휴업일자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업·휴업사유		
⑪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⑨ : 폐업하려는 일자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⑩ :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⑪ :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앞쪽)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장기요양기관 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② :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④ :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⑤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⑥ :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앞 쪽)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④: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⑤·⑥: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변경사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 표하고,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번호의 시·군·구코드 조회방법

◈ 시·군·구코드 정의 : 「법정동 코드」를 지칭(행정기관 코드가 아님)

◈ 조회방법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상단의 「2. 법정동」 메뉴 클릭

② 법정동코드 조회화면의 지역선택에서 해당 시·군·구를 선택하면 법정동코드 조회됨

◈ 조회경로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초기화면(→ 2. 법정동 클릭)

② 법정동코드 조회

(예시 : 종로구는 1111000000로 조회되며 이 중 앞 다섯단위(11110)가 시·군·구코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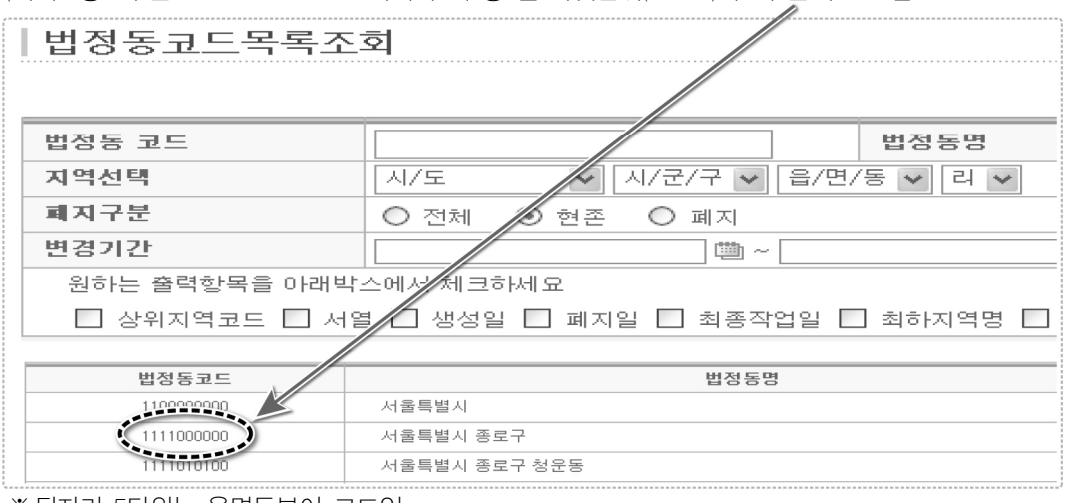

※ 뒷자리 5단위는 읍면동부여 코드임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Ⅰ. 장기요양급여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

1 부담금 납부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1~5등급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광역시도(시·군·구)는 급여비용 소요액을 공단에 납부 → 공단은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2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

가. 부담금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업무를 위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함
  -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비율은 조례로 정함
    ※단, 조례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행 분담방식으로 부담함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 국가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50%, 기타 시도에 대해서는 8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
  - 지자체의 부담금액 중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분담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함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금 납부절차 및 일정

내용	세부 절차	일 정
1. 부담금결정액 통보	• 연간 시·도 부담금 추정소요액 보고(공단 → 복지부) • 연간 시·도 부담금 결정액 통보(복지부 → 공단, 시·도)	-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2. 부담금고지	• 분기별 시·도 부담금 납부고지(공단 → 시·도) • 분기별 시·군·구 부담금 결정·통보 및 내역통보 - 시·군·구 분담금 결정·통보(시·도 → 시·군·구) - 시·군·구 분담내역 통보(시·도 → 공단)	- 매분기 첫 달 5일까지 - 매분기 첫 달 10일까지
3. 부담금 납부	• 시·도 및 시·군·구는 분담금을 매 분기 첫달 20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납부내역을 공단에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공단) • 입금 확인 및 독려, 상황보고(공단 → 복지부)	-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4. 부담금 수납 확인	• 공단 : 분기별 부담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부담금 대조 확인 • 시·도별 부담금 수납, 미납내역 복지부 보고 및 시·도 통보	- 수시 -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5. 급여비용 지급	• 공단 → 장기요양기관 ※시·도별 각각의 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수시
6. 부담금 지급 내역 정산	• 급여비용 지급 및 부담금 지급·정산내역(부담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부담금 잔액 정산) 매분기 복지부 보고 및 시·도 통보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7. 부담금 결산	• 연도말 부담금 지급내역 결산(정산) - 복지부 보고 및 시·도 통보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

지방자치단체 부담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2015.12.30.〉

1호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Chapter 3

치매 및 건강보장

MINISTRY OF
HEALTH & WELFARE

3-1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주요내용 ····· 481
3-2 치매 검진사업 ····· 483
3-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484
3-4 광역치매센터 운영 ····· 485
3-5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 보강사업 · 486
3-6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487
3-7 치매공공후견사업 ····· 488
3-8 노인실명예방사업 ····· 489
3-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501
3-10 노인 건강진단 ····· 511

3-1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2020 치매정책사업안내』참고

1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센터)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 인지기능저하자 대상 선별·진단검사 실시,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경로 관리
- (쉼터) 상담 이후 치매지원 서비스 연계 전까지 치매악화지연(최대 1년까지)을 위한 단기이용시설인 치매단기쉼터 설치
  * 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 제공
- (카페) 치매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

2 설치기준

- (주체/방식) 시군구청장 / 보건소 신증축·리모델링·건물매입·공공기관 임대 등을 통해 별도의 업무수행 공간 확보
- (규모) 센터에는 로비,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프로그램실) 및 가족카페를 반드시 설치하되, 세부규모는 운영모델에 따라 상이

3 운영기준

- (주체/방식) 시군구 보건소장 / 보건소 직영 원칙
- (운영모델) 통합型, 거점型, 방문型, 소규모型 중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선택 가능

〈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예시) 〉

구 분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주요서비스	공통		조기검진, 등록관리, 예방관리, 인식개선 및 홍보			
	쉼터	개소	1~2	2~4	1(소규모)	별도 설치 또는 기존 유관 시설 연계·활용 (노인복지관 등)
		설치	별도설치 외 기존 자원 이용 가능	별도설치 외 기존 자원 이용 가능	지역사회 거점 공간방문 활용 (경로당, 마을회관 등)	
	카페	개소	1	1	1(소규모)	별도 설치 또는 기존 유관 시설 활용
		기능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돌봄부담분석, 정보교환 등			
시설	구성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면적		500㎡	800㎡	350㎡	350㎡
적합지역	규모		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지역, 소도시
	특성	면적	좁음	넓음	넓음	좁음
		노인인구	보통	높음	높음	다양
		접근성	높음(교통 편리)	낮음	낮음	다양
		유관자원	많음	보통	적음	보통

3-2 치매 검진사업

1 목 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

2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검진 방법 등)

3 사업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나. 기본방향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관리
-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치료·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3-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2020 치매정책사업안내』참고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

2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3 사업개요

가.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나. 지원 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 기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라. 지원 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마.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3-4 광역치매센터 운영

자세한 사항은『2020 치매정책사업안내』참고

Ⅰ.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1 추진배경

- 치매관리법 시행('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12.7~)에 따라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 필요
- 급증이 전망되는 지역내 치매 치료·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 절실

2 추진 목표

- 광역 시·도별로 역량있는 병원 등에 광역치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구기능 강화

3 지원 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20조(위임과 위탁)

3-5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자세한 사항은『2020 치매정책사업안내』참고

1 배경 및 목적

-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지원

> ▛ 치매전문병동
> -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동
> -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의 대처에 효율적인 환경의 20~30병상 이상의 격리병동
> -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급성 대처를 위한 일반병실도 갖추어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치매전문병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
> * 실질적인 규모 및 구조는 각 병원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계획·운영
>
> -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간호사 1인 이상이 주축이 되어 병동 운영
> - 치매환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구비

- '11년 12월「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폐지됨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만 기능(단, 기존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적용을 받음)
- 「치매관리법」시행('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3-6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자세한 사항은『2020 치매정책사업안내』참고

1 목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2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조 및 제55조의 4, 제61조의2, 시행규칙 제29조의13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

가. 사업 개요

- 발급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기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보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보급비용 :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3-7 치매공공후견사업

자세한 사항은『2020 치매정책사업안내』참고

1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 수도 2019년 약 79만 명에서 2025년 약 108만명, 2050년 약 30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
- 치매어르신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한계
- 2017년 9월 「치매관리법」 개정으로('18.9.20 시행) 후견 심판 청구절차, 후보자 추천절차, 비용지원 등이 규정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 지원사업 실시 기반이 마련

2 추진 목표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3 지원 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

3-8 노인실명예방사업

1 목 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사업개요

가. 사업연혁

- 사업기간 : '03년 ~ 단년도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100%('03~ 국고보조, '06~국민건강증진기금)

나. 사업 집행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이하 '재단')

-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

다. 사업목표 : 안검진 대상인원 7,900명, 개안수술 7,657안, 저시력예방교육 7,000명 (노인 6,800명, 보건인력 200명)

라.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4 노인 안검진 사업

가.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나.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다. 대상지역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시·도별 안검진 대상인원 및 대상지역 수요 파악·확정 후 시·도 및 재단(070-7542-3714, http://www.kfpb.org)에 통보
- (시·군·구 보건소) 만 60세 이상 검진 희망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시·도에 신청
- (시·도) 노인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아래 양식에 기재하여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 신청(공문 송부)

- 농어촌 지역 우선

※농어촌 지역 관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참고

- 노인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 우선
- 시·도별 신청을 받아 예산상 수용인원에 맞추어 안검진 대상지역 및 안검진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지역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이 많을시 재단 자체 예산으로 충당예정

[노인 안검진 희망지역 선정 양식 (예시-별도 통보)]

시·군·구 (우선순위별)	검진장소	검진기간	검진희망 예상인원	안과의료 기관수	최근 검진 실적(2년간)	담당자 및 연락처

※ 안과취약지역 안내
- 관내 시·군·구에 안과 의료기관이 전혀 없거나 안과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 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 전년도의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검진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나 안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등 우선순위 부여

※ 검진지역이나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신청 받을 수 있음

- (재단) 시·군·구 안검진 희망지역 현지출장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 및 검진 실시
  - 약 55개 시·군·구 지역 안검진 실시 예정(시·군·구당 약 200명, 총 1만명)
  - 재단은 필요시 확정된 검진지역과 검진인원, 검진일정, 검진장소 등 세부 사항을 시·군·구 및 시도와 수시 협의 조정·시행
  - 검진기간은 안과전문의 인력 수급 등의 사정으로 3월~11월말까지로 하되, 안검진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구 및 시도와 긴밀 협조 체계 유지 필요

라. 검진항목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마. 안 검진 방법 및 절차

- 재단 안검진시 1차, 2차 안 검진은 1회 병행 실시 원칙
- 검진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장비 확보, 기타 안검진 소요비용은 재단에서 부담
- 시·군·구(보건소) 또는 재단 검진 일정에 안 검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검진기관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검진 실시 가능

바. 검진 결과 통보 및 조치사항

- 재단은 개안수술대상자를 포함한 안 검진결과를 판정 후 10일 내에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 시·군·구(보건소)는 노인건강검진 내 안검진 결과와 동 사업 내 안 검진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적합한 자의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를 취합하여 재단에 송부(안과 진료소견서 첨부)

사. 실시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수요 파악, 예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재단) 이동 검진팀 운영 및 검진 실시, 상담·홍보·보건교육 등
- (시·도) 시·군·구 지도·감독, 노인 안 검진 시행지역 우선순위 파악 및 복지부에 신청
- (시·군·구 보건소) 안 검진 필요 대상자 조사 후 시·도에 신청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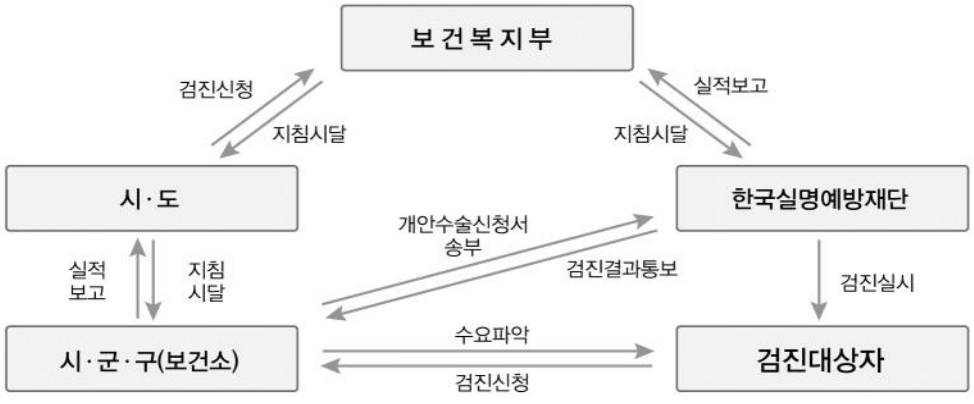

5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뒷면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②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다.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 상급병실 입원료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라.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마. 사업실적보고

-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바. 실시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예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재단) 수술 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 관리, 홍보·보건교육 등
- (시도) 시·군·구 지도·감독
- (시·군·구 보건소) 개안수술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소득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 후 재단으로 적격자의 신청서 송부,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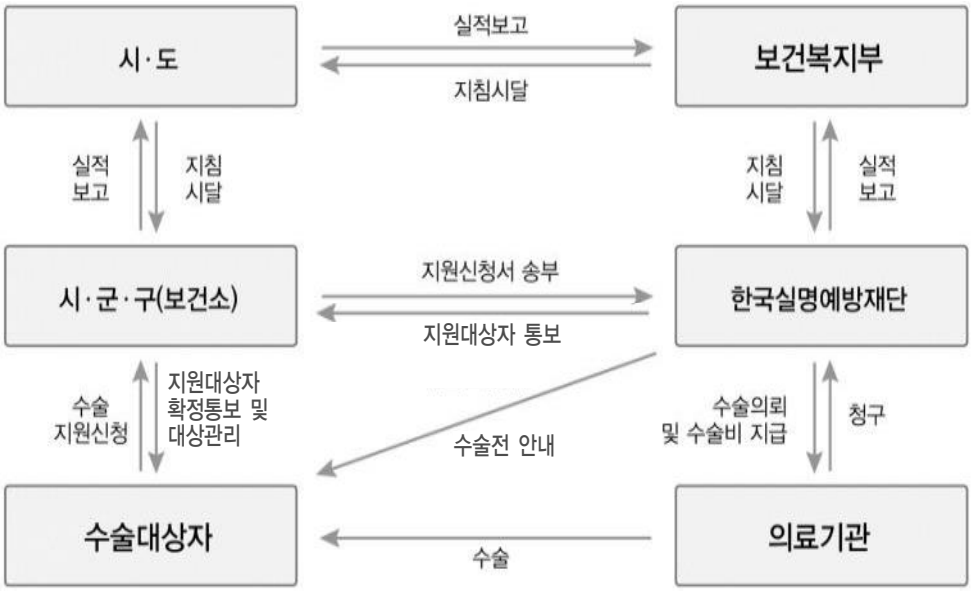

6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재활 사업

가. 사업대상

- 60세 이상 노인 및 보건소 보건인력(방문건강센터 간호사 등) 7,000명, 상담 600건, 재활 30건

나. 보건교육내용

- 노인시설 및 복지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보건교육 실시
  - 교육 1회 당 50명 이상 교육 실시

실시 구분	세부 실시 내용
교육 전 인지도 조사	대상자의 교육 전 눈 건강 및 관리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
안 보건교육	만성질환 및 노인성 눈질환에 대한 증세, 예방법, 관리 방법 등 교육
황반변성 자가검사	망막질환 중 자가검사로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한 황반변성 질환의 자가검사
교육 후 인지도 조사	안 보건교육 후 눈 건강 및 관리 등의 인지도 변화 조사

다. 상담 및 재활 실시 내용

-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망막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을 대상으로 안질환 및 저시력재활 훈련
  - 안질환 상담, 저시력재활훈련안내, 저시력 기구적용 및 훈련
  - 저시력기구대여 및 보급

라. 시행방법

- 기관으로 교육희망접수신청→ 재단
- 교육대상자 중 저시력위험군 선별 후 안질환 상담 및 정밀검진안내
- 저시력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잔존시력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및 기구대여

7 행정사항

가.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군·구(보건소) 및 재단은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무료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
- 시·군·구(보건소) 및 재단에서는 안 검진 및 개안수술 개요, 안질환 유형, 수술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책자발행을 통한 보건교육 실시(VTR, 재단에서 제작·배포)
  -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 보건교육 연중 실시
- 시·군·구(보건소) 및 재단에서는 안 검진 및 수술관련 통계 및 실적을 연도별로 집계하여 향후 노인 안 검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실적 보고 등 추진일정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20. 2.
-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 보고(재단 → 보건복지부) : 분기별 및 연간 보고

[서식 1호]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비 고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	서류 및 자격 확인	⇒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210㎜×297㎜[백상지 80g/㎡]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 :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 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노인실명 예방사업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개인_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개인_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기관의 명칭 : _____ 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3호]

찾아가는 눈 건강 교실(어르신/보건인력)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
기관</td><td>지 역</td><td colspan="2"></td><td>기 관 명</td><td></td></tr>
<tr><td>담 당 자</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신청
내용</td><td>교육희망
일시</td><td>희망
1</td><td>월 일(요일)
(오전, 오후) 시</td><td>희망
2</td><td>월 일(요일)
(오전, 오후) 시</td></tr>
<tr><td colspan="5">※ 타 기관과 중복 될 경우 희망일자에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교육장소</td><td colspan="2" rowspan="2"></td><td>교육장소
담당자/연락처</td><td></td></tr>
<tr><td></td></tr>
<tr><td>교육장소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교육 대상자</td><td colspan="2">(보건인력 / 어르신)</td><td>교 육
예상인원</td><td>(명)</td></tr>
</table>

본 기관에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

소속기관 :

신 청 자 : (인)

※ 신청서를 이메일(lhsoys@naver.com) 또는 팩스(02-719-6329)로 2019. 2. 28. 까지 송부 부탁드리며, 팩스의 경우 누락될 여지가 있어 발송 후 070-7542-3711 또는 02-718-1102으로 확인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관은 강의 가능한 시설(빔 프로젝터)이 있어야 하며, 노인의 경우 50명 이상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귀 중

3-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사업개요

- 2020년 사업비 : 29.9억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26.5억원
  - 교육·홍보 및 관리운영비 : 3.4억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 사업집행 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4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5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신청·지원 절차

- (지원자 -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재단-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 (재단-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3] 다운로드하여 작성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실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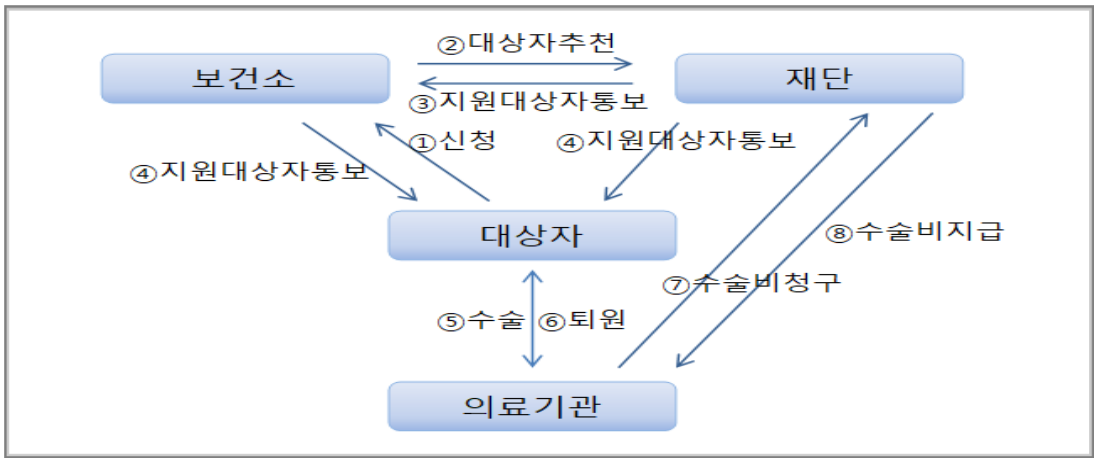

● 수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 진단서(소견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제도안내 및 홍보

-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관할 보건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6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배분

● 사업실적 보고

-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지역별 예산 배분 : 국비 지원액은 시·군·구별로 공정하게 배분

- 인구대비 환자발생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 예산 부족 및 초과 지역 간 재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불용 방지

7 교육 및 홍보

- 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
  - (주체) (재)노인의료나눔재단
  - (내용)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 정보 제공
  - (대상 및 기간) 전국 60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
  - (방법) 각 지역 전문의 강사 및 상담 의료진으로 초빙하여 무료 건강 예방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

    * 필요시 대한노인회(중앙회, 16개 시·도 연합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 전국 노인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문의 회원 및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 사업 홍보
  - 시·도, 시·군·구(보건소) 및 시·군·구(보건소)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 공익광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협조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무릎수술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요건 충족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주요내용]

○ **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게 최소 한달 혹은 두달(1회 연장 시 최대 4개월) 동안 신변 활동과 가사 등을 도와 주는 서비스

○ **선정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조손가정(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75세 이상 고령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노인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실상 독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가능(배우자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이를 확인)
  ※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가구, 조손가정 여부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확인(단, 실제로 홀로 살고 있거나 노인가구, 조손가구 만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가능)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에서 '골절', '관절' ,'척추' 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 **서비스 이용 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식 1호]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비 고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첨부서류	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	서류 및 자격 확인	⇒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210㎜×297㎜[백상지 80g/㎡]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 사회보장정보원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 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노인무릎관절수술 지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기관의 명칭 : _____ 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3호]

접수번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환자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신청보건소명						
수술병원			요양기관번호			
입원일						
퇴원일						
수술일자						
수술부위	좌□ 우□ 양쪽□					
청구정보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담당자		연락처			
수술비청구액 (단위:원)	_____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은 무릎 한 쪽 당 수술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위와 같이 수술비(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귀중

※ 수술비는 퇴원 후 10일 이내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소진시 지원불가)
※ 주 소 : 우)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순화동, 바비엔3차) 701호 노인의료나눔재단
※ 양식다운 : http://www.ok6595.or.kr
※ 상담문의 : Tel : 02-711-6599 Fax: 02-3210-3388 E-mail : 6595ok@daum.net

※ 필수 첨부서류
:①전산 출력된 진료비 계산서 1부 ②통장사본 1부

3-10 노인 건강진단

1 목 적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9조

3 실시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단, 2018년 수검자 중 건강한 자 및 아래 대상자는 제외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업개요

가. 사업의 연혁

- 1981년 노인복지법에 건강진단 근거를 규정,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 실시
- 2005년부터 노인건강진단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나. 실시내용

- 진단수가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를 준용
  (www.nhic.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검진 - 관련규정 - 운영세칙 - 별표 2 검사 항목별 검사비용)
- 검사항목
  - 노인건강진단 항목(참고1)에 의해 실시하되, 보건소장은 노인욕구 및 지역보건사업 특성에 맞는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 조정 가능
  - 위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을 적극 수검하도록 안내(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 성매개감염(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의료기관 검진자는 매독검사만, 보건소 검진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모두 가능. 다만,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소변검체로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만 실시
  - 효과적인 검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치매 조기검진, 안 검진, 암 검진 사업 등 다른 검진사업과 통합실시도 가능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외부의 검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가능
-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성매개감염병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 지원
  - 보건소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무료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연계
    - 필요시 선별검사 후 치매진단검사가 보건소와 협약한 거점병원에서 무료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을 발견 시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치매치료비(연 36만원) 지원

- 보건소는 무료 안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 개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통보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보건소는 건강진단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조 요청사항

-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진단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관할지역 노인들이 희망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노인건강진단 사업전달체계 일원화
  - 보건소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확립하여 타검진과 연계 추진

5 실시계획의 수립

가. 실시방침

- 보건소장은 건강진단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건강진단실시기관장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수검기간 및 수검 장소의 확보, 수검자의 동원 등 검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연중 일정한 날에 1회 내원으로 검진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질환의심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뢰하는 등 노인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나. 실시 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1차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의료기관은 매독검사만을, 보건소는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을 검사 한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할 것

- 1차 건강진단은 참고1의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 채혈 등)에는 생략 가능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다. 검진방법 및 절차

-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지역별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검진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개별검진 허용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은 이동 검진반에 의한 순회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순회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혈액 등 검체의 보관 및 수송에 유의하여 순회검진에 따른 필요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 사전준비 철저
- 검진기관장은 건강진단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인력과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소요시약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검진 실시
- 한 검진기관에서 전 종목을 검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검사, 치매검사 및 방사선촬영·판독은 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산정은 당해 진단종목별 수가로 실시
- 검진절차

  -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은 보건소장과 검진일정을 협의하되, 당해 기관의 1일 검진가능인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검진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별검진 실시희망자는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일정을 확정

•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 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

• 검진기관은 실시구분별 종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수검자 및 보건소장에게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단, 성매개감염병 유질환자의 경우는 개별 수검자도 검진결과를 보건소로 송부하고, 보건소는 수검자에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

- 2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은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진단 대상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 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 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원 시 잔여 2차 검사 실시

• 2차 진단의 종합판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 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 대상자(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 실시

● 추가검진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은 지정된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지정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기간 중 추가검진 실시
- 추가수검자의 검진절차는 일반수검자의 1, 2차 검진절차와 동일하게 실시

라. 판정기준

● 노인건강진단기록부(서식-3)의 1차 건강진단의 종합소견은 1차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2차진단 대상별 중심으로 정상 또는 ○○질병의심란에 ○표 또는 질병명을 기입. 단, 질병이 수개일 때는 가장 비중이 큰 질병순으로 3개까지 기입

● 2차 건강진단 검사종목선정은 1차진단 결과 종합소견을 고려하여 2차 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질병별로 기본진료 외 3개과목내에서 진단종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실시

● 2차 진단결과 종합소견은 각 질병별 검사 소견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하고 진찰 종합소견을 간략히 기재

- 정상 : 1차진단 결과 정상인 경우

- 요주의 :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환이 의심되나 진단 미정인 경우
- 요 양 : 즉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정상"과 "2차진단 실시"로 구분하고, 2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각 질병별 종합소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함

○ 정상 ○ 자가 요양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치료불능 ○ 기타

마. 세부 실시요령

구 분	실시요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1. 검진실시 준비 가. 수검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	⑴ 검진희망 노인을 파악,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검당일 불참이 없도록 한다. ⑵ [서식 1호] 및 [서식 2호] '노인건강진단 1·2차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부를 검진기관에 송부한다.	검진 개시 전까지	시·군·구
나. 건강진단기록부 배부	⑴ 시·도는 [서식 3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를 인쇄하여 시·군·구별로 소요량에 따라 배분한다. ⑵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하여 사전기록사항 ①, ⑧항을 기록하고 검진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도 시·군·구
다. 노인단체와 협조	⑴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노인단체(대한노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 요청한다.		
2. 검진일정 계획 수립 가.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	⑴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자체계획에 의거 선정된 검진기관과 검진방법, 장소, 검진일정 등을 정하는 등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특히 검진기관이 검진능력(인력, 시설,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한다. ⑶ 지역별 집단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기관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검진을 허용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검진 개시 전까지	시·군·구 검진기관 시·군·구 시·군·구 검진기관
나. 검진인력 및 장비 확보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이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검진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진인력 및 장비확보 ▪ 소요 의료기자재 및 시약준비 ▪ 일반 환자와 혼란이 없도록 수검 장소의 확보 ▪ 수검절차도 및 안내표지판의 부착		시·군·구 검진기관

구 분	실시요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3. 검진 실시	⑴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기록부를 접수하여 대상자명단에 따라 검진종목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⑵ 성매개감염병검사는 대상자의 희망여부를 확인 후 실시한다(의료기관은 매독에 한정). ⑶ 검진기관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진찰 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⑷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검진기간 중	검진기관
4. 검진결과 통보	⑴ 검진기관은 검진종료 즉시 개인별 검진결과를[서식 3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에 기재하여 동 기록부와 수검자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일부 미수검자로 인하여 결과통보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별검진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개별 송부한다. 다만,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유질환자의 경우 개별 수검자라도 검진결과를 보건소로 송부한다.	검진완료 후 10일 이내	검진기관
	⑵ 검진결과를 접수받은 시·군·구는 수검자 명단과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 란에 확인한 후 수검자명단은 검진기관에, 기록부는 읍·면·동에 송부한다. 다만,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가 수검자에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접수즉시	시·군·구
	⑶ 읍·면·동은 검진결과를 접수 즉시 수검자에게 개별통지(건강진단카드사본)한다. 이때 질환 의심자에게는 질환별 건강관리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접수즉시	읍·면·동
5. 사후 관리	⑴ 건강진단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 "질환의심자"의 경우 보건소에 등록·관리 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유질환자는 필요시 보건소가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고, 만약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무료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군·구
	⑵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질환의심자"가 내원 시 정밀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수검자 내원시	검진기관 보 건 소

구 분	실시요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⑶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본인부담분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공공의료기관,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협조로 노인의료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⑷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하여 보건지도 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관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계속적인 보건지도와 사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⑸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노인과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건강진단비 청구 및 지급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건강진단비를 건강진단실시기관장에게 청구한다. ▪ 1차 및 2차 진단비(검사를 실시한 진단과목별로 합산 산정) 청구서 1부 ▪ 수검자별 검진내역서(1차 및 2차 진단 시 행한 검사종목을 알 수 있어야 함) 1부	검진완료 후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검진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역과 수검자별 검진내역서 등 기록부상의 검진결과 등을 확인한 후, 진단비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검진기관의 진료비 송금계좌로 진단비를 송금한다.	건강진단 청구자료 확인 후	시·군·구
	⑶ 2차 진단비 기준액을 초과한 과목의 진단비 부족액은 다른 진단과목의 집행 잔액 상호간에 충당한다.		
7. 보관·관리	⑴ 읍·면·동에서는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관리한다.		
	⑵ 퇴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거주지 읍·면·동에 이송한다.		

6 행정사항

가. 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한 보건소장은 〔서식4호〕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와 〔서식5호〕 '건강진단결과조치내역'을 1차진단과 2차 진단으로 구분 작성하여 1부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제출된 1·2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와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상반기는 7월 2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전년도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 시 우선 고려
  ※ '20년도 치매극복의날 유공 포상 시에는 '18년도 사업실적도 고려

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

- 만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08년~)에 따른 건강진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검진대상자나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유의
  ※ 만66세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진단은 '07년부터 실시

[참고 1]

노인건강진단 항목

구 분			진 단 항 목
1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혈액검사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당 6. 매독주1)
	기타검사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주2))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4. 흉부 X선 간접촬영
2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검사
	순환계 질환	고혈압	1. 혈압, 2.정밀 안저 검사(양측) 3. 심전도 검사
		고지혈증	1. 혈압, 2.트리그리세라이드 3. HDL 콜레스테롤
	간질환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총·직접) 5. 유산탈수효소(LDH) 6. 알파휘토단백
	신장질환		1. 요침사 현미경 검사 2. 요산 3. 크레아티닌 4. 요소·질소
	빈혈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당뇨질환		1. 식전혈당(FBS) 2. 식후 혈당(PPS)
	안질환		1. 안압검사 2.각막곡률 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치매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골다공증 검사		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낙상검사		1. 하지기능, 평형성

주1)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시

주2) 임질과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소변검체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만 실시

[서식 1호]

(　　)년도 노인건강진단 1차 대상자 명단

실 시 기 관 명		수 검 대 상 인 원	
검 진 기 관 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종합의견*	실시기관

주 : 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2호]

(　　)년도 노인건강진단 2차 대상자 명단

실 시 기 관 명		수 검 대 상 인 원	
검 진 기 관 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종합의견*	실시기관

주 : 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3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실시기관명(시·군·구)
기관장확인

〈기재 및 관리요령〉

1. 진단기록부 ①-⑧항과 ⑫항은 실시기관이 기재하고 ⑩-⑪항은 검진기관에 기재
2. ⑤-⑧항은 해당란에 ○표
3. 질병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내 보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기록부는 읍·면·동에 보관·관리하며, 주소지 이동시 본인에게 교부하여 신거주지에 제출하여 계속 관리토록 지도한다.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만세)	성별		혈액형		수검번호	
④ 주소									
⑤ 대상 구분	의료급여( ) 건강보험( )	⑥ 가족과의 동거여부	동거( ) 비동거( )	건강진단경험	유 ( ) 무 ( )	⑧ 본인의 건강의식	건강( ) 불건강( )		

⑩ 1차 건강진단

구분	⑨ 건강진단의견소견						체위검사								치과검사				
	정상	불안정	거동장애	지적기능장애	소변조절장애	신경통	신장 ㎝	체중 ㎏	흉위 ㎝	혈압 ㎜/Hg	시력 좌	시력 우	청력 좌	청력 우	우식증 상	우식증 하	결손치 상	결손치 하	치주질환
20																			
20																			
20																			

구분	혈액검사						요검사					안검사	치매	흉부 X-선 간접촬영	진찰소견	
	혈색소 g/dl	총콜레스테롤 ㎎/dl	혈청지오티 Unit	혈청지피티 Unit	혈당 ㎎/dl	매독	요당 음성±	요단백 음성±	요잠혈 ±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정밀안저검사	선별검사		양호	불량
20																
20																
20																

접는선

구분	종합소견												1차 진단결과 조치의견	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확인자 (인)
	정상 (전종목)	결핵의심	당뇨병의심	빈혈증의심	순환기계 질환		간질환의심	신질환의심	호흡기질환의심	백내장의심	안질환의심	치매의심	건강상담필요				
					고혈압성질환의심	고지혈증의심										
20																
20																
20																

⑪ 2차건강진단

구분	흉부 질환			순환기계 질환						간장 질환						
	흉부 X-선 직접 촬영	결핵균 집균 도말 검사	검사 소견	고혈압성 질환			고지혈증 질환		검사 소견	총 단백 g/dl	알부민 g/dl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Unit	총빌리루빈 (총·직접)	유산탈수효소 (LDH)	알파휘토단백	검사 소견
				혈압 ㎜/Hg	정밀안저검사	심전도 검사	트리그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20																
20																
20																

구분	당뇨질환				신장질환					빈혈			
	혈당㎎/dl		정밀안저검사 (양쪽)	검사 소견	요침사 현미경 검사	요산	크레아티닌 ㎎/dl	요소질소 ㎎/dl	검사 소견	헤마토크리트 %	백혈구수 백개/㎣	적혈구수 백개/㎣	검사 소견
	식전 (FBS)	식후 (PPS)											
20													
20													
20													

2차건강진단

구분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검사	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확인자 (인)
	안압검사	각막곡률검사	굴절 및 조정검사	검사 소견	치매척도검사 (GDS 또는 CDR)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			
20									
20									
20									

진찰종합소견	
2차진단결과 조치의견	

⑫ 진단결과조치사항(시·군·구)

20 . .	
20 . .	
20 . .	

⑬ 기타특기사항

[서식 4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단위 : 명, 개)

구분	진단인원			진단 결과				질병내역															
	계	남	여	정상자수	질환자수			구분 / 병명 / 계	결핵	당뇨병	빈혈	순환기계 질환		간질환	신질환	백내장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성매개감염병	기타
					소계	단순	중복					고혈압성질환	고지혈증								
계								단순													
								중복													

주 : 1. '질환자수'는 질병이 1개인 경우에는 '단순'으로, 질병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원수를 각각 기재한다.

2. '질병내역'은 단순 또는 중복환자 1인이 갖고 있는 질병내역을 파악하여 해당질병 수를 각각 기재한다.

3.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서식 5)을 첨부한다.

[서식 5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단위 : 명)

구분	질환자수	조 치 내 역		
		치료조치	보건소지도조치	미 조 치
계				

주 : 1차 진단결과 조치내역 작성시에는 "치료조치"에 "2차 진단의뢰수"를 기재한다.